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39-190015-14

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정치자금 회계실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일 리 두 기

- ◆ 이 책자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회계책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치자금 회계처리 방법을 실무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주체별 회계실무 주요 적용사항

구 분	일 반 사 항	주 체 별 적 용 사 항
후보자	· 정치자금 수입·지출 준비 ·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처리 · 회계보고 및 열람·사본교부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비용 보전제한 및 반환
중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 후원회 제도 · 후원금의 모금·기부
후원회		

☞ 예비후보자 및 정당선거사무소 적용사항은 일반사항과 동일

- ◆ 2019년 11월 현재의 정치자금법규·공직선거법규 등에 의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맞게 작성한 것으로, 향후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이 있는 경우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제21대 국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제한액 결정·공고 등 차이를 감안하여 참고

- ◆ (예비)후보자 및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장, 회계책임자 등은 이 책자를 항상 참고하여 정치자금 회계사무를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본 회계실무 책자의 파일 및 관련 서식,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http://www.nec.go.kr)) / 통합자료실 / 선거자료 / 선거·정당·정치자금 / 공지'에서 내려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 제 1 장 정치자금 일반

### I. 정치자금 개요 / 1

<국회의원선거 회계사무 주요일정> .....	3
1. 정치자금 의의 .....	4
2. 회계책임자의 임무와 책임 .....	5
3.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원칙 .....	6
4. 정치자금 수입·지출 안내 및 확인·조사 .....	7

### II. 정치자금 수입·지출 준비 / 11

<수입·지출 준비 개요> .....	13
1. (예비)후보자 등록 전 선거 준비행위 .....	14
2.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15
3. 예금계좌 개설·(변경)신고 .....	17
4. 회계장부 비치 및 기재요령 .....	18
5.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및 인계·인수 .....	19

### III. 정치자금 수입 회계처리 / 21

<수입 회계처리 개요> .....	23
1. 수입원(수입계정) .....	24
2. 수입처리 회계원칙 .....	26
3. 수입회계 계정 및 과목 구분 .....	27
4. 회계장부 기재 .....	29
5. 증빙서류 구비 .....	31

# Contents

## IV.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 / 33

<지출 회계처리 개요> .....	35
1. 지출처리 회계원칙 .....	36
2. 신분에 따른 지출 범위 .....	39
3. 지출회계 계정 및 과목 구분 .....	40
4. 정치자금 지출 처리 .....	47
5. 선거운동경비 교부 및 수당·실비 지급 .....	48
6. 회계장부 기재(입력) .....	53
7.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정리 .....	56
8. 정당 및 후보자의 위법비용 지출 회계처리 .....	58

## V. 회계보고 및 열람·사본교부 등 / 61

<회계보고 개요> .....	63
1. 회계처리 마감 .....	64
2. 회계보고 기한 .....	68
3.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70
4. 회계보고 내역 열람·사본 교부 .....	79
5. 회계보고 내역에 관한 이의신청 .....	80
6. 회계장부 등 인계·보존 .....	82

## 제 2 장 후 원 회

### I. 후원회 제도 / 85

<후원회 제도 개요> .....	87
1. 후원회의 정의 .....	88
2. 후원회의 등록 .....	88
3. 후원회의 회원 .....	91
4. 후원회의 기능 .....	92
5. 후원인(회원, 비회원 모두를 말함)의 연간 기부한도액 .....	92

### II. 후원금의 모금·기부 / 93

<후원금 모금·기부 개요> .....	95
1. 후원금의 모금 .....	96
2. 모금의 고지·광고 등 .....	96
3.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교부 .....	99
4. 모금유형별 경리 방법 .....	102
5. 지정권자에 대한 후원금의 기부 .....	103
6. 후원금 초과모금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방법 .....	104
7. 불법 후원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 .....	105
8.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 처분 .....	106

# Contents

## 제 3 장 선거비용 보전

### I. 선거비용 보전청구 / 111

<선거비용 보전청구 개요> .....	113
1. 선거비용 보전요건 .....	114
2. 선거비용 보전기준 .....	114
3. 보전청구 절차 .....	115
4.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등의 국가 부담 .....	118

### II. 선거비용 보전제한 및 반환 / 119

<선거비용 보전제한 및 반환 개요> .....	121
1. 위법비용 등 보전제한 .....	122
2. 미보전 사유 발생시 보전비용 반환 .....	123
3.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 .....	124
4. 반환 기탁금·보전비용의 정당 등 인계 .....	125

<작성예시> .....	127
--------------	-----

## 부 록

1. 정치자금 회계사무 일정표 .....	229
2. 묻고 답하기 .....	233
3. 수입·지출과목 해소표 .....	241
4. 「정치자금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	245
5.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매뉴얼 .....	251



# 제1장

## 정치자금 일반





# I

## 정치자금 개요

---

### <국회의원선거 회계사무 주요일정> / 3

1. 정치자금 의의 / 4
2. 회계책임자의 임무와 책임 / 5
3.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원칙 / 6
4. 정치자금 수입·지출 안내 및 확인·조사 / 7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회계사무 주요일정

- 선거 일 : 2020. 4. 15.(수)
- 선거운동기간 : 2020. 4. 2.(목) ~ 4. 14.(화)(13일간)
- 예비후보자등록 : 2019. 12. 17.(화)부터 (선거일전 120일부터)
- 후보자등록기간 : 2020. 3. 26.(목)~3. 27.(금)
- 회계사무 주요일정

주요 회계사무	일정	담당주체
◦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공고	2019. 12. 6.(금)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및 예금계좌 신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예비)후보자 및 중앙당 대표자
	후원회 등록신청시	후원회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설치신고시	정당선거사무소장 및 선거연락소장
◦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의 회계장부 기재 및 영수증 구비	수입·지출 건 발생시마다	회계책임자
◦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2020. 4. 27.(월)까지	후보자 및 중앙당 대표자
◦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마감	5. 5.(화)까지	회계책임자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	5. 15.(금)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5. 25.(월)까지]	회계책임자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5. 15.(금)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
◦ 선거비용 추가 보전청구	회계보고서 제출시	회계책임자
◦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실사	별도 일정통지	관할 선관위
◦ 선거비용 등 보전·지급	6. 12.(금)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

※ 세부 회계사무 일정표 : p.231 참조

# 1 정치자금 의의

## 가. 정치자금이란

- (1)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상기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2) 선거비용은 정치자금 중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에 따른 비용을 말하며,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하여야 함.
- (3)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 하여야 함.

## 나. 주체별 회계실무 주요 적용사항

구 분	일 반 사 항	주체별 적용사항
후보자	· 정치자금 수입·지출 준비 ·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처리 · 회계보고 및 열람·사본교부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비용 보전제한 및 반환
중앙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원회		· 후원회 제도 · 후원금의 모금·기부

※ 예비후보자 및 정당선거사무소 적용사항은 일반사항과 동일



## 2 회계책임자의 임무와 책임

### 가. 회계책임자란

- (1) '회계책임자'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자로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함.
- (2) 회계책임자 1명을 별도로 두어 정치자금을 관리하게 하는 이유는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를 회계책임자가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 나. 자격요건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p.15 참조)

### 다. 회계책임자의 직무개시일 :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때

### 라. 회계책임자의 임무(역할)

- (1) 정치자금 수입·지출업무 총괄
- (2)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비치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때마다 그 사항을 기재
- (3) 영수증 그 밖의 증빙자료 구비 및 회계보고
- (4) 회계보고 종료 후 선임권자에게 회계장부등 인계

### 마. 회계책임자의 책임

- (1)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됨.
- (2)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후보자의 당선에 무효가 됨.

-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에 따른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경우
  -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경우
- (3)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시(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됨.
-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 해당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위반한 경우
- ※ 위 2), 3)의 사유로 당선무효 시(낙선자로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포함) 후보자는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관할 선관위에 반환하여야 함.

### 3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원칙

#### 가. 수입원칙

-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 정치자금 조달
  - ※ 타인의 명의로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
-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회계책임자만이 수입 처리
- 수입내역의 회계장부 계정별·과목별 구분 기재



## 나. 지출원칙

- 사적경비 및 부정한 용도로 지출 금지
  - ※ 사적경비 : 가계의 지원·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 부정한 용도 :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

###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 지출 사례

- 식대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총 00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함.
- 교통범칙금 00건 총 000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함.
- 사적모임 회비 0건 총 00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함.

- 신고된 예금계좌에서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수표, 체크카드, 예금계좌 입금 등)으로 지출 처리
  - ※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1회 20만원(선거비용외 50만원,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선거비용·선거비용외 구분없이 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 선거비용제한액 및 현금지출한도액 준수
  - ※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 4 정치자금 수입·지출 안내 및 확인·조사

### 가. 정치자금 수입·지출 사전 안내

- (1) 시 기 : 수 시
- (2) 장 소 : 관할 선관위 또는 선거사무소 등
- (3) 방 법 : 집합교육, 방문, 전화 등

#### (4) 주요내용

- 회계책임자 선임(겸임)·변경 신고, 예금계좌 개설
-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사용 방법
-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 방법
-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장부 작성·구비
- 선거비용 보전대상 및 절차, 금액 등

### 나. 선거기간 중 회계사무 안내·지도

#### (1) 방 법 : 방문, 전화 등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공정선거지원단이 수시 안내함.

#### (2) 주요내용

-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회계처리 적정 여부
- 회계장부의 비치 및 구분 기재의 적정 여부
-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여부
-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의 적정 여부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 지급의 적정 여부
- 위법선거운동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비용의 합산 여부
- 실제 지출한 금액과 지출 받은 자 수령액의 일치 여부
- 선거운동용 전화의 분리사용 여부 등
-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 실시 여부
- 기타 정치자금 수입·지출관련 자료 수집 및 확인·조사 등

### 다.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확인·조사(「정치자금법」 제52조)

(1) 확인·조사자 : 각급 선관위(읍·면·동선관위 제외) 위원·직원

#### (2) 확인·조사대상자

- 정당·후원회·(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회계사무보조자



-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선거사무관계자나 계약업체 등)
- 금융기관의 장
- 그 밖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과 관련 있는 관계인

### (3) 확인·조사 시기

-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확인·조사 방법

- 질문·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 정치자금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여 질문·조사하거나 관계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과 관련 있는 회계장부 그 밖의 출납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수집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확인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의 요구를 거부하는 때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독촉장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금융거래 자료의 제출 요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증거물품 수거

정치자금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음.

○ 장소출입

정치자금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음.

○ 출석·동행요구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서면)을 요구할 수 있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동행(구두 또는 서면)을 요구할 수 있음.

※ 정치자금범죄와 관련하여 선거기간(4. 2.~4. 15.)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음.



## II

# 정치자금 수입·지출 준비

<수입·지출 준비 개요> / 13

1. (예비)후보자 등록 전 선거 준비행위 / 14
2.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15
3. 예금계좌 개설·(변경)신고 / 17
4. 회계장부 비치 및 기재요령 / 18
5.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및 인계·인수 / 19





## 수입·지출 준비 개요

## ○ 준비 일정

준 비 항 목	준 비 일 정	담 당	비 고
◦ (예비)후보자 등록 전 회계처리	(예비)후보자 등 록 까 지	(예비)후보자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예비)후보자 등록까지,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설치 신고시, 후원회 등록까지	중앙당대표자, (예비)후보자, 선거연락소장, 정당선거사무소장, 후원회대표자	
◦ 수입·지출용 예금계좌 개설	"	"	
◦ 회계장부 비치 및 기재요령 숙지	"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 ○ 준비 시 유의사항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잘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선관위에 문의나 검토를 받아 준비
- 특히 정치자금 지출에 있어서 그 자금의 선거비용 해당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
- 사전에 체계적인 정치자금 수입·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회계장부 기재 누락, 영수증 미구비 등의 법규 위반 사례로 사후 실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 1 [예비]후보자 등록 전 선거 준비행위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선거준비와 관련하여 사무소 임차 등 불가피하게 정치자금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가. 회계사무처리 책임자 :**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나. 회계처리 업무범위

#### (1) 예금계좌 개설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

※ 가급적 신규로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2)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출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계약·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거사무소 임차계약,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계약 등 불가피한 때에만 지출

### 다. 회계장부 비치·기재 및 증빙서류 구비

회계장부를 비치(또는 정치자금회계관리프로그램 사용)하여 수입·지출내역을 기재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작성예시 23-4, p.169]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등 참조

### 라. 회계책임자 선임에 따른 인계

(1) 관할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등록하기 전에 자신이 회계처리를 한 수입·지출내역, 예금통장, 영수증 등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 인계·인수자가 서명·날인한 후 관련 회계서류 일체를 선임 신고된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2) 회계책임자는 (예비)후보자로부터 인계·인수된 회계장부에 이어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도록 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증빙서류철에 관리한 후 회계보고 시 첨부하여야 함.

☞ [작성예시 1-1, p.133]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참조

## 2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가. 회계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

-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2) 다만, 이미 어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된 자는 다른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 나. 회계책임자 겸임

- (1)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 그 국회의원 회계책임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 (2) (예비)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별도 선임하지 않고 자신이 겸할 수 있으며, 겸임 시에는 겸임신고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작성예시 3, p.138] 회계책임자 겸임신고서 참조

-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회계책임자는 중앙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함.

## 다. 회계책임자 직무개시 및 임무

- (1)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때부터 직무가 시작됨.
- (2) 신고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정치자금법」 제47조제1항, 제49조제2항)

## 라. 선임신고 방법

신고자(선임권자)	신고 시기	신고처	구 비 서 류
중앙당대표자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시	관 할 선관위	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②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1부 ③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④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시		위 ①, ②, ③
선거연락소장	선거연락소 설치신고시		
정당선거사무소장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시		
후원회 대표자	후원회 등록신청시		

☞ [작성예시 2-1, p.135]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작성예시 2-2, p.136]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작성예시 2-3, p.137]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참조

## 마. 유의사항

- (1) 회계책임자는 1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음.
  - ☞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의 회계책임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없음.
- (2)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신청 시 회계책임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봄.



### 3 예금계좌 개설 · (변경)신고

#### 가. 예금계좌 개설

(1) **개설명의** : 중앙당, (예비)후보자, 정당선거사무소장, 후원회명 또는 회계책임자

- ※ 회계책임자 변경시 예금계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중앙당, (예비)후보자, 정당선거사무소장, 후원회명 명의로 개설
- ※ 후원회의 경우 후원인이 금융거래입금증을 면세 영수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후원회명으로 개설된 예금계좌이어야 하고, 후원회명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후원회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함.

(2) **개설방법**

- 정치자금 수입용과 지출용을 각각 개설하거나, 1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 겸용으로 사용 가능
  - ※ 정치자금 수입용과 지출용 계좌를 각각 개설하는 경우에는 수입용 계좌로 입금된 정치자금을 지출용 계좌로 이체한 후 지출하여야 함.
- 수입용 예금계좌는 2개 이상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지출용 예금계좌는 반드시 1개만 사용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가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하기 전에 사용하여 온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가 있는 때에는 그 예금계좌를 신고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신고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예금계좌가 아닌 별도의 정치자금 예금계좌 신고

#### 나. 개설신고

(1) **신 고 처** : 관할 선관위

(2) **구비서류** : 예금계좌 신고서,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회계책임자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예금계좌 개설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 [작성예시 4, p.139] 예금계좌 신고서 참조

## 다. 예금계좌 변경신고

(1) 예금계좌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선관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작성예시 5, p.140] 예금계좌 변경신고서 참조

(2)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와 함께 예금계좌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는 회계책임자의 변경없이 예금계좌만을 신고(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사용하면 편리함.

## 4 회계장부 비치 및 기재요령

### 가. 비치장부

(1) (예비)후보자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2) 중앙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후원회 : 수입부, 지출부

### 나. 장부준비

(1) 회계장부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중앙선관위에서 배부한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관리 하는 것이 편리함.

※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http://www.nec.go.kr)) / 통합자료실 / 선거자료 / 선거·정당·정치자금'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음.

(2) 부득이하게 수기용 회계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정 및 과목구분을 위한 색인표를 작성하여 부착함.



## 5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및 인계·인수

### 가. 변경신고

신 고 자	신고시기	신고처	구 비 서 류
중앙당 대표자	회계책임자 변 경 시 (지체없이)	관 할 선관위	①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1부
(예비)후보자			② 취임동의서 1부
선거연락소장			③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
정당선거사무소장			④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1부
후원회 대표자	14일 이내		위 ①, ②, ④

☞ [작성예시 6-1, p.141]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참조

### 나.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1) 인계·인수시기 :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

(2) 인계·인수서 작성

- 회계책임자 변경시마다 3부를 작성,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관할 선관위에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시 첨부
- 인계·인수내역란에는 재산, 정치자금 사용잔액, 회계장부, 예금통장·체크카드, 영수증 등을 기재하되, 그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 선임권자는 입회자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함.

☞ [작성예시 6-2, 6-3, p.142~143]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및 별지 참조

(3) 인계·인수방법

인계·인수내역 기재내용,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예금통장 등을 첨부하여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명확히 점검·확인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함.





# Ⅲ

## 정치자금 수입 회계처리

---

<수입 회계처리 개요>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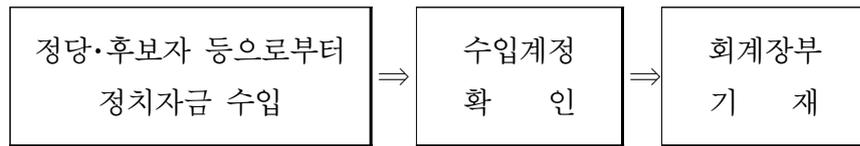
1. 수입원(수입계정) / 24
2. 수입처리 회계원칙 / 26
3. 수입회계 계정 및 과목 구분 / 27
4. 회계장부 기재 / 29
5. 증빙서류 구비 / 31





## 수입 회계처리 개요

## ○ 수입회계 절차



## ○ 주요 수입원

## 【 (예비)후보자 】

- (예비)후보자 자산(차입금 포함)
- 소속정당의 지원금품(정당추천 후보자에 한함)
-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품

## 【 정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

- 보조금외(당비, 기탁금, 후원회기부금, 차입금, 기관지발행사업수입, 지원금, 그 밖의 수입)
- 보조금(경상·선거·여성추천·장애인추천)

## 【 후원회 】

- 후원금, 그 밖의 수입

## ○ 수입회계 원칙

-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수입 조달
-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처리
-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로 입금 처리
- 수입이 발생한 때마다 계정별, 과목별 구분하여 회계장부 기재

## 1 수입원(수입계정)

### 정치자금 주요 수입원

- 【 (예비)후보자 】
  - (예비)후보자의 자산  
자신의 금전, 차입금 등
  - 정당의 지원금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품
  - 후원회의 기부금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기부금
- 【 정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
  - 보조금외  
당비, 기탁금, 후원회기부금, 차입금, 기관지발행사업수입, 지원금, 그 밖의 수입
  - 보조금  
경상·선거·여성추천·장애인추천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
- 【 후원회 】
  - 후원금, 그 밖의 수입

### (예비)후보자

#### 가. (예비)후보자 자산

- (1) (예비)후보자 본인의 금전·차량·장비·물품 등
- (2) (예비)후보자가 제3자로부터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고 빌리는 차입금
  - ※ (예비)후보자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을 수입 처리하는 것과 회계처리방법은 동일함.
- (3) (예비)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전·차량·장비·물품 등

#### 나. 소속 정당의 지원금품(정당추천 후보자에 한함)

- (1) 정당이 소속 정당의 (예비)후보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 ※ 보조금의 경우와 보조금외의 경우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함.
- (2) 소속 정당에서 제작, 지원하는 선거운동용 물품·장비 등



## 다.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품

후원회 설립을 통해 제3자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품

## 라. 선거사무소 지원금(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에 한함)

- (1)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연락소에 지원한 후보자 자산
- (2)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연락소에 지원한 소속정당의 지원금 등
- (3)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연락소에 지원한 후원회 기부금

### 정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 가. 보조금외

- (1) **당비**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납부하는 금전
  - ※ 최초로 당비를 납부 받은 당부에서만 ‘당비수입’으로 처리하고 상·하급 당부간 당비의 이동은 반드시 지원금으로 처리
- (2) **기탁금**(중앙당에 한함) : 중앙선관위로부터 배분·지급받은 기탁금
- (3) **후원회기부금**(중앙당에 한함) : 지정한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품
- (4) **차입금** :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
- (5) **기관지발행사업수입**(중앙당에 한함) : 기관지(당보 등 간행물)발행에 따른 판매수익 및 광고수입 등
- (6) **지원금** : 상·하급당부로부터 받은 지원금(각급 당부 간에 이동하는 정치자금은 모두 지원금 처리)
  - ※ 특정 당부에서 사용하도록 지원한 금액이므로 시·도당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장 등 특정 개인에게 지급한 것은 제외함(당부간 이중계상 방지)
- (7) **그 밖의 수입** : 예금이자 등 타 과목의 수입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수입

## 나. 보조금

(1) 지원금 :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2) 그 밖의 수입 : 보조금에 대한 예금이자 등 다른 과목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수입

※ 보조금과 보조금외 정치자금의 예금이자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외 정치자금의 예금이자로 처리

☞ [작성예시 8, p.146] 정치자금 수입계정별 회계장부 기재 예시 참조

## 후원회

### 가. 후원금

후원인(후원회의 회원이나 회원이 아닌 자)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

☞ [작성예시 9, p.149] 정치자금 수입계정별 회계장부 기재 예시 참조

나. 그 밖의 수입 : 이자수입 등

## 2 수입처리 회계원칙

### 가.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으로만 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한 방법으로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있음.

※ 누구든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인쇄물·시설물·물품·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 받을 수 없음.

### 나.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처리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 (예비)후보자, 선거연락소, 후원회의 정치자금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수입처리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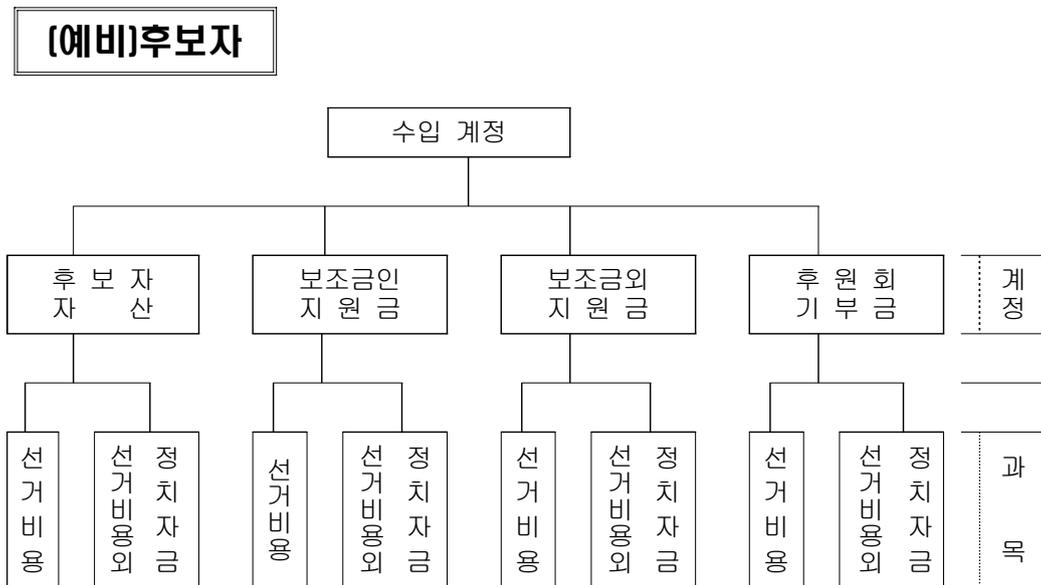
## 다.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계좌로 입금처리

물품·장비 등 현물을 제외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로 입금되어야 함.

- ※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 예금계좌가 없으므로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처리함.(p.14 참조)
- ※ 선거연락소에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로 이체해야 함.
-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별도의 (예비)후보자 정치자금 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후원회 기부금을 국회의원 정치자금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예비)후보자 정치자금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 수입에서 “후원회기부금” 계정으로 기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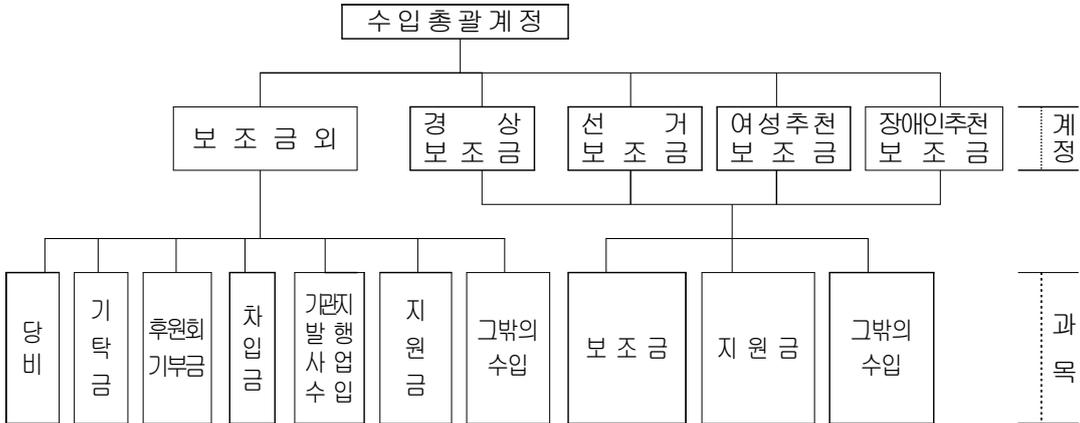
## 3 수입회계 계정 및 과목 구분

### 가. 수입계정 및 과목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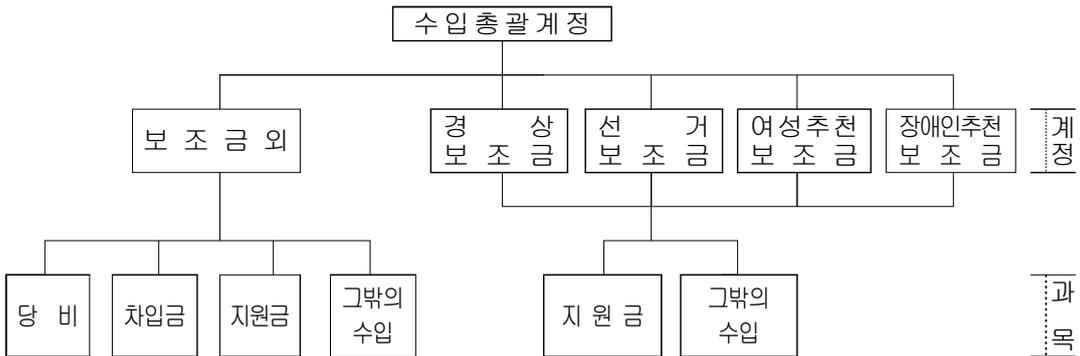


## 정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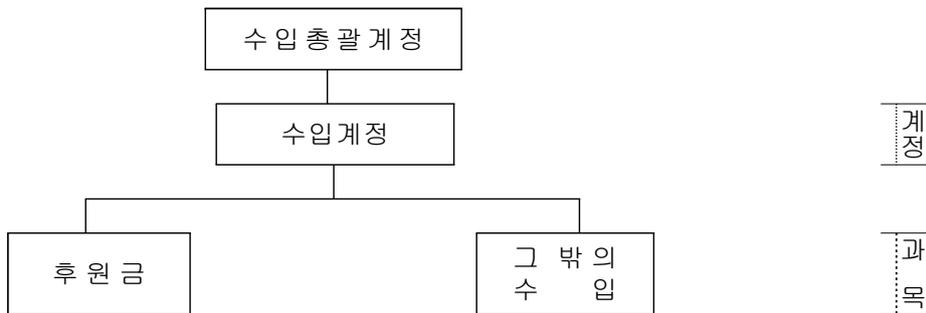
###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중앙당)



### (2) 정당선거사무소



## 후원회



## 나. 과목구분 시 유의사항

- (1) (예비)후보자의 경우 계정아래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에 각각 얼마의 금액을 수입처리 할지는 회계책임자가 향후 지출자금의 성격, 지출액 등을 감안하여 임의 구분함.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에게 지원금 교부 시 해당 계정을 지정(통보)해 정치자금을 이체해야 함.

- (2) 정치자금 지출과정에서 각 과목간 과부족 발생시는 용도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음.

### 후보자 자산 2천만원이 정치자금 수입용 계좌에 입금된 경우

#### ▪ 과목 구분

회계책임자는 후보자 자산 2,000만원을 “후보자 자산계정” 『선거비용』과목에 1,000만원,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 1,000만원 또는 『선거비용』과목에 1,500만원,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 500만원 등으로 임의 배분하거나, 하나의 과목에 2,000만원 전액을 수입처리 할 수 있음.

#### ▪ 과목간 용도변경

회계책임자는 후보자 자산 2,000만원을 “후보자 자산계정”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으로 모두 수입 처리한 후 『선거비용』과목에서 지출요인이 발생한 경우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서 해당 금액을 감(-)하여 『선거비용』과목으로 증(+)하는 방법으로 용도변경(회계장부상으로는 정치자금 이동)하여 지출할 수 있음.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 : 감 500만원, 『선거비용』과목 : 증 500만원

## 4 회계장부 기재

### 가. 장부 기재(입력)

- (1) 시 기 : 정치자금 수입이 발생한 때마다
- (2) 내 용 : 수입연월일, 수입금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의 내역(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 등)

- (3) 방 법 :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이나 회계장부에 수입 건별로 기재(입력)하되, 계정별, 과목별 구분 기재(입력)

## 나. 세부 기재(입력) 요령

### (1) 계정·과목 구분

해당 수입계정·과목에 기재(입력)함.

### (2) 수입 연월일

정치자금이 입금된 연월일 또는 물품·장비 등을 실제 지원받은 연월일을 기재(입력)함.

### (3) 수입을 제공한 자의 내역

수입을 제공한 자의 성명(법인·단체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무소 소재지)·직업(업종)·전화번호 등을 기재(입력)함.

### (4) 수입금액

- 현금이 입금된 경우

그 입금 금액을 기재(입력)함

- 수표를 받은 경우

수표 액면금액, 수표를 발행한 금융기관명, 수표번호를 회계장부의 내역란에 부기한 후 신고된 수입용 예금통장에 입금함.

☞ [작성예시 7, p.144] ① 기재 예시 참조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본인 소유의 시설물·물품·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이나 임차 가격을 후보자 자산계정의 해당 과목에 수입 처리함과 동시에 지출 처리함.

☞ [작성예시 7, p.144] ② 기재 예시 참조



- 후원회를 통해 물품 등을 기부받은 경우  
후원회기부금 계정의 해당 과목에 그 가액을 수입과 동시에 지출 처리함.  
☞ [작성예시 7, p.145] ③ 기재 예시 참조
- 소속 정당이 선거운동용 물품을 일괄 입차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제공받은 경우  
중앙당에서 지원된 날짜에 '보조금인 지원금 계정' 또는 '보조금외 지원금 계정'의 '선거비용과목'에 그 가액을 수입 처리함과 동시에 지출 처리하되, 그 가액은 총 제작비용을 지원된 후보자수로 나눈 금액(총 제작비용 ÷ 지원된 후보자수)임.  
☞ [작성예시 7, p.145] ④ 기재 예시 참조
- 소속 정당의 자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용일수 또는 사용시간에 따른 시중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기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함.  
☞ [작성예시 7, p.145] ⑤ 기재 예시 참조

## 5 증빙서류 구비

정치자금 수입 증빙서류 구비는 그 수입을 제공한 자의 인적사항을 회계장부에 기재(입력)하는 것으로 같음함.



# IV

## 정치자금 지출 회계처리

<지출 회계처리 개요>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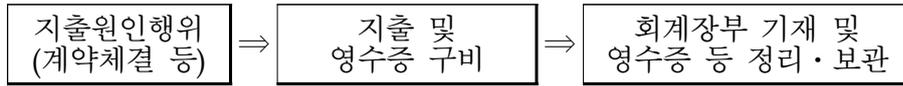
1. 지출처리 회계원칙 / 36
2. 신분에 따른 지출 범위 / 39
3. 지출회계 계정 및 과목 구분 / 40
4. 정치자금 지출 처리 / 47
5. 선거운동경비 교부 및 수당·실비 지급 / 48
6. 회계장부 기재(입력) / 53
7.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정리 / 56
8. 정당 및 후보자의 위법비용 지출 회계처리 / 58





## 지출 회계처리 개요

## ○ 지출절차



## ○ 지출범위

-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지출이란 직접적인 자금제공 외에도 그 교부 또는 약속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임.
- 정당한 선거비용 지출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 지출에 포함됨.

## ○ 지출방법

- 예금계좌 입금
- 현금 또는 수표 지급
- 체크카드 결제

## ○ 지출원칙

- 사적 경비 및 부정한 용도로 지출 금지
- 회계책임자에 의한 지출 / 실명이 확인되는 투명한 방법으로 지출
- 선거비용제한액 및 약정액 한도 내에서 지출
-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 / 현금지출시 한도 준수
- 선관위에 신고한 지출용 예금계좌를 통해서 지출

## ○ 위법비용

- ① 정당 및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②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위법 선거운동에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③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위법선거운동에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④ ② 및 ③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 ② 또는 ③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위법선거운동에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1 지출처리 회계원칙

## 가. 사적 경비 및 부정한 용도로 지출 금지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음.

## 나. 회계책임자에 의한 지출

정치자금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지출할 수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가 허용됨.

- (1) 회계사무보조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경우  
☞ [작성예시 10, 11, p.151~152] 정치자금지출 위임장 및 정치자금 지출내역서 참조
- (2)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회계책임자로부터 교부받아 지출하는 경우  
☞ [작성예시 13-1, 13-2, p.154~155]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지출내역서 및 별지 참조
- (3)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

※ 회계사무보조자 및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자의 지출범위 등

구 분	지출범위
회계사무보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출의 대강내역</b>이란 지출의 목적과 금액이 주요 항목별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하며, 모든 회계처리에 대한 포괄적 위임은 금지됨.                예) · □□□□년 △월 △일 후보자의 지역 유세 참여 선거사무관계자 식대 지출(○)                      ·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출 일체(×)</li> <li>· 회계사무보조자는 회계책임자로부터 서면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으며, 위임받기 전 또는 위임범위를 벗어나 지출할 수 없음.</li> </ul>



구 분	지출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사무보조자에게 위임 가능한 것은 지출만 해당하므로 <b>회계사무보조자는 회계책임자 외의 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입할 수 없음.</b></li> <li>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교부함.</li> <li>회계사무보조자는 교부받은 비용을 지출한 후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함. ☞ [작성예시 11, p.152] 회계사무보조자 정치자금 지출내역서 참조</li> <li>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해당 지출건의 증빙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보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li> </ul>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책임자는 자신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회계책임자외의 자에게 교부하여 지출하게 할 수 있음.</li> <li>회계책임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함. ☞ [작성예시 12, p.153]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서 참조</li> <li>회계책임자는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해당 지출건의 증빙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보고 시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li> </ul>

#### 다.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여야 함.

#### 라. 지출용 예금계좌를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

정치자금 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를 통해서 수표, 체크카드,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이란 수표나 체크카드·예금계좌 입금과 같이 정치자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출방법을 말함.

## 마. 현금지출 한도 준수

### (1) 현금지출 가능한 경우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 1건의 지출금액이 50만원(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액, 아래에서 같음) 이하인 때
  - ※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1건의 지출금액이 20만원 이하인 때
- 선거비용 : 1건의 지출금액이 20만원 이하인 때

### (2) 유의사항

현금지출액은 선거비용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의 10/100을, 정치자금 지출 총액의 20/100(선거비용 현금 지출 금액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바. 선거비용제한액 및 선거비용지출액 약정금액 내에서 지출

선거비용은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과 회계 책임자와 선임권자간에 선거비용제한액 한도내에서 지출하기로 한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음.

## 사. 지출과목 준수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과목에서,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에서 각각 지출하여야 함.

## 아. 국고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위·누락한 경우나 「정치자금법」 제28조의 보조금의 용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위반한 금액의 2배의 금액이 보조금에서 감액될 수 있음.



## 2 신분에 따른 지출 범위

### 가. (예비)후보자

- (1)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회계책임자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비)후보자에게 교부하여 지출하게 할 수 있고,

※ 구체적인 경비 교부방법은 p.48 참조

- (2)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운동 비용을 교부받은 (예비)후보자가 그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함.

### 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회계책임자 포함)

- (1) 관할 선관위에서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후보자와 약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지출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음.

- (2)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선거연락소에 정치자금을 지원한 경우 그 지출 비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지출합계액이 제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음.

### 다.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 (1)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음.

- (2) 회계마감 전까지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선거사무소에서 지원받아 지출하여야 하고, 잔액은 선거사무소로 반환하여야 함.

## 라.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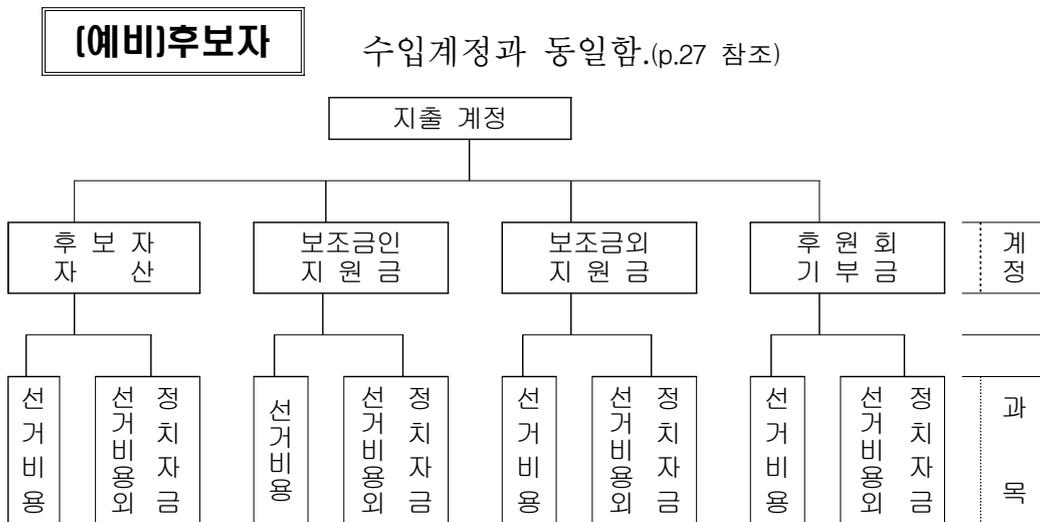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것이므로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음.

## 마. 후원회 회계책임자

후원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 및 후원회지정권자 기부만을 지출할 수 있음.

# 3 지출회계 계정 및 과목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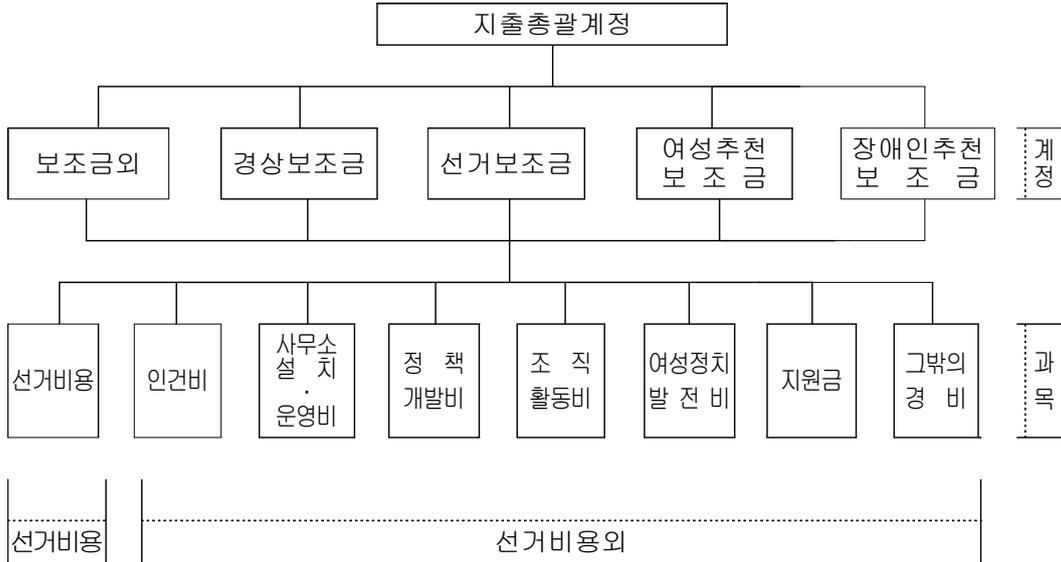
## 가. 지출계정 및 과목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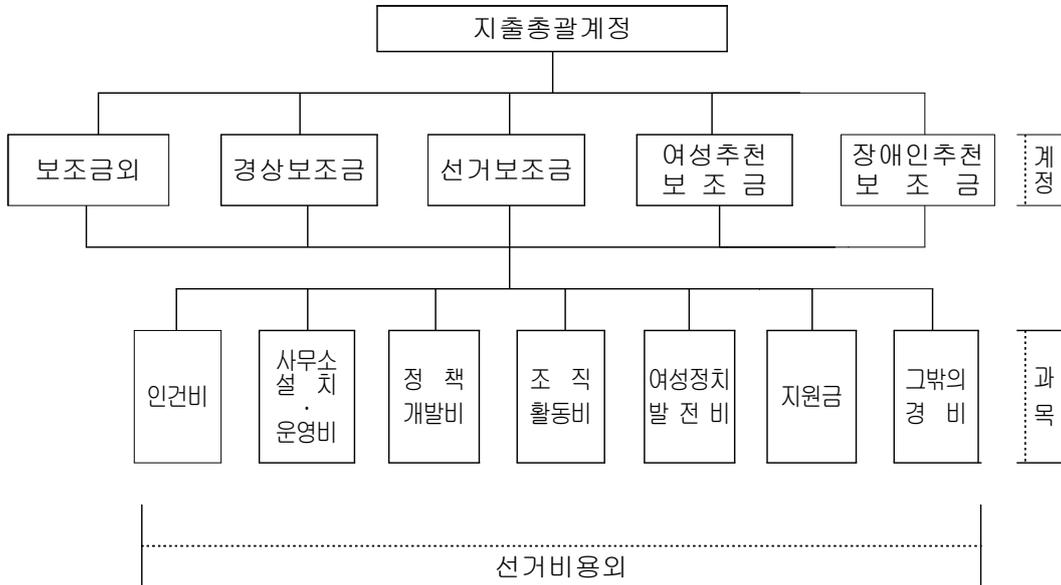
※ 각 계정별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구분·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의로 지출할 계정을 정할 수 있으나, 지출내용에 따라 선거비용인 경우 선거비용과목에, 선거비용외인 경우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 구분·기재해야 함.

## 정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중앙당)



### (2) 정당선거사무소



## 후원회



### 나. 선거비용과목의 지출 범위

당해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금전·물품·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1)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

-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포함)나 선거연락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게시·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사진의 작성비용(기획·도안료 포함)과 선거벽보의 보완첨부비용.
    - ※ 다만, 언론기관에 보도용으로 제공하거나 선관위에 제출하기 위한 후보자사진의 작성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님.
  - 거리게시용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 어깨띠, 표찰·수기 등 선거운동용 소품 등의 구입·제작 등 비용
  - 신문·방송·인터넷광고 및 방송연설에 소요되는 비용
    - ※ 신문·방송광고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만 해당됨.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소요되는 비용  
(연설·대담용 차량 및 확장장비의 구입·임차료, LED 전광판 구입·임차료, 차량래핑비, 홍보물 및 연단의 설비·설치비, 발전기 임차료, 연설·대담용 차량 주차료·연료비·유료통행료, 녹화물·로고송 제작비 등)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해당되지 않음.
  -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의 설치비 및 통화료
  -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용
  -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비용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해당되지 않음.
  - 기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하여 여론조사비용
- (2)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3)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4) (2) 및 (3)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 (2) 또는 (3)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의 지출 범위

### (1)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예비후보자의 경우 등록신청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공직선거법」 제91조④의 선거벽보 등을 첩부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선박 포함)의 운영비용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통상적 정당활동 관련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다과 또는 음료의 구입 비용 및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구입비용은 선거비용임.
-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 투표참여운동에 소요된 비용(선거운동이 아님)

### (2) (예비)후보자가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3) 정당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선거비용 외 지출계정**

- 「기본경비」는 정당이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경상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인건비, 사무소 설치·운영비로 구분해서 지출함.
- 「정치활동비」는 정책의 추진·지지·반대 또는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지지하는 등 정치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그 밖의 경비로 구분하여 지출함.

과 목		과 목 해 소
기본 경비	① 인 건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직원에 대한 봉급·수당·여비·활동비·격려금</li> <li>◦ 일반사무관계에 소요되는 여비</li> <li>◦ 그 밖의 인건비</li> </ul>
	② 사무소 설치·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계약에 의한 토지·건물·기계시설 등의 임차료</li> <li>◦ 사무소에 필요한 물품구입비</li> <li>◦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 및 수선비</li> <li>◦ 각종 보험료, 연료비, 자동차유지비(사무용에 한함)</li> <li>◦ 전신전화 그 밖의 공공요금 일체</li> <li>◦ 그 밖의 사무소 설치·운영비</li> </ul>
정치 활동 비	③ 정책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개발 부서의 기본경비(정책개발부서 직원의 봉급·수당·여비·활동비·격려금,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연료비·자동차유지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li> <li>◦ 정책개발부서 직원의 교육·연수, 정책자료 제작비</li> <li>◦ 정책개발 관련 여론조사비</li> <li>◦ 외부연구소나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정책개발 관련 용역비</li> <li>◦ 정책평가비(다만, 대규모집회를 통한 정책평가보고대회는 제외)</li> <li>◦ 정책개발관련 정책결정·평가 등을 위한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각종 정책회의 개최비</li> <li>◦ 그 밖의 정책개발비</li> </ul>
	④ 조직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원연수·교육관련 경비</li> <li>◦ 강사료 등 특별종사원에 대한 인건비</li> <li>◦ 교재 및 연구자료 수집비</li> <li>◦ 피교육자에 대한 급식비·여비</li> <li>◦ 교육훈련을 위한 장소·시설 임차료 및 유지비</li> <li>◦ 정당의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당원집회 등 관련 경비</li> <li>◦ 정당 내부의 지휘·감독 활동 경비</li> </ul>

과 목		과 목 해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관련 경비</li> <li>◦ 기관지 발행·배부 관련 경비</li> <li>◦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경비</li> <li>◦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에 지원한 경비</li> <li>◦ 그 밖의 조직 활동비</li> </ul>
	5 여성정치 발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경비</li> <li>◦ 그 밖의 여성정치발전비</li> </ul>
	6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의 각급 당부 간에 지원한 금전이나 유가증권</li> <li>◦ 그 밖의 지원금</li> </ul>
	7 그 밖의 경비	◦ 상기 과목 외의 지출

※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함.

#### (4) 후원회의 지출계정

- 후원회의 지출계정은 지출총괄계정을 두고 그 아래 기부금, 후원금 모금 경비, 인건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그 밖의 경비로 구분하여 설정함.

과 목	내 용
기 부 금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한 금전 등을 기부일자 별로 기재함.
후 원 금 모금경비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광고료, 안내장·정치자금 영수증 발송비, 수입인지 구입비용 등을 기재함.
인 건 비	후원회의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수당, 여비, 활동비, 격려금과 그 밖의 인건비, 사무직원의 야근식비 등을 일자별·수령자별로 기재함.
사 무 소 설치·운영비	후원회사무소 임차비용, 사무소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 및 수선비, 각종 보험료, 연료비, 자동차유지비(사무용에 한함), 전신전화 기타 공공요금 일체, 그 밖의 사무소 설치·운영비로 지출일 자별·수령자별로 기재함.
그 밖의 경비	후원회가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등 후원회 사무를 위하여 사용한 상기 이외의 지출로서 일자별·건별로 기재함.



## 4 정치자금 지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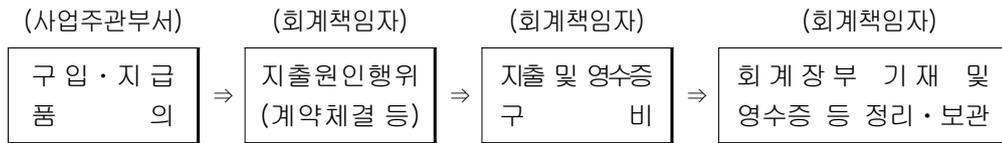
가. 지출대상 : 정치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정당한 채권자

### 나. 지출절차

#### (1) (예비)후보자 및 후원회, 정당 선거사무소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중앙당)



※ 지출원인행위란 선거운동 시설물 및 장비 제작·임차, 홍보물 인쇄,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하여 관련업체에 주문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용인부 등을 고용하는 행위 등을 말함.

### 다. 지출방법

(1)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2)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자금을 인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인출한 자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함.

※ 지급대상자별로 지급할 금액이 작성된 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출하여야 하며, 지출상의 편의를 위해 현금을 출금한 후 여러 지출 건에 사용할 수 없음.

※ 수표로 지급 시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내역란에 발행금융기관명, 수표번호를 부기함.

※ 회계장부와 증빙서류의 일자·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3) 지출용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 신용카드 사용 시 카드사용대금이 익월에 일괄 지출되므로 체크카드 사용이 바람직함.

## 라. 지출시기

수표나 현금의 경우 지급하고자 하는 날에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출

- ※ 계좌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과목으로,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후원회의 경우 그 밖의 경비과목으로 지출 처리

## 마. 지출시 유의사항

- (1) 후원회를 둔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을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음.  
 ※ 다만,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같은 법 제59조제3호)에 소요되는 경비로는 지출할 수 없음.
- (2) 소속 정당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 받아 사용 후 그 잔액이 있는 경우 소속 정당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게 회계마감일까지 반납하여야 함.  
 ※ 정당추천 후보자가 소속 정당으로부터 받은 지원금(보조금과 보조금외로 구분) 잔액을 소속 정당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보조금인 지원금’과 ‘보조금외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반환하여야 함.

# 5 선거운동경비 교부 및 수당·실비 지급

## 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경비 교부

- (1) 교부사유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회계책임자가 그 소요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교부금액**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금액

(3) **교부방법**

- 회계사무보조자를 선임하는 경우
  - (예비)후보자를 수행하는 선거사무관계자나 가족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1인을 회계사무보조자로 선임하여 그 보조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 ※ 이 경우 예금계좌는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된 예금계좌이어야 하므로 기존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겸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회계사무보조자에게 교부함.
- (예비)후보자가 직접 지출하는 경우
  -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교부함.
  - 교부 방법은 (예비)후보자가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예비)후보자에게 교부함.
    - ※ (예비)후보자가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로 정치자금을 입금받아 지출할 경우에도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후보자가 직접 지출하는 경우 건당 20만원이하 지출시에만 현금지출이 가능

(4) **경비정산 및 영수증 구비**

- 교부받은 선거운동 비용의 지출을 완료한 후 그 지출내역서, 영수증 등 증빙 서류, 예금통장 사본, 집행 잔액을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함
  - ☞ [작성예시 13-1, p.154]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지출내역서 참조
- 다만, 사용한 선거비용 중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내역서에 그 사유 및 미구비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함.
  - ※ 영수증 등 미구비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회계장부 기재 및 영수증 등 정리

- 회계책임자는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선거운동비용 지출내역을 해당 계정·과목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철에 편철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받고 해당 계정·과목의 지출란에 감(-)으로 기재함.  
☞ [작성예시 14, p.157]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경비 지급 및 잔액 반환 예시 참조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지출내역서는 회계보고서에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선거운동경비 교부대상 및 사무처리〉

구 분 \ 교부대상자	회계사무보조자 (회계사무보조자 지정시)	(예비)후보자 (회계사무보조자 미지정시)
위임대상자	(예비)후보자의 가족, 후보자 수행 선거사무관계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예비)후보자 자신
위임방법	정치자금지출 위임장 교부	정치자금지출 위임장 교부 불요
교부대상	제한없음	(예비)후보자 혼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에 직접 필요한 교통비·식대 등
지출방법	○ 정치자금지출용으로 개설한 (예비)후보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의 예금계좌에 입금·지출하거나,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로 지출	
정산방법	정치자금지출내역서, 영수증, 예금통장사본 그 밖의 증빙서류와 집행잔액을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되, 부득이 영수증 등 미구비시 그 사유 및 내역 기재	
증빙서류 정리, 회계장부 기재	(예비)후보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출한 ‘정치자금지출내역서’를 해당 계정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철에 편철하도록 하고, 잔액은 반환받고 해당 계정의 ‘지출’란에서 감액처리	



## 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

### (1) 지급기준

(단위 : 원)

선거운동 기구별	구 분	수 당	실 비					
			일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 동 차 운 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중앙당)	선 거 사 무 장	70,000	20,000	25,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선 거 사 무 장	50,000	20,000	20,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선거연락소	선 거 연 락 소 장	50,000	20,000	20,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공 통	선거사무원	30,000	20,000	20,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활동보조인							

☞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음.

-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실비는 당해 회계책임자가 소속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 대한 수당·실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함.
- 한 사람이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지급기준이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1인의 수당·실비만 지급함.

### (2) 지급방법 및 증빙서류 구비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는 법정 지급기준 이내에서 실제 활동한 일수 등을 산정하여 지급함.
  - ※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후에 수당과 실비를 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비용 지출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음.
- 수당·실비를 수령하는 해당 선거사무관계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지급명세서 및 예금계좌에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거래이체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증빙서류철에 편철 관리

☞ [작성예시 15, p.158]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참조

### (3) 지급 시 유의사항

-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할 실비 중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함.
  - ※ 1일 근무한 선거사무원에게 1끼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식비 20,000원 중 6,600원 공제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관할 선관위에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 신고한 경우에는 실비만 지급(수당은 지급 불가)
-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1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실비만을 지급해야 함.(중복지급 불가)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3. 26.~4. 1.)까지는 후보자의 신분으로서 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는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
  - ※ 다만, 위 기간동안 예비후보자 신분으로서 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지급 가능
- 선거일에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는 없음.
  - ※ 선거일 이후라도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회계책임자에게 회계업무처리에 따른 수당 등을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서 지급할 수 있음.



## 6 회계장부 기재(입력)

### 가. 장부 기재(입력)

- (1) 시기 : 정치자금 지출이 발생한 때마다
- (2) 내용 : 지출연월일, 지출금액, 잔액, 지출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영수증 일련번호
- (3) 방법 :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이나 회계장부에 지출 건별로 기재(입력)하되, 계정별·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

### 나. 세부 기재(입력) 요령

- (1) 지출연월일 : 실제 정치자금의 지출이 있는 날을 기재(입력)함.
- (2) 지출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  
성명(법인·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직업(업종), 전화번호
- (3) 지출금액  
예금계좌에서 실제 인출한 금액을 해당 날짜에 기재(입력)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출금일자와 지출일자가 다른 경우 그 사유를 회계장부에 기재(입력)함.
  - 현금으로 지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장부에 기재(입력)하되, 지출 내역란에 지출의 상세내역을 기재(입력)하고 영수증은 현금영수증 전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말함)로 갈음함.
  - 수표로 지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장부에 지출일자를 기재(입력)하되, 지출

내역란에 발행금융기관명·금액과 수표번호를 함께 기재(입력)함.  
(영수증은 현금의 경우와 같음)

○ 체크카드 결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장부에 지출일자를 기재(입력)하되,  
영수증은 체크카드 전표로 같음함.

## 다. 기재(입력) 시 유의사항

- (1)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때마다 회계장부에 그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1건으로 처리해서는 안됨.
- (2)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도 실제 지출이 있는 때마다 회계장부에 기재(입력)함.
- (3) 체크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만으로 지출의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 세부명세서(거래명세서, 견적서 등)를 별도로 첨부하여 회계보고 시 제출하여야 함.(p.56 참조)

## 라. 과목간 과부족 금액 발생시 지출 처리

### 〈사 례〉

「후보자 자산 - 선거비용」 과목에서 1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나,  
잔액이 50만원 밖에 없는 경우 지출 처리 방법

### (1) 동일 계정 내 과목간 용도변경하는 방법

「후보자 자산 - 선거비용외」 과목에 잔액이 5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자산 - 선거비용」 과목으로 용도변경(회계장부상 선거  
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서는 ‘선거비용과목으로 이체’라고 내역에  
기재한 후 감액처리하고, 선거비용과목에서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에서 이체’로 내역 기재 후 수입 처리)



항목기재사항 \ 과목별	「선거비용외」	「선거비용」
‘수입일자’란	용도변경(이체) 일자	용도변경(이체) 일자
‘수입내역’란	‘「선거비용과목」으로 이체’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서 이체’
‘수입금액’란 (‘수입액’란 중 ‘금회’란)	감액(-) 처리	증액(+) 처리

※ 과목간 이체는 같은 계정내에서만 가능(다른 계정사이에서는 이체 불가)

☞ [작성예시 16, p.159] 동일 계정내 과목간 상호이체 참조

## (2) 2개 이상의 계정에서 동일과목으로 분할 지출하는 방법

위 사례에서 「후원회기부금 - 선거비용」 과목에 잔액이 50만원이 있는 경우 「후보자 자산 - 선거비용」 과목에서 50만원과 「후원회기부금 - 선거비용」 과목에서 50만원을 각각 지출처리하고 그 사실을 수입·지출부의 비고란에 기재

※ 선거비용과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으로 분할 지출할 수는 없음.

☞ [작성예시 17, p.160] 2개 계정 내 동일 과목 분할 지출 참조

## 마. 지출과목 해소 위반 시 과목상호간 직권 합산처리

- (1) 선거종료 후 관할 선관위에 의한 회계보고서 실사과정에서 지출과목 해소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과목상호간 직권 합산 처리됨.
- (2) 특히,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이 선거비용과목에서 지출된 경우에도 그 금액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합산처리 되고 보전대상에서 제외됨.  
☞ 선거사무소 임차비(선거비용이 아닌 비용)를 선거비용과목에서 지출 처리하였더라도 그 금액은 미보전함.

### 가. 구비원칙

(1)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무통장 입금증만 제출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2) 다만,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예외 사유

- i)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함)이하로서 봉사료 등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ii)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무인판매기 이용의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iii)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구비요령

#### (1) 사업자별 영수증 구비대상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체크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 간이과세자 : 간이영수증, 체크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 발급 불능자(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 : 품명, 가액, 수량, 영수일자, 영수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날인된 영수증 징구

#### (2) 과세사업자 구분방법

- 과세사업자 여부는 당해 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에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다. 구비 시 유의사항

- (1) 예금계좌입금을 통해 지급 시는 입금증빙서류 외에 관련 영수증을 함께 구비하여야 함.
- (2) 세금계산서 등만으로 지출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지출 명세서를 작성 또는 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증빙서류철에 편철·보관함.(선거비용 보전 시에 필요)
- (3) **특히, 선거비용 보전청구시 필수 구비서류(「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의2서식, p.117 참조)는 반드시 구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함.**

### 세부 지출명세서 예시

- 선거벽보 등 법정홍보물 제작 : 기획·도안료 등 세부내역이 포함된 견적서
- 현수막·어깨띠 등 제작 : 규격·재질·단가 등이 포함된 견적서
- 로고송 제작 : 제작비, 저작재산권료, 저작인격권료로 구분하여 작성한 견적서
-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임차 : 차종, 톤수, 임차단가, 확장장비·LED 전광판 등 임차료, 차량래핑비, 홍보물 및 연단의 설비·설치비, 발전기 임차료 등 실제 거래내역이 명시된 견적서

## 라.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편철 방법

- (1)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는 수입·지출이 있는 때마다 구비하여야 하며 매 건마다 수령자별로 영수증 등을 받아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영수증 일련번호란”에 증빙번호를 기재하고 영수증은 계정별·과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편철·보관하여야 함.
- (2)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는 일련번호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수증 등이 잘 보이도록 순서대로 첨부한 후 표지를 붙여서 편철함.

- (3) 하나의 지출건에 여러개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일련번호에 다시 일련번호를 부여(예 : 5-1, 5-2)하여 연이어 첨부함.

☞ [작성예시 18, p.161]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및 정리 참조

## 마. 증빙서류 구비 후에 하여야 할 일

- (1) 회계책임자는 증빙서류에 영수금액, 품명, 계산서 발행일자나 영수일자, 성명(법인·단체명)·주소·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직업(업종) 등의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2) 정상적으로 구비된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증빙서류철에 편철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기재한 영수증 일련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각 증빙서류의 아랫면의 적당한 여백에 기재하여야 함.

## 8 정당 및 후보자의 위법비용 지출 회계처리

### 가. 위법비용 통지

후보자 등의 위법선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비용에 합산할 비용을 (예비)후보자에게 서면통지 함.

※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의 위법비용은 선관위가 통지한 금액을 합산하되, 최종 판결 또는 결정 결과가 통지되면 그 통지된 금액으로 조정함.

### 나. 위법비용 합산 및 회계장부 기재

- (1) 회계책임자는 선관위로부터 통지된 위법선거비용을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선거비용과목에 기재하여야 함.
- (2) 위법비용을 회계보고 시 누락한 경우 선관위가 직권으로 합산 처리함.



## 다. 위법비용 합산에 대한 이의신청

(1) 신 청 자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회계책임자, 위반행위자

### (2) 신청절차

관할 선관위로부터 위법선거비용의 합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내용, 이의사유,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신청

☞ [작성예시 19, p.162] 합산통지에 대한 이의 신청서 참조

### (3)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정하고,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기각 또는 각하처리 됨.





## 회계보고 및 열람·사본교부 등

### <회계보고 개요> / 63

1. 회계처리 마감 / 64
2. 회계보고 기한 / 68
3.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70
4. 회계보고 내역 열람·사본 교부 / 79
5. 회계보고 내역에 관한 이의신청 / 80
6. 회계장부 등 인계·보존 / 82





## 회계보고 개요

- 보고기한 : 선거일 후 30일[2020. 5. 15.(금)]까지
  -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 후 40일[2020. 5. 25.(월)]까지
- 보고자 : 회계책임자
- 보고처 : 관할 선관위
- 보고사항
  - 【(예비)후보자】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 선거비용 지출내역 집계표
    - 재산명세서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후원회 및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
    - 후원회 및 정당의 재산명세서
    - 후원회 및 정당의 수입·지출총괄표
    -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총괄표(후원회 제외)
    - 후원회 및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부(과목별)
    - 후원회 및 정당의 정치자금 지출부(과목별)
    - 과목별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후원금(1회 30만원 초과,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 제외]
    -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정당선거사무소 제외)
    - 대의기관(그 수입기관)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정당만 해당)의 심사의결서 사본(정당선거사무소 제외)
    - 「정치자금법」 제38조제3항에 의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매 분기마다 확인 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 사본(후원회, 정당선거사무소 제외)
    -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중앙당과 그 후원회에 한함)
    - 잔여재산 인계·인수서(사유 발생시, 후원회만 해당)

# 1 회계처리 마감

## 가. 마감기한

- 선거일 후 20일(2020. 5. 5.)까지 회계처리를 마감하여야 함.
  - ※ 회계보고 기한 : 선거일 후 30일(2020. 5. 15.)까지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회계보고는 선거일 후 40일(2020. 5. 25.)까지임.
- 다만,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2020. 3. 2. 이전)에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예비후보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회계처리를 마감하고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 나. 미지급 비용 처리

### [예비]후보자 및 후원회

#### (1) 마감일 현재 미지급 비용이 있는 때

회계장부 해당과목 “내역”란에는 ‘지출건명’을 기재(입력)하고 “지출액”란에는 ‘미지급 금액’을, 영수증일련 번호란(수기작성 시 : 비고란 또는 여백)에 “미지급” 또는 “외상”이라고 기재하며, 증빙 서류로는 대금 청구서를 첨부함.

☞ [작성예시 21, p.164 ① 회계장부 마감 및 재마감 작성 참조

#### (2) 미확정 전화요금 회계처리 등

- 회계보고서 제출 전까지 전화요금이 확정되지 않아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 예상 전화요금을 해당 과목의 “지출액”란에 기재하고 영수증 일련번호란에 미지급으로 기재함.
- 미지급비용이 있는 경우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수기작성시:회계장부)에는 미지급채무로 지출처리를 하더라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서는 아니됨.



## 정당선거사무소

- 회계보고 전까지 정당선거사무소의 미지급금(채무)은 상급당부에서 지원받아 지출(상환)

### 다. 정당의 지원금 회계처리

#### (1) 지원금의 정의

- 「지원금」이란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정책연구소, 시·도당, 정당 선거사무소, 소속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소속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지원한 정치자금을 말함.
- 지원내역은 보조금(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과 보조금외 정치자금 그 밖의 물품·장비·영상물 등 명목 여부를 불문하고 상급당부에서 지원한 모든 정치자금을 대상으로 함.

#### (2) 지원금의 수입·지출 방법

- 지원금 또한 정치자금이므로 수입·지출시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통하여야 함.
- 상급당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회계책임자는 수입 처리시 반드시 '지원금'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지원한 내역은 '조직활동비'과목에서 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 ※ 중앙당 및 시·도당, 정책연구소, 정당선거사무소간 주고받은 지원금을 '지원금'으로 수입·지출 처리하지 않으면 이종으로 계상됨에 유의
-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 회계처리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금을 정치자금의 종류(보조금외 정치자금,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별로 구분하여 수입·지출하고, 사용잔액을 반납받을 때에도 정치자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반납 받아야 함.

## 라. 마감 전 정치자금 반납 및 반환

### [예비]후보자

#### (1) 선거연락소 정치자금 반납

-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가 지출 후 보관하고 있는 정치자금 잔액을 선거사무소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계정·과목의 수입·지출부의 내역란에 '선거사무소 지원금 잔액 반환'이라고 기재한 후 "수입액"란에 해당 금액을 감(-)으로 기재(입력)함.

☞ [작성예시 21, p.164] ② 회계장부 마감 및 재마감 작성 참조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연락소의 정치자금을 반환받은 경우 해당 계정·과목 수입·지출부의 내역란에 '선거연락소 지원금잔액 반환'이라고 기재한 후 "지출액"란에 반환금액을 감(-)으로 기재(입력)함.

☞ [작성예시 22, p.165] ③ 지원금 반환시 수입·지출부 작성 참조

#### (2) 정당지원금 반환

정당의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지원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때에는 회계장부 마감 전까지 지원한 정당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납하여야 함.

※ 장부 기재 방법은 위 선거연락소의 정치자금 반납의 경우와 동일

☞ [작성예시 22, p.165] ④ 지원금 반환시 수입·지출부 작성 참조

#### (3) 후원회 기부금의 인계 등 잔여재산 처분

후원회를 둔 후보자(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회계보고 전까지 아래와 같이 인계하여야 함.



인 계 의 무 자	인 계 처
정당 추천 후보자	소속 정당
무소속 후보자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

☞ [작성예시 20, p.163] 지정권자의 잔여재산 인계·인수서 참조

- ※ • 인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회계보고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정당선거사무소

- 수입·지출 잔액이 발생한 경우 상급당부로 반환

## 마. 마감 방법

-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여야 할 모든 비용을 법정마감 기한까지 정산처리하고 회계를 마감하여야 함.
- 마감방법은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회계 마감일 현재로 수입·지출상황을 확인한 후 수입·지출부를 출력하여 회계책임자가 서명·날인함.
- 수기로 작성한 회계장부를 마감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수입·지출의 총 누계를 기재한 다음 붉은 색의 밑줄을 그어 마감표시를 하고 회계책임자가 서명·날인함.
- 회계마감 후 미지급 비용을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 하기 전에 변제할 경우에는 회계장부 마감란 다음에 그 변제상황을 기재한 후 다시 마감하여 회계책임자가 서명·날인하고, 그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편철 정리함.

※ 영수증 일련번호는 회계마감 시 번호에 연이어서 부여

☞ [작성예시 21, p.164] ⑤ 회계장부 마감 및 재마감 작성 참조

## 2 회계보고 기한

### 가. [예비]후보자

보고자	보고사유	보고대상기간	회계마감일	보고기한
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 (2020. 3. 2.)까지 사망·사퇴 또는 등록무효 그 밖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사유발생일 후 14일까지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 이후 (2020. 3. 3.)부터 후보자 등록개시일 전일(2020. 3. 25.) 사망·사퇴 또는 등록무효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후 20일 (2020. 5. 5.)까지	선거일후 20일 (2020. 5. 5.) 현재	선거일후 30일 (2020. 5. 15.) 까지
	후보자로 등록된 경우	후보자 회계보고에 포함 보고		
후보자회계책임자		후보자등록일(예비후보자 등록일 포함)부터 선거일후 20일 (2020. 5. 5.)까지	선거일후 20일 (2020. 5. 5.) 현재	선거일후 30일 (2020. 5. 15.) 까지

### 나. [예비]후보자후원회

보고자	보고사유	보고대상기간	회계마감일	보고기한
(예비)후보자후원회계책임자	후원회지정권자가 당선된 경우, 낙선에 의해 해산한 경우	후원회 등록일부터 선거일후 20일 (2020. 5. 5.)까지	선거일후 20일 (2020. 5. 5.) 현재	선거일후 30일 (2020. 5. 15.) 까지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후원회 등록일부터 사유발생일 후 14일 이내까지	사유발생일 후 14일 이내까지	사유발생일 후 14일 이내까지

※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선거의 종료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여 해산한 때 제외)하거나 후원회의 지정 철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후 14일 이내 마감하고 회계보고 하여야 함.



## 다. 정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보고자	보고사유	보고대상기간	회계마감일	보고기한
정당의 회계책임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한 경우	2020. 1. 1. ~ 선거일후 20일 (2020. 5. 5.)까지	선거일후 20일 (2020. 5. 5.) 현재	선거일후 40일 (2020. 5. 25.)까지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부터 선거일후 20일 (2020. 5. 5.)까지	선거일후 20일 (2020. 5. 5.) 현재	선거일후 30일 (2020. 5. 15.)까지

## 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와 중앙당후원회

보고자	보고사유	보고대상기간	회계마감일	보고기한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경우	2020. 1. 1. ~ 선거일후 20일 (2020. 5. 5.)까지	선거일후 20일 (2020. 5. 5.) 현재	선거일후 30일 (2020. 5. 15.) 까지
중앙당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 ※ 후원회를 둔 ○○구선거구 국회의원이나 ○○구선거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후보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원회는 선거일후 30일까지 ○○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 ※ 후원회를 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구선거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후보자는 선거일후 30일까지 ○○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를 둔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의원후원회는 선거일후 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 3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가. 회계보고서 작성

(1) 작성주체 : 회계책임자

(2) 보고사항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보고사항(편철순서)	유의사항	
①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 보고 ↓ 서식
② 재산명세서	후원금 및 소속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내역 작성 ※ 재산내역이 0인 경우도 재산명세서 제출	
③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각 계정별 및 과목별로 구분 작성	↑ 첨부 서류 ↓
④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의 거래내역	
⑤ 선거비용 지출내역 집계표 ※ 선거연락소분 집계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경우에만 작성	
⑥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 위의 '①, ②, ③, ④, ⑥' 보고

☞ [작성예시 23-1~23-4, p.166~169] 회계장부 작성 참조



## ○ 정당 회계책임자

보고사항(편철순서)	유의사항
① 회계보고서 제출문서	
② 정당의 재산명세서	
③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④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총괄표	
⑤ 정당의 수입부 - 표지, 내지	각 계정별 과목별로 구분 작성
⑥ 정당의 지출부 - 표지, 내지	각 계정별 과목별로 구분 작성
⑦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⑧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표지, 내지	
⑨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	
⑩ 대의기관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서 사본	
⑪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 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 사본	

↑ 보고  
↓ 서식

↑ 첨부  
↓ 서류

## ○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위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보고

☞ [작성예시 24-1~24-11, p.170~181] 회계장부 작성 참조

## ○ 후원회 회계책임자

보고사항(편철순서)	유의사항
회계보고서 제출 문서	
후원회의 재산명세서	
후원회의 수입·지출 총괄표	
후원회의 수입부	각 계정별 과목별로 구분 작성
후원회의 지출부	각 계정별 과목별로 구분 작성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후원금 기부자 명단 -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자체 감사기관 감사의견서	
대의기관(수임기관)의 심사의결서 사본	
잔여재산 인계·인수서(사유 발생시)	

↑ 보고  
↓ 서식

↑ 첨부  
↓ 서류

☞ [작성예시 25-1~25-11, p.182~193] 회계장부 작성 참조

### (3) 작성방법

####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각각 작성 보고
- 선거비용 지출내역 집계표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시 첨부
- 재산명세서  
재산명세서의 각 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재산내역을 명세서상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항목별 세부내역을 별지로 작성 첨부하여야 함.

구 분	작성 내용
토 지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 등의 사무소부지 등 용도별 내역을 기재함.
건 물	선거사무소에 한하여 기재함. ※ 전세금 등의 경우는 '그 밖의 재산' 란에 기재함.
주식 또는 유가증권	보유하고 있는 주식, 국공채 등 당해 증권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함.
비 품	책상, 의자, 복사기, 전화기 등을 기재하며, 일회용 소모품은 제외함.
현금 및 예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예금을 기재하되 <u>수입·지출명세서상 잔액과 일치하여야 함.</u>
그 밖의 재산	각종 임차재산의 임차금액(보증금, 전세금 등), 차입금(변제후 잔액), 예술공예품(도자기, 액자 등), 기타 무형재산 등을 기재함.
수 량	건물의 경우는 면적(㎡)을, 비품의 경우는 보유수를 기재하되 특히 비품의 경우 종류가 많을시 ○○외 ○○점으로 기재하고 별지에 그 내역을 작성·첨부하고, 기타의 경우 물품은 보유수를 기재함.
내 용	건물의 경우 지반·형(목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등)·동수·건평 등을 상세히 기재함.
가 액	회계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재산의 현시가(시가산정 불능시에는 구입가격 또는 평가액)로 환산하여 기재하며, 비품의 경우는 그 취득가격을 기재함.



##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각 계정별로 보조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예비후보자·후보자 자산계정, 후원회기부금계정을 따로 설정하고,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을 구분하여 작성
- 지출연월일·적요 등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영수증 일련번호』를 다음 예시와 같이 과목별·지출일자별로 부여함.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라 기재함.

## 【예 시】

구 분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자 산	자(비)-	자-
후원회기부금	후(비)-	후-
보 조 금	보(비)-	보-
보 조 금 외	외(비)-	외-

## ○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 수입·지출용으로 사용된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출하되 회계책임자가 원본대조 확인을 한 후 제출함.
- 보고대상 기간 중 대표자·회계책임자 등의 변경이 있어 새로운 예금통장을 개설·사용한 경우 변경 전 예금통장을 포함, 모든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지출증빙서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을 말함.
  - ※ 여러 물품 등을 1회에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체크카드매출전표에 총금액만 기재된 경우 세부내역이 명시된 거래내역서를 체크카드매출전표에 첨부하여야 함.
- 1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출한 경우에도 각각의 지출건마다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는 거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에서 출력물로 제출 가능한 보고항목은 그 출력물로 대체
- 표지와 내지로 구분·작성하되 내지(증빙서류)는 보조금외 정치자금,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우선 분류한 후 해당과목별로 구분하여 적정분량(300매 정도)으로 편철함.
- 과목별로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A4용지를 횡으로 하여 1면에 적정 매수를 첩부하고 그 하단 여백에 과목별로 증빙서의 관리번호를 기재함.
  -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관리번호는 수입·지출부의 「영수증 일련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 정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 정당의 재산명세서 :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와 동일
-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 수입·지출과목 해소표(p.243 참조)에 의거 구분·기재함.
  - 수입과 지출의 금액은 과목별로 총액을 기재하되, 보조금외 정치자금,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반드시 구분 경리하여 작성하여야 함.
  - 수입·지출금액은 회계보고 대상기간의 과목별 총액을 기재함.
-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 총괄표 : 재산명세서 및 수입지출 총괄표 참조
- 정당의 수입부 / 지출부
  - A4 용지를 횡으로 하여 표지와 내지로 구분·작성함.
  - 내지에는 모든 수입내역을 보조금외 정치자금,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및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구분하되, 수입과목별로 분류하여 기재함.



- 당비의 경우 일자별로 납입건수와 총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지출연월일·적요 등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영수증 일련 번호』를 다음 예시와 같이 과목별·지출일자별로 부여함.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 이라 기재함.

### 【예 시】

구 분	보조금외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선거비용	비-	경상-비-	선거-비-	여성-비-	장애-비-
인건비	인-	경상-인-	선거-인-	여성-인-	장애-인-
사무소설치운영비	사-	경상-사-	선거-사-	여성-사-	장애-사-
정책개발비	정-	경상-정-	선거-정-	여성-정-	장애-정-
조직활동비	조-	경상-조-	선거-조-	여성-조-	장애-조-
여성정치발전비	여-	경상-여-	선거-여-	여성-여-	장애-여-
그 밖의 경비	그-	경상-그-	선거-그-	여성-그-	장애-그-
보조금-상급		경상-상-	선거-상-	여성-상-	장애-상-
보조금-하급		경상-하-	선거-하-	여성-하-	장애-하-
보조금외-상급	상-				
보조금외-하급	하-				

- 지출일자와 실제 영수증발급일자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은 바, 영수증을 지출일자에 발급받음으로써 지출일자를 일치 시켜야 함.
- 정당의 지출부는 지출건별로 작성하여야 함. 1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출한 경우에도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일자가 다른 건을 한 건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됨.
-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와 동일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와 동일

### 후 원 회

- 후원회의 재산명세서 :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와 동일
- 후원회의 수입·지출총괄표
  - 수입과 지출의 금액은 회계보고 대상기간의 과목별 총액을 기재함.

- 수입란 중 '전년도 이월'란에는 『0』으로 기재하고, '후원금'란에는 기명과 익명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 1회 30만원 초과(30만원까지는 제외) 또는 연간 300만원(300만원까지는 제외)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 :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와 수입일자 및 그 금액을 기재 / 그 이하의 금액을 제공한 자의 경우 : 일자별로 그 총건수와 총금액을 기재(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음)

- '그 밖의 수입'란에는 '전년도 이월', '후원금'을 제외한 예금이자 등 수입을 기재함.

- 지출란 중 '기부금'란에는 후원회를 지정한 후보자에게 기부한 기부금을 기재하고 '후원금 모금경비'란에는 금품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안내장 발송비 등)만을 기재

※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의 지정권자에게만 기부를 할 수 있음.

- '기본경비'란에는 후원회가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상적인 경상경비를 인건비와 사무소설치·운영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밖의 경비'란에는 상기 지출외의 경비를 기재함.

○ 후원회의 수입·지출부

- 표지와 내지로 구분·작성하되 내지에는 회계보고 대상기간의 모든 수입·지출내역을 과목별로 분류하여 빠짐없이 기재함.

- 지출연월일·적요 등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영수증 일련번호』를 다음 예시와 같이 과목별·지출일자별로 부여함.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라 기재함.

【예 시】

구분	지출
기부금	기-1
후원금 모금경비	모-1
인건비	인-1
사무소설치운영비	사-1
그 밖의 경비	그-1



- 지출일자와 실제 영수증 수령(발급)일자는 동일하여야 하고 지출부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일자가 다른 여러 건을 한건으로 처리해서는 안됨.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와 동일
- 후원금 기부자 명단
  -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와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로 각각 구분 기재하여 별도로 작성·제출함.
  - ※ 중복되는 경우 각각 기재하여야 함.
  - ※ 예비후보자후원회에 기부금품을 납입·기부한 자가 후보자후원회에도 기부금품을 납입·기부한 경우 그 합계금액이 연간 300만원(1회 30만원 포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인적사항과 금액을 보고하여야 함.
-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와 동일
-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
  - 감사의견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회계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권한 있는 기관이 감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면 이를 감사의견서로 인정할 수 있음.
  - 감사의견에는 회계처리가 정치자금법 및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함.
  - 감사자의 직위 등은 정관·규약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규약에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에서 임시감사기관을 구성하여야 함.
-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의 심사·의결서 사본
  - 심사·의결서는 회계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권한 있는 기관이 심사·의결하였음을 나타내도록 하고, 후원회의 정관·규약 상에 규정된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의 명칭 및 심사·의결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확인하여야 함.

- 세부내역은 회계보고서 제출하는 명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의결서의 내용에 명시하여야 함.

○ 후원회의 잔여재산 인계·인수서

잔여재산은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 하기 전까지 당해 후원회 지정권자가 당원인 경우 정당에, 후원회지정권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한 후 인계·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보고서의 연대서명·날인(후원회 및 정당선거사무소 제외)**

○ 회계보고서에는 회계책임자와 연대 서명·날인대상자가 모두 연대 서명·날인함.

구 분		연대 서명·날인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		정당의 대표자와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 회계보고서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 회계보고서	선거연락소장

※ 다만, 정당이 선거사무장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 회계보고서 제출문서에 대표자의 연대 서명·날인만 받아도 무방함.

**(5) 유의사항**

○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의 수입·지출 각 해당란에 '0'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연대서명·날인자의 연대서명·날인을 받아야 함.

○ 회계보고서 법정제출서류가 당해 후보자 등에게 해당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보고서식의 빈칸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제출에 있어 정치자금(선거비용 제외) 1건의 지출 금액(1건의 계약과 관련된 지출이 수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5만원[중앙당(정책연구소 포함), 시·도당, 대통령선거경선 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경우는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이 경우에도 증빙서류는 구비·보존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등록 전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도 회계보고에 포함(합산)하여 보고하여야 함.(p.14 참조)

## 나. 회계보고서 제출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 4 회계보고 내역 열람·사본 교부

가. 기 간 : 관할 선관위가 회계보고 내역을 공고한 날부터 3월간 열람(사본교부는 제한 없음)

나. 신청권자 : 누구든지

다. 신청처 : 관할 선관위

라.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모사전송포함) 신청

☞ [작성예시 26, p.194] 열람·사본교부 신청서 참조

## 마. 열람 및 사본교부 대상서류

(1) 열람대상 서류 : 회계보고서류 일체

※ 선거비용은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공개할 수 없으며,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 이하를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은 열람 및 사본교부 대상이 아님.

※ 관할 선관위는 정당 및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보고한 회계서류 중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기간 동안 공개할 수 있음.

- (2) 사본교부 대상서류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사본과 수입·지출예금통장 사본을 제외한 회계보고 서류 일체

## 바. 사본교부 비용 부담

- (1) 부 담 자 : 사본교부 신청자  
(2) 금 액 :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금액  
(3) 납부방법 : 신청서에 해당금액을 수입인지로 첨부

## 5 회계보고 내역에 관한 이의신청

### 가. 이의신청방법

- (1) 신청기간 : 열람기간중  
(2) 신청처 : 관할 선관위  
(3) 신청권자 : 누구든지  
(4) 신청방법 : 이의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직업과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고, 이의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 [작성예시 27, p.195] 회계보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참조

### 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1) 이의신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  
(가) 이의신청 보정요구  
○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 이의신청내용과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등

#### (나) 이의신청 각하

-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제기한 경우
- 이의신청인이 보정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 (2) 이의신청이 요건을 구비한 때

#### (가) 소명자료 제출요구

관할 선관위는 정당, 후원회, 후보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그 밖의 관계인((2)에서 “정당등”이라 함)에게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나) 이의신청 상대방의 소명자료 제출

이의신청내용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당 등은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다) 소명결과의 공고·통지

- 공고 : 이의신청내용과 소명내용(소명자료 미제출시는 소명이 없음)을 공고
- 통지 : 이의신청인에게 소명내용(소명자료 미제출시는 소명이 없음)을 서면통지
  -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사항 조사·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 (라) 이의신청사항 등에 대한 조사·확인

관할 선관위는 이의신청사항 및 그 증빙서류와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당해 정당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장부·서류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 ※ 정당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선관위의 소명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질문이나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확인한 사실이 법에 위반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가. 회계장부 등 선임권자에 대한 인계

- (1) 인계·인수자 : 회계책임자와 그 선임권자
- (2) 인계·인수시기 :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 없이
- (3) 인계대상 : 회계장부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관련된 모든 서류

### 나. 회계장부 등 보존·위탁

- (1) 보존의무자 :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
- (2) 보존기간 : 회계보고를 마친 날부터 3년간
- (3) 보존위탁

회계책임자는 선임권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관할 선관위에 보존을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위탁 보존물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권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는 반환신청서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함.

☞ [작성예시 28, p.196] 회계장부 등 보존위탁 신청서 참조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 제2장

# 후원회





# I

## 후원회 제도

---

### <후원회 제도 개요> / 87

1. 후원회의 정의 / 88
2. 후원회의 등록 / 88
3. 후원회의 회원 / 91
4. 후원회의 기능 / 92
5. 후원인(회원, 비회원 모두를 말함)의  
연간 기부한도액 / 92





### □ 후원회의 개념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 □ 후원회의 기능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의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는 역할을 함.

### □ 후원인(회원, 비회원 모두를 말함)의 연간기부한도액

- 후원인이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2천만원이하
-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5백만원이하
-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기부 가능

## 1 후원회의 정의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 2 후원회의 등록

### 가. 등록신청

#### (1) 등록신청

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작성예시 29, p.197] 후원회 등록신청서 참조

#### (2) 등록신청사항

후원회의 명칭·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3) 구비서류

후원회 등록신청서,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인영서, 후원회지정서,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작성예시 29~35, p197~213] 참조

### 나. 후원회의 명칭·사무소 설치

#### (1) 후원회의 명칭

○○당중앙당후원회,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 (2) 사무소 설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에 사무소



또는 연락소 각 1개를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사무소를 둔 지역구 안에는 연락소를 둘 수 없음.

※ 중앙당후원회는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음.

※ 예비후보자 후원회는 1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음.

## 다.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후원회의 사무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중앙당후원회는 제한없음.

## 라. 유의사항

### (1) 후원회 지정서 [작성예시 33, p.206]

후보자는 후원회가 창립총회를 거쳐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의 제정, 대표자 선임 등 내부기구가 구성되고 후원회로서 제반 구성요건(등록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후원회 지정을 하여야 함.

### (2) 정관 또는 규약 [작성예시 30, p.198]

○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명칭·목적 및 소재지
- 회원의 가입과 탈퇴 등 신분에 관한 사항
- 후원금의 모금 및 기부에 관한 사항
- 대표자·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대표자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에 관한 사항
- 후원회의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관 또는 규약은 후원회결성 회의시 그 대의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함.

### (3) 취임동의서 [작성예시 31, p.204]

○ 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의 회원으로서 후원회결성 회의시 선출하여야 함.

- 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음.

**(4) 인영서 [작성예시 32, p.205]**

- 명칭은 당해 후원회의 명칭을 기재함.
- 회인은 당해 후원회의 명칭에 '인'자를 붙여 조각하여 날인함.  
[예 :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인]
- 대표자 직인은 후원회 명칭에 '대표자인'을 붙여 조각하여 날인함.  
[예 :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대표자인]

**(5) 후원회의 회의록 [작성예시 34, p.207]**

- 후원회의 성립·소멸과 변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당해 후원회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후원회의 구성원인 회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결정하여야 함.
- 후원회가 등록·변경등록신청 및 해산신고와 관련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회의록에는 회의개최 일시·장소, 성원상황과 부의안건처리 등 회의진행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자와 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후원회의 관계자가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원본대조필 표시와 대표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마. 후원회 변경등록**

- (1) 후원회의 대표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2) 변경등록사항 : 명칭, 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 인영
- (3) 변경등록신청서 작성은 등록신청서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함.  
[작성예시 36, p.214]



### 3 후원회의 회원

#### 가. 회원이 될 수 없는 자

개인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다음의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

- (1)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3) 사립학교의 교원
- (4)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및 교원(정당법 제22조)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다음의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음.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원·행정보조요원
-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

#### 나. 회원 관리

- (1) 후원회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이 후원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나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작성예시 37, p.215]
- (2) 후원회는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을 회원명부에 정리하여야 하며, 회원명부·가입원서·탈퇴원서 등 회원의 가입과 탈퇴 등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작성예시 38, p.216]

## 4 후원회의 기능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의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역할을 함.

## 5 후원인(회원, 비회원 모두를 말함)의 연간 기부한도액

- 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공직선거의 유무에 관계 없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나. 후원인은 하나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에 500만원(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음.
- 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그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야 하나,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음.



## II

# 후원금의 모금·기부

### <후원금 모금·기부 개요> / 95

1. 후원금의 모금 / 96
2. 모금의 고지·광고 등 / 96
3.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교부 / 99
4. 모금유형별 경리 방법 / 102
5. 지정권자에 대한 후원금의 기부 / 103
6. 후원금 초과모금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방법 / 104
7. 불법 후원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 / 105
8.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 처분 / 106





## 후원금 모금·기부 개요

### □ 후원금의 개념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함.

### □ 후원금의 모금

#### ○ 모금주체 : 후원회

#### ○ 모금·기부한도액 : 1억 5천만원

※ 중앙당후원회는 중앙당창준위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 ○ 후원금 모금방법

-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함)에 의한 모금
-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 그 밖에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

### □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 처분

#### ○ 처분시기 :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 하기 전까지

#### ○ 처분방법

- 후원회지정권자가 당원인 경우 : 해산당시 소속정당에 인계
- 후원회지정권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학교법인을 포함)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 인계

※ 잔여재산을 인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 1 후원금의 모금

가. 모금주체 : 후원회

나. 모금한도액

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1억 5천만원(중앙당후원회는 50억원)임. 다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100억원)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된 국회의원후원회(3억원)는 연간모금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는 모금액이 모금한도에 근접한 경우에는 수시로 예금계좌 등을 확인하여 계좌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후원금 모금방법

- (1)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함)에 의한 모금
- (2)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 (3)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 (4) 그 밖에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

※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지로·ARS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지불결제서비스」에 의한 모금의 경우 정산을 거쳐 후원회 수입계좌로 입금되는 데 일정 시일이 소요(후원회가 해산된 후 후원금이 입금될 수 있음)됨을 유념.

## 2 모금의 고지·광고 등

가.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 내용 및 방법

(1) 고지 내용

- 후원회는 회원 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기부처·기부방법



-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음.
- 다만, 다른 정당·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음.

## (2) 고지 방법

주 체	고 지 방 법
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경우를 제외함. 이하 같음)</li> <li>○ 전자우편</li> <li>○ 전화자동응답장치</li> <li>○ 인터넷홈페이지</li> <li>○ 안내장(지로용지 포함) 발송</li> </ul>
후원회의 지정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li> <li>○ 전자우편</li> <li>○ 전화자동응답장치</li> <li>○ 인터넷홈페이지</li> <li>○ 「공직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에서 정한 당해 선거운동방법</li> <li>○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정활동보고</li> <li>○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또는 해당 정당이 당헌 등에서 정한 당내경선운동방법</li> </ul>

## 나. 광고에 의한 후원금 모금내용 안내

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분기별 4회 이내에서 후원금의 모금과 회원의 모집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할 수 있음. 이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함.

### (1) 광고규격

- 신문광고 : 길이 17cm, 너비 18.5cm 이내
- 신문광고 외의 광고 : 당해 정기간행물의 2면 이내

### (2) 의무 게재 사항

광고에는 광고근거("이 광고는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말함)와 광고하는 후원회의 명칭을 게재하여야 함.

### (3) 횟수 산정

- 같은 날에 발행되는 하나의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 같은 날에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발행 일자가 각각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광고횟수는 1회로 봄.

## 다. 안내장에 의한 후원금 모금내용 안내

(1) 안내장의 규격·매수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1매 이내

### (2) 봉투 의무 게재 사항

- 안내장의 봉투에는 발송근거("이 안내장은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말함)와 발송하는 후원회의 명칭을 게재하여야 함.
- 발송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내장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배부 근거("이 안내장은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하여 배부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말함)와 후원회의 명칭을 안내장에 게재하여야 함.

(3) 발송통수 : 3,000통 이내(중앙당후원회는 제한없음)

-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에 따름.



#### (4) 발송방법

- 안내장은 우편발송 외에도 발송통수 이내에서 당해 후원회의 사무소·지정권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할 수 있음.
- 발송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내장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배부 근거(“이 안내장은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하여 배부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말함)와 후원회의 명칭을 안내장에 기재하여야 함.

### 라. 명함에 의한 후원금 모금내용 안내

후원회의 대표자·회계책임자 및 유급사무직원, 후원회지정권자인 후보자와 그 회계책임자, 정당의 간부(구·시·군단위 책임자 포함)와 유급사무직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 및 비서는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에 모금내용을 담아 알릴 수 있음.

## 3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교부

### 가.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 (1) 정치후원금센터(후원회관리자) 사이트를 이용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 정치후원금센터 후원회관리자(<http://support.give.go.kr>) / 후원금관리 / 후원금등록(일괄등록·수기등록)에서 후원금 데이터 등록
- 후원금 데이터 등록 후 후원금관리-후원금 / 영수증관리 메뉴에서 조회 후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출력)

#### (2) 수기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종류와 발급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함.
-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의 뒷면에 첨부하여야 함.

- 후원회가 연간 발급받을 수 있는 정액영수증의 액면가액 총액은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이 경우 후원회는 일시에 발급받아 과도한 수량을 반납하지 않도록 적정매수를 발급 신청하여야 함.
- 관할 선관위는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함.

### (3) 종류 · 발급신청매수

구분	종류	발급신청매수
무정액영수증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을 고려하여 발급신청
정액영수증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500만원권	액면가액총액이 당해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 이내에서 발급신청

## 나.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 교부

### (1) 원칙

- 후원회가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 받은 때에는 기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1회 1만원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 말일(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 현재로 일괄 발행 · 교부할 수 있음.

#### 무정액영수증 발행방법

무정액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10만원은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음.

\* 예 시

- 170,000원 기부시 : 정액 10만원권 1매 + 무정액 7만원
- 135,000원 기부시 : 정액 10만원권 1매 + 무정액 35,000원 또는 정액 10만원권 1매 + 정액 1만원권 3매 + 무정액 5천원



## (2)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후원회가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음.

- 후원인이 정치자금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익명기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기부로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 후원인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 영수증을 미발행하거나 영수증 원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세액(소득) 공제를 위한 후원인의 민원에 대처할 수 없음.(회계보고 후에는 영수증의 추가 발급이 불가)

## (3) 발행·교부방법

- 정치자금영수증에 금액(무정액영수증에 한함)과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발행연월일을 기재하고, 회계책임자의 인장으로 간인한 후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함.
- 정치자금영수증원부에는 금액, 발행연월일,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를 기재함.

## 다. 정치자금영수증 관리

후원회는 「정치자금영수증 발행·반납대장」을 비치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의 수령·발행·반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함. [작성예시 40, p.218]

## 라. 유의사항

- (1) 후원회는 무정액영수증의 기재금액 및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 받고 사용할 수 없음.
- (2) 정치자금영수증 발급·발행·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여서는 아니됨.

## 마. 잔여매수 반납

- (1) 사용하지 않은 정치자금영수증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함. [작성예시 41, p.219]
- (2) 기한 내에 매수를 보고 또는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 총액을 기부 받은 것으로 봄.

## 4 모금유형별 경리 방법

### 가. 우편(모금 안내장)·예금계좌에 의한 모금의 경우

안내장에 기재된 후원회 입금계좌를 확인하여 수입이 있는 때마다 「수입계정-후원금」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 나. 지로·전화 및 신용카드·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한 모금의 경우

전자지불결제서비스 업체 등 해당 취급점에서 후원회 수입계좌로 실제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그 내역(수입금액은 해당취급점이 취급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인 후원인이 실제 후원한 기재함)을 「수입계정-후원금」에 기재하여야 함.

### 다.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에 의한 모금의 경우

#### (1) 직접 모금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으로 모금한 때에는 그 때마다 「수입계정-후원금」에 기재하여야 함.

#### (2) 위임 모금

-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에 수입자의 인적사항과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내역을 기재하고, 수입자에게는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함. [작성예시 42-1, 42-2, p.220~221]



※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후원회가 관할 위원회로부터 발급받아 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직접 교환하는 방법으로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은 위임장의 교부를 요하므로 구두나 묵시적 방법에 의한 위임은 허용불가

- 수입자는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이 있는 때에는 후원금을 인계하는 때마다 「후원금의 인계·인수서」를 2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함. [작성예시 42-3, p.222]
-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수입자로부터 후원금을 인수한 때마다 그 내용을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입계정 - 후원금」에 기재함. [작성예시 42-1, p.220]
-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 원부와 후원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 및 후원금을 인계하여야 함.

## 5 지정권자에 대한 후원금의 기부

### 가. 기부한도액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모금 한도액과 같은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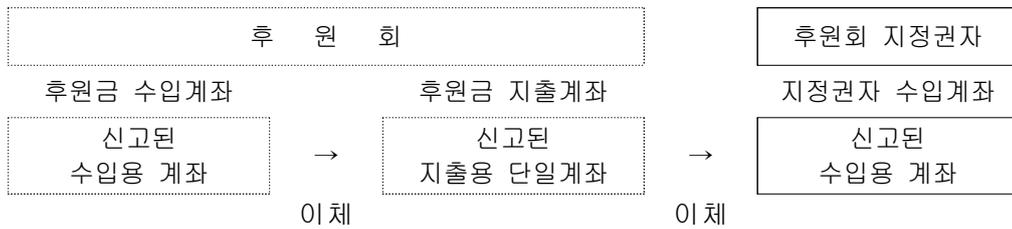
### 나. 기부방법

- (1)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함.(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음)

※ 부득이하게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회계보고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음.

※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 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 받은 것으로 봄.

(2)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지정권자에 대한 기부시 후원회의 후원금 지출계좌에서 지정권자의 수입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기부하여야 함.



## 나. 회계처리방법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후원금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 때마다 그 내역을 「지출계정 - 기부금」에 기재하여야 함.

# 6 후원금 초과모금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방법

## 가. 사전준비

- (1) 모금방법별(ARS, 카드, 계좌이체 등) 담당자 연락처 사전확보
- (2) 계좌폐쇄에 필요한 서류(대표자 위임장, 인감 등) 확인 및 사전 준비

## 나. 업무처리 요령

### (1) 후원회 모금액에 대한 확인·점검

- 모금한도액 임박시 매일 모금액을 확인하되 후원회 계좌에 이체된 금액뿐만 아니라 이체예정인 금액까지 포함하여 모금한도액을 계산



※ 전자결제대행사, 각종 카드사 포인트 기부사이트, ARS 등은 해당업체 홈페이지와 관리업체 등을 통해 사전에 후원금 모금내역 확인 가능

-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 전일 오후에는 반드시 모금액을 확인하고, 휴무일 다음날 오전에는 휴무일 동안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여 초과모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2) 모금중지 조치

- 후원회는 후원금 모금방법별(휴대전화, 카드, 포인트 등) 계좌이체 기간을 고려하여 모금 중지 조치

## 다. 후원금 초과모금에 대한 처리

위와 같이 후원회의 확인·점검 조치 등을 게을리하여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을 후원인에게 반환하거나 국고귀속 조치

# 7 불법 후원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

## 가. 불법 후원금의 반환

### (1) 반환대상 및 방법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함.
- 반환할 경우 이미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후원인에게 교부한 영수증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함.

### (2) 회계처리방법

반환한 후원금은 「수입계정 - 기명후원금」에서 감처리하고, “○○○

불법후원금 반환” 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고 반환받은 정치자금 영수증과 입금영수증을 합본하여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함.

## 나. 국고귀속 사유 및 절차

### (1) 사유 및 절차

- 불법 후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선관위를 통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내역보고서」를 관할선관위에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선관위에서 국고금 납부통지가 있는 때에는 통지된 납입 계좌에 반환대상 후원금을 납입하여야 함. [작성예시 43, p.223]

### (2) 회계처리방법

회계책임자가 귀속대상 후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수입계정-해당과목」에서 감처리하고 “불법후원금 선관위 국고귀속”으로 사유를 기재한 후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내역보고서와 입금증을 합본하여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함.

※ 후원회가 해산된 후에 기부된 후원금은 지체 없이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회계 보고 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함.

## 8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 처분

### 가. 처분시기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 하기 전까지



## 나. 처분방법

### (1) 후원회지정권자가 당원인 경우

해산 당시 소속 정당에 인계함.

### (2) 후원회지정권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학교법인을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함.

## 다. 인계방법

후원회의 잔여재산 인계·인수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회계보고시 증빙서류로 첨부, 제출하여야 함. [작성예시 25-11, p.193]

## 라. 국고귀속

잔여재산을 인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 제3장

# 선거비용 보전



# I

##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비용 보전청구 개요> / 113

1. 선거비용 보전요건 / 114
2. 선거비용 보전기준 / 114
3. 보전청구 절차 / 115
4. 점자형 선거공보 등 작성비용 등의  
국가 부담 / 118





## 선거비용 보전청구 개요

- 청구기한 : 2020. 4. 27.(월)까지
  - ※ 청구내역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 청구 가능
- 청구권자 :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하 '정당'이라 함)
- 보전요건
  -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보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보전
- 청구내역 확인 및 지급
  - (1) 청구내역 확인  
보전비용 지급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청구내역 진실성 및 보전대상여부 확인
  - (2) 보전비용 지급  
2020. 6. 12.(금)까지 보전청구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

## 1 선거비용 보전요건

### 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2)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2 선거비용 보전기준

### 가. 선거운동기간 중 합법적인 선거운동 비용만 보전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이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보전 받을 수 없음.

### 나.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진실한 비용만 보전

관할 선관위에 보고되지 아니한 비용 및 허위로 보고된 비용, 정당한 사유없이 적법한 영수증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보전받을 수 없음.

### 다.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보전

「공직선거법」에 따라 합법적인 선거운동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도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보전받을 수 없음.



**라.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 범위 내에서 비용 보전**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 가액은 보전하지 아니함.

**마.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실제로 지출한 선거운동 비용만 보전**

정당 및 후보자 소유의 차량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 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 받는 등 정당 및 후보자가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하지 아니함.

**바.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비용은 미보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장비·물품 등의 구입·제작·임차비용은 보전하지 아니함.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배부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참조

**3 보전청구 절차**

선거비용 보전은 정당한 청구권자(정당, 후보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보전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님.

**가. 보전청구서 작성** : [작성예시 44, p.224]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참조

**나. 청구기한** : 2020. 4. 27.(월)까지

※ 보전청구서에 누락된 사항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로 보전청구 가능

**다. 첨부서류**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선거비용과목만 해당) 사본 1부

-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사본(「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 포함) 1부
- 선거연락소별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선거연락소가 있는 경우) 사본

**【청구인 연대 서명·날인】**

구 분		연대 서명 · 날인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보전청구서		정당의 대표자와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 보전청구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 보전청구서	선거연락소장

**라. 보전비용 지급**

- 지급기한 : 2020. 6. 12.(금)까지
- 지급방법 : 보전청구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



[별표 1의2]

##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항 목 구 분		제 출 자 료	
항 목 명	세부구분	자료형태	포 함 내 용
선거사무소 등 간판·현판 ·현수막 (법 제61조)	설치·철거 ·교체	사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판·현판·현수막 설치·철거·교체 장소, 규격, 재질, 내용</li> <li>◦ 스테인리스, 합판, 철판 등 보조구조물</li> <li>◦ 특수장비(크레인 등) 사용</li> </ul>
거리게시용 현수막 (법 제67조)	설치·철거 ·교체 및 이동게시	사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수막 설치·철거·교체 장소, 규격, 재질, 내용</li> <li>◦ 오·훼손에 따른 교체</li> <li>◦ 특수장비(크레인 등) 사용</li> <li>◦ 이동게시 내역 및 장소</li> </ul>
어깨띠 등 소품 (법 제68조)		사 진	◦ 어깨띠·윗옷·모자·마스코트·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의 종류, 수량, 규격, 재질
신문광고(법 제69조)		신문스크랩	◦ 게재 신문사, 내용 및 횟수
방송광고(법 제70조)		파 일 (영상)	◦ 방송광고 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법 제79조)	연설· 대담차량	사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종, 차량번호, 연단·조명·래핑 등 각종 홍보·설치물</li> <li>◦ 발전기 종류, 용량</li> <li>◦ 최초 및 최종 차량운행일 당시의 주행거리(계기판)</li> </ul>
	확성장치, 녹화기(LED 전광판) 등	사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성장치 종류, 수량, 규격, 용량</li> <li>◦ 녹화기(LED 전광판 등) 종류, 수량, 규격, 해상도</li> </ul>
	로고송 및 녹화물	파 일 (음원·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고송 수량, 종류, 내용</li> <li>◦ 녹화물 수량, 종류, 내용</li> </ul>
전화(법 제82조의4)		사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운동용 임차전화 설치장소, 대수</li> <li>◦ 전화홍보시스템(일반전화홍보시스템, 서버운영 시스템 등) 운영장비</li> </ul>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법 제82조의5)		사진 또는 화면스크랩	◦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일시, 횟수, 통수, 내용
인터넷 광고 (법 제82조의7)		파일 또는 화면스크랩	◦ 광고(동영상·팝업 등)의 종류 및 규격
명함(법 제93조)		사진 또는 실물	◦ 명함의 종류 및 규격

- 주: 1. 자료형태는 사진, 신문스크랩, 파일 외에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다른 형태의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선거운동에 사용한 항목에 대하여 보전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에 법은 「공직선거법」을 말한다.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급한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 포함)의 수당과 실비를 선거일 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함.

### 가. 부담범위

-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 ※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선임하였으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는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음.
  - ※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범위
    -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 모든 등급의 사람
    - 그 밖의 장애인 :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사람
- 점자인쇄비·제본비·지대(150g/m<sup>2</sup>이내의 백상지 기준)와 점자형 선거공보 앞면의 선거명·선거구명·후보자성명 한글 인쇄료
- 점자형 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운반비
  - ※ 부담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으로 지출 처리

### 나. 청구절차

- 청구권자 : 점자형선거공보 등을 제출하거나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모든 정당 및 후보자
- 첨부서류 : 해당 수입·지출부 사본, 활동보조인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 청구기한 : 2020. 4. 27.(월)까지

### 다. 부담비용 지급

- 지급기한 : 2020. 6. 12.(금)까지
- 지급방법 : 청구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



## II

# 선거비용 보전제한 및 반환

<선거비용 보전제한 및 반환 개요> / 121

1. 위법비용 등 보전제한 / 122
2. 미보전 사유 발생시 보전비용 반환 / 123
3.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 / 124
4. 반환 기탁금·보전비용의 정당 등 인계 / 125





## 선거비용 보전제한 및 반환 개요

- 보전제한 주요사유
  -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등 위반 시
  
- 선거비용 반환대상
  - 보전비용 지급 후 착오 지급된 보전비용 발견 시
  -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시
  - 비례대표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

### 가. 전액 미보전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나. 해당금액의 2배 미보전

#### (1) 사 유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경우

#### (2) 보전제한금액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 다. 해당금액의 5배 미보전

#### (1) 사 유

정당, (예비)후보자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보전제한금액 :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 라. 해당금액의 2배 보전유예

#### (1) 사 유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

(2) 유예기간 :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3) 유예금액 :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 유예된 보전비용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정산 처리됨.

### 마. 보전이후 반환명령

(1) 사 유 : [가 ~ 다]의 미보전 사유가 보전이후 발견된 때

(2) 반환기한 :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3) 징수위탁

기한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 2 미보전 사유 발생시 보전비용 반환(「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3)

### 가. 반환대상자

선거비용 보전 이후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정당한 사유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등 미보전 사유가 발견된 때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

나. 반환대상금액 : 보전비용 중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금액

다. 반환기한 :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라. 징수위탁

기한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 3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공직선거법」제265조의2)

#### 가. 반환대상자

- (1) 당해 선거에 있어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보전받았으나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 포함)

※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당선이 모두 무효된 때에는 그 추천정당이 반환함.

-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 나. 반환대상금액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구선관위로부터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금액 전액

#### 다. 반환기한 : 반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라. 징수위탁

반환기한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의 경우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



### 가. 인계대상자

후원회기부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반환·보전받은 후보자

※ 다만,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은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 할 수 있음.

### 나. 인계대상비용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보전비용에서 후보자의 자산 또는 차입금으로 지출한 기탁금 또는 정치자금(선거비용+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을 공제한 금액

### 다. 인계·인수대상

- 정당추천후보자 : 소속 정당
- 무소속후보자 :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

### 라. 인계시기 및 인계·인수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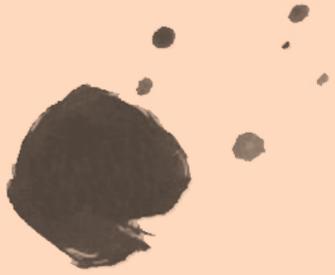
- 인계시기 : 보전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인계·인수서 제출 : 보전받은 날부터 30일까지 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인수서를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함.  
☞ [작성예시 46, p.226] 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인수서 참조
- 인계·인수서에는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정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인계대상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할 필요없음.

### 마. 인계·인수관련 유의사항

- 보전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정당 등에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 국고귀속 : 인계기한을 초과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금액을 인계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인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고귀속처리 됨.
- 벌금형 처분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48조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작성예시]







- [1-1]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133
- [1-2]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별지  
(인계·인수내역) ..... 134
- [2-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135
- [2-2]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첨부서류(취임동의서) ..... 136
- [2-3]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첨부서류(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137
- [3] 회계책임자 겸임신고서 ..... 138
- [4] 예금계좌 신고서 ..... 139
- [5] 예금계좌 변경신고서 ..... 140
- [6-1]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141
- [6-2]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첨부서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142
- [6-3]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별지  
(인계·인수 내역) ..... 143
- [7]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계정별 회계장부 ..... 144
- [8]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의 정치자금 수입계정별 회계장부 .. 146
- [9]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계정별 회계장부 ..... 149
- [10] 정치자금지출 위임장 ..... 151
- [11] 회계사무보조자 정치자금 지출내역서 ..... 152
- [12]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서 ..... 153
- [13-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지출내역서 ..... 154
- [13-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지출내역서 별지[세부지출내역] ... 155
- [13-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지출내역서 별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닌 자의 식사자 명단] ..... 156



[14]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경비 지급 및 잔액 반환 .....	157
[15]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	158
[16] 동일 계정내 과목간 상호이체 .....	159
[17] 2개 계정내 동일과목 분할지출 .....	160
[18]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및 정리 .....	161
[19] 합산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	162
[20] 지정권자의 잔여재산 인계·인수서 .....	163
[21] 회계장부 마감 및 재마감 .....	164
[22] 지원금 반환시 수입·지출부 작성 .....	165
[23-1~23-4] (예비)후보자 회계보고서 제출문서 및 첨부서류 ..	166
[24-1~24-11]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 회계보고서 제출문서 및 첨부서류 .....	170
[25-1~25-11] 후원회 회계보고서 제출문서 및 첨부서류 .....	182
[26] 열람·사본교부 신청서 .....	194
[27] 회계보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	195
[28] 회계장부 등 보존위탁 신청서 .....	196
[29] 후원회 등록신청서 .....	197
[30] 후원회 정관 .....	198
[31] 취임동의서 .....	204
[32] 인영서 .....	205
[33] 후원회(지정)·(지정철회)서 .....	206
[34] 후원회 결성 회의록 .....	207
[35] 후원회 사무소 소재지 약도 .....	213





[36] 후원회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서 .....	214
[37] 후원회 (가입)·(탈퇴)원서 .....	215
[38] 후원회 회원명부 .....	216
[39]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서 .....	217
[40] 정치자금영수증 발행·반납대장 .....	218
[41] 정치자금영수증 잔여매수 반납보고서 .....	219
[42-1]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 .....	220
[42-2] 위임장 .....	221
[42-3] 후원금의 인계·인수서 .....	222
[43]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내역보고서 .....	223
[44]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	224
[45] 점자형선거공보 등 부담비용 지급청구서 .....	225
[46] 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인수서 .....	226



[작성예시 1-1]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인 계 자 ( (예비) 후보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시 ○○구 ○○로 1	전 화 번 호	02-502-8474
인 수 자 ( 회 계 책 임 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시 ○○구 ○○로 1	전 화 번 호	02-523-6484
인계·인수내역	별지 참조			
인계·인수연월일	2020년 월 일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의 정치자금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계자(직위) (예비)후 보 자 ○ ○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인수자(직위) 회 계 책 임 자 ○ ○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입회자(직위) 선 거 사 무 장 ○ ○ ○ 인</p>				
<p>주 1. 인계·인수서는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회계보고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p> <p>2. “인계·인수내역”란에는 정치자금의 사용잔액, 회계장부, 예금통장, 체크카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및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으로 하되, 그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p> <p>3. ‘입회자’란에는 선거사무장이 서명·날인함.</p>				

[작성예시 1-2 :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별지]

## 인 계·인 수 내 역

구 분	수 량	금 액(원)	비 고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출력물	1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백업파일	1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50		증빙서류 총매수기재
예금계좌			
00은행 (123-45-678901)	1	5,000,000	통장잔액 기재
체크카드(00은행, 9410-3210-1000-2700)	1		
책 상	4	50,000	
의 자	2	20,000	
컴퓨터	1	500,000	
⋮	⋮	⋮	
⋮	⋮	⋮	

※ 인계·인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함.



[작성예시 2-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문서번호					
회계책임자	성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로 1	전화번호	02-523-6485	
선임연월일		2020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정치자금 예금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수입용		○○○	○○은행	123-45-000911	
지출용		○○○	○○은행	123-45-000911	
<p style="text-align: center;">「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선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 (인)</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선거연락소장 ○○○ (인)</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당 ○○구·시·군 정당선거사무소장 ○○○ (인)</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 ○○○(인)</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li> <li>2.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예금계좌 개설 신고시).</li> <li>3.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예비)후보자 및 중앙당에 한함]</li> </ol>					
<p>주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p> <p>2.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한함.</p> <p>3.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 선거연락소장이 됨.</p>					

[작성예시 2-2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첨부서류]

취 임 동 의 서							
성 명	○○○ (한자 : ○ ○ ○)						
주 소	○○시 ○○구 ○○로 1234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주택) -	(이동전화) 010-123-4567					
<p>본인은 ○○○의 회계책임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p> <p>2020년    월    일</p> <p>성 명 :    ○ ○ ○ (서명 또는 날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당 대표자 귀하</td> </tr> <tr> <td style="padding: 2px;">(예비)후보자 ○○○ 귀하</td> </tr> <tr> <td style="padding: 2px;">○○선거연락소장 ○○○ 귀하</td> </tr> <tr> <td style="padding: 2px;">○○당 ○○구·시·군 정당선거사무소장 귀하</td> </tr> <tr> <td style="padding: 2px;">○○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대표자 귀하</td> </tr> </table>			○○당 대표자 귀하	(예비)후보자 ○○○ 귀하	○○선거연락소장 ○○○ 귀하	○○당 ○○구·시·군 정당선거사무소장 귀하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대표자 귀하
○○당 대표자 귀하							
(예비)후보자 ○○○ 귀하							
○○선거연락소장 ○○○ 귀하							
○○당 ○○구·시·군 정당선거사무소장 귀하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대표자 귀하							
<p>주 :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선임권자에게 제출함.</p>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선거비용제한액	150,000,000원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	150,000,000원				
<p>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가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auto;"> <tr> <td style="padding: 5px;">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당 중앙당 대표자 ○○○ (인)</td> <td style="padding: 5px;">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인)</td> </tr> <tr> <td style="padding: 5px;">국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 (인)</td> <td style="padding: 5px;">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인)</td> </tr> </table> <p>○○○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주 1.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겸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2. 회계책임자의 변경시 선거비용제한액에서 전임 회계책임자가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범위내에서 약정액을 기재하여야 함.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약정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정당의 대표자와 그 회계책임자가 함.</p>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당 중앙당 대표자 ○○○ (인)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인)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 (인)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당 중앙당 대표자 ○○○ (인)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인)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 (인)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인)				

[작성예시 3]

<b>회계책임자 겸임신고서</b>				
문서번호				
회 계 책 임 자	성 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시 ○○구 ○○로 1	전 화 번 호	02-523-6485
겸 임 연 월 일		2020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중앙당 회계책임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정 치 자 금 예 금 계 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수 입 용		○○○	○○은행	123-45-000911
지 출 용		○○○	○○은행	123-45-000911
<p>「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제34조제3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겸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당 중앙당 대표자 ○○○ (인)</p> <p>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 (인)</p> <p>○○선거연락소장 ○○○ (인)</p> </div> <p>○○○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겸임하는 경우에 한함).</li> <li>2.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예금계좌 개설 신고시).</li> <li>3.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li> </ol>				
<p>주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p> <p>2.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한함.</p> <p>3.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정당의 대표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선거연락소장이 됨.</p>				



[작성예시 4]

예금계좌 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 고
변경전	수입용	○○○	○○은행	123-45-000900	
	지출용	○○○	○○은행	123-45-000900	
변경후	수입용				
	지출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제1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신고합니다.

2020년    월    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당 중앙당 대표자 ○○○ (인)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 (인)

○○선거연락소장 ○○○ (인)

○○당 ○○구·시·군 정당선거사무소장 ○○○ (인)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주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  
 2.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장 포함),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후원회 대표자임.  
 3. 예금계좌 신고시에는 “변경후”란은 작성하지 아니함.

[작성예시 5]

예금계좌 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 고
변경전	수입용	○○○	○○은행	123-45-000900	
	지출용	○○○	○○은행	123-45-000900	
변경후	수입용	○○○	△△은행	999-12-875212	
	지출용	○○○	△△은행	999-12-875212	
<p>「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제1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변경신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당 중앙당 대표자 ○○○ (인)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 (인)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선거연락소장 ○○○ (인)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당 ○○구·시·군 정당선거사무소장 ○○○ (인)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 ○○○(인)             </div> <p style="margin-top: 10px;">○○○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 : 예금통장 사본 각 1부.</p> <p>주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                  2.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장 포함),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후원회 대표자임.</p>					



[작성예시 6-1]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문서번호				
회 계 책 임 자	성 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시 ○○구 ○○로 77	전 화 번 호	02-523-6485
변 경 연 월 일		2020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정 치 자 금 예 금 계 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 고
수      입      용				
지      출      용				
<p style="text-align: center;">『정치자금법』 제35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변경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당 중앙당 대표자 ○○○ (인)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 (인)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선거연락소장 ○○○ (인)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당 ○○구·시·군 정당선거사무소장 ○○○ (인)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 ○○○(인)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li> <li>2.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1부.</li> <li>3.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li> </ol> <p>주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선거연락소장이 됨.</li> <li>3.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한함.</li> </ol>				

[작성예시 6-2 :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첨부서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인 계 자 (전 회계책임자)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로 77	전 화 번 호	02-523-6484
인 수 자 (현 회계책임자)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로 77	전 화 번 호	02-523-6485
인계·인수내역	별지 참조			
인계·인수연월일	2020년    월    일			
<p>회계책임자가 변경되었기에 「정치자금법」 제35조제2항 및 「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계자 전 회계책임자 ○ ○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인수자 현 회계책임자 ○ ○ ○ (인)</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당 중앙당 대표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연락소장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당 ○○구·시·군 정당선거사무소장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 ○○○(인)</p> </div>				
<p>주 1. 인계·인수서는 회계책임자를 변경한 때마다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회계책임자가 변경신고서 첨부하여야 함.</p> <p>2. “인계·인수내역”란에는 재산, 정치자금의 사용잔액, 회계장부, 예금통장·체크카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및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으로 하되, 그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p> <p>3. “입회자”란에는 선임권자가 서명·날인함.</p>				



[작성예시 6-3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별지]

## 인 계·인 수 내 역

구 분		수 량	금 액 (원)	비 고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출력물		1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출력물		1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백업파일		1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50		증빙서류 총매수기재	
신 고 된 예금계좌	수입용	00은행, (123-45-678901)	1	5,000,000	통장잔액 기재
	지출용	00은행, (123-45-678901)			
체크카드(00은행, 9410-3210-0000-0000)		1			
책상		4	50,000		
의자		2	20,000		
컴퓨터		1	500,000		
⋮		⋮	⋮		

- ※ 1. 인계·인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함.  
 2. 재산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기부금 또는 정당지원금으로 취득한 재산만을 기재함.

[작성예시 7 :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계정별 회계장부]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계 정 명 : 후보자 자산]

[과 목 명 : 선거비용]

(금액단위 : 원)

연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20/ 3/15	후보자 자산	30,000,000	30,000,000		0	30,000,000	홍길동 (대여자)	57109123	○○도 ○○시 ○○로 1		02-502-8475	생략

[계 정 명 : 후보자 자산]  
[과 목 명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금액단위 : 원)

연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20/ 3/27	①후보자 자산 (대부은행 가타 1234567)	20,000,000	20,000,000		0	20,000,000	○○○	57109123	○○도 ○○시 ○○로 11		02-502-8475	생략
2020/ 3/28	②후보자 소유 채상 3개	1,500,000	21,500,000	1,500,000	1,500,000	20,000,000	○○○	57109123	○○도 ○○시 ○○로 11		02-502-8475	생략

[계정명 : 후원회 기부금]

[과목명 : 선거비용]

(금액단위 : 원)

연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20/ 3/21	후원회 후원금	5,000,000	5,000,000		0	5,000,000	○○○후보자 후원회	○○도 ○○시 ○○로 11			02-502-9584	생략
2020/ 3/22	③애플 기부	150,000	5,150,000	150,000	150,000	5,000,000	○○○후보자 후원회	○○도 ○○시 ○○로 11			02-502-9584	생략

[계정명 : 보조금외 지원금]

[과목명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금액단위 : 원)

연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20/ 3/28	중앙당 지원금	1,000,000	1,000,000		0	1,000,000	○○당	123-85-12345	서울시 ○○구 ○○로 1		02-502-2573	생략

[계정명 : 보조금인 지원금]

[과목명 : 선거비용]

(금액단위 : 원)

연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20/ 3/28	④중앙당 공개강소 연설회장지원	2,000,000	2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0	○○당	123-85-12345	서울시 ○○구 ○○로 1		02-502-2573	생략
2020/ 3/28	⑤사도당 소유 애플 지원	200,000	22,200,000	200,000	2,200,000	20,000,000	○○당 서울시당	123-85-12345	서울시 ○○구 ○○로 2		02-502-2573	생략

[작성예시 8 :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의 정치자금 수입계 정별 회계장부]

[계 정 명 : 보조금외]

[과 목 명 : 당비]

(금액단위 : 원)

연월일	수입을 제공한 자						금 액	누 계	영수증 일련 번호	비고
	내역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 3. 5	2건						1,000,000			
'20. 3. 6	10건						2,000,000			
'20. 3. 7	100건						5,000,000			
	합 계						8,000,000			
영수증	첨부분						8,000,000	8,000,000		
	생략분									

작성연월일 : 2020년 월 일

[계정명 : 보조금외]  
[과목명 : 차입금]

(금액단위 : 원)

연월일	수입을 제공한 자							금 액	누 계	영수증 일련 번호	비고
	내역	성명 영(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 3. 5	① 〇〇〇로부터 차입 (대한은행 가가 1234567)	김부자	55.12.13	〇〇시 〇〇로 22		123-4567	10,000,000	10,000,000			
	합 계							10,000,000			
영수증	첨부분						10,000,000	10,000,000			
	생략분										

작성연월일 : 2020년 월 일

[계정명 : 선거보조금]

[과목명 : 지원금]

(금액단위 : 원)

연월일	수입을 제공한 자					금액	누계	연수증 일련번호	비고
	내역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등록번호)	주소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20. 3. 20	②중앙당 제작 티셔츠(100개)	중앙당	184-67-123456	○○시 ○○로 2		500,000	500,000		
'20. 3. 21	③중앙당 차량 지원(1대)	중앙당	184-67-123456	○○시 ○○로 2		7,500,000	8,000,000		

[계정명 : 선거보조금]

[과목명 : 선거비용]

(금액단위 : 원)

연월일	지출을 받은 자					금액	누계	연수증 일련번호	비고
	내역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등록번호)	주소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20. 3. 20	②중앙당 제작 티셔츠(100개)	중앙당	184-67-123456	○○시 ○○로 2		500,000	500,000		
'20. 3. 21	③중앙당 차량 지원(1대)	중앙당	184-67-123456	○○시 ○○로 2		7,500,000	8,000,000		

[작성예시 9 :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계정별 회계장부]

과목별 수입부

과목명 : 기명후원금

(금액단위 : 원)

연월일	수입을 제공한 자							금 액	누 계	비고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전화번호			
2020.03.20.	후원금	○○○	70/01/01	○○시 ○○구 ○○○로 10	회사원		02-523-6484	100,000	100,000	
2020.03.20.	후원금	○○○	66/06/01	○○도 ○○시 ○○○로 2	OO상사 판매과장		02-523-6485	400,000	500,000	
	∴	∴	∴	∴	∴		∴	∴	∴	
합 계									1,000,000	

작성연월일 : 2020년 월 일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회계책임자 ○○○ ①

과목명 : 익명후원금

(금액단위 : 원)

연월일	수입을 제공한 자							금 액	누 계	비고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전화번호			
2020.03.20.	익명							100,000	100,000	
2020.03.20.	익명							50,000	150,000	
	∴	∴	∴	∴	∴		∴	∴	∴	
합 계									1,000,000	

작성연월일 : 2020년 월 일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회계책임자 ○○○ ①

과목명 : 그 밖의 수입 (금액단위 : 원)

연월일	수입을 제공한 자						금 액	누 계	비 고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2020.03.20	예금이자	농협	123-45-56789	00시 00구 00호 112	금융	123-4567	1,500	1,500	
	::	::	::	::	::	::	::	::	
합계							1,500	1,500	

작성연월일 : 2020년 월 일

000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000후원회 회계책임자 000 인

## 정치자금지출 위임장

1. 수입자(회계사무보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	-	○○시 ○○구 ○○로 1	123-4567	

2. 위임내용

위임기간	지출목적	지출의 대강의 내역	지출한도 금액	지출기간	비고
2020. 4. 2. ~4. 5.	방송연설 분장비 지출	방송연설 분장비	600,000	4. 2.~4. 5.	
		교통비		4. 2.~4. 5.	

「정치자금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지출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2020년      월      일

위임자 회 계 책 임 자    ○ ○ ○    (인)

수입자 회계사무보조자    ○ ○ ○    (인)

주 : 본 위임장은 증빙서류철에 보관·관리해야 함.

[작성예시 11]

## 회계사무보조자 정치자금 지출내역서

### 1. 총 괄

위 입 기 간	위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4. 2. ~ 4. 5.	600,000	600,000	0	

### 2. 세부지출내역

회 계 연 도	내 역	지출액		잔액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비고
		금회	누계		성명 (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사무소소재지)	직 업 종 (업 종)	전화번호		
4.2.	분쟁비용 지급	580,000	580,000	20,000	○○아트	123-45-6789	○○구 ○○로 23	서비스	124-5978	1	
4.5.	교통비	20,000	600,000	0	○○택시	532-12-5789	○○구 ○○로 12	운수	324-1257	2	
계			600,000	0							

※ 많은 경우 별지 첨부

위와 같이 본인이 지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붙 임 1. 사용내역 1부(별지 첨부시)  
 2. 영수증 등 증빙서류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예금통장으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경우에만 제출)

2020년      월      일

제출자 회계사무보조자 ○○○ (인)

회계책임자 ○○○ 귀하

주 : 본 지출내역서를 증빙서류철에 보관·관리하고 그 사본을 회계보고서 제출시 첨부해야함.



[작성예시 12]

##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서

### 1. 총괄

지출기간	지출건수	지출액	비고
2020. 3. 20. ~ 3. 25.	2건	520,000	

### 2. 세부지출내역

연월일	내역	지출액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비고
		금회	누계	성명 (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3.22.	앱프 구입	500,000	500,000	○○전자	123-45-7890	○○구 ○○로 23	전자	345-6789	1	
3.22.	교통비	20,000	520,000	○○택시	532-12-6789	○○구 ○○로 12	운수	456-7890	2	
계			520,000							

※ 많은 경우 별지 첨부

위와 같이 본인이 지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용내역 1부(별지 첨부시)

2. 영수증 등 증빙서류 1부

2020년      월      일

제출자 선거사무원 ○○○ (인)

회계책임자    귀하

주 : 본 지출내역서를 증빙서류철에 보관·관리하고 그 사본을 회계보고서 제출시  
첨부해야함.

[작성예시 13-1]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지출내역서

### 1. 총괄

수입·지출기간	수령액	지출액	잔액	비고
2020. . ~ .	3,000,000	2,800,000	200,000	

### 2. 세부지출내역

연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비고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성명 (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사무소소재지)	직업종 (업종)	전화 번호		
					별	첨	찰	조					

※ 지출내역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위와 같이 본인이 지출한 선거운동비용 지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1. 세부지출내역 1부(별지 첨부시)  
 2. 영수증 등 증빙서류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예금통장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한  
 경우에만 제출)

2020년 월 일

제출자 (예비)후보자 ○○○ (인)

(예비)후보자 ○○○ 회계책임자 귀하

주 : 본 지출내역서를 증빙서류철에 보관·관리하고 그 사본을 회계보고서 제출시 첨부  
 해야 함.



[작성예시 13-2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지출내역서 별지]

## 세부지출내역

(단위 : 원)

표의 번호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비고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성명 (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사무소 소재지)	직 업 (업종)	전화 번호		
3.20	회계책임자로부터 후보자선거비용수입	200,000	200,000			200,000							
3.21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 제공			50,000	50,000	150,000	○○ 식당	221-92-17611	○○도 ○○시 ○○로 28		507- 8767	1	식사자명단 별첨
3.22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 제공			50,000	100,000	100,000	△△ 식당	221-92-17584	○○도 ○○시 ○○로 58		507- 8582	2	식사자명단 별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200,000		100,000	100,000							

붙임 : 식사자 명단 2부

주 :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50조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 제공시는 “비고”란에 “식사자명단 별첨”이라고 기재하고, 함께 다니는 자가 선거 사무관계자인 경우 해당일에 지급될 실비에서 그 식사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원이 아닌 경우 “성명, 신분(정당의 간부, 보좌관 등), 연락처” 등을 기재한 명단을 첨부함.

[작성예시 13-3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지출내역서 별지]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닌 자의 식사자 명단

영수증 일련번호	지출 연월일	신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연락처
1	3.21.	정책위의장	○○○	60. 1.23	○○구 ○○로 1234	정당인	010-1234- 5678
	..	국회의원○○○ 보좌관	○○○	71. 1. 5	○○구 ○○로 1	국회의원보좌 관	010-0000- 0000
2	3.22.	당대표	○○○	45.11.12	○○구 ○로 198	정당인	789-1234
		:	:	:	:	:	:



[작성예시 14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경비 지급 및 잔액 반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계 정 명 : 후보자 자산]

[과 목 명 : 선거비용]

(금액단위 : 원)

연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성명 (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20/ 3/30	후보자 선거운동 경비 교부		30,000,000	500,000	10,000,000	20,000,000	○○○	57/09/23	○○도 ○○시 ○○호 2		02-502-8475	4
2020/ 4/1	후보자 선거운동 경비 반환금		30,000,000	-200,000	9,800,000	20,200,000	○○○	57/09/23	○○도 ○○시 ○○호 2		02-502-8475	23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지급일 : 2020 . . . (단위 : 원)

직 위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전 화 번호	수 당	실 비			지 급 기 간 (일수)	지급금액	입금증 일련 번호	수령인 서명날인
						일 비	식 비	교통비				
선거 사무장	○○○	○○도 ○○시 ○○로 76	48.11.11	123- 4567	650,000	260,000	260,000		4.2.~ 4.14. (13일)	1,170,000	1	
회계 책임자	○○○	○○도 ○○시 ○○로 11	60.01.04	123- 5678	650,000	260,000	260,000		4.2.~ 4.14. (13일)	1,170,000	2	
선거 사무원	○○○	○○도 ○○시 ○○로 15	61.02.18	123- 1234	390,000	260,000	260,000		4.2.~ 4.14. (13일)	910,000	3	
∴	∴	∴	∴	∴	∴	∴	∴	∴	∴	∴		
계	10명				3,000,000	1,000,000	1,000,000 (공제60,000)			5,000,000		

- 주 1. 선거사무관계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지급하고 그 입금증 사본을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철에 첨부함.(보전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
2.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실비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해 “수령인 서명날인”란에 서명·날인을 반드시 받음.
3.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선거비용과목의 “내역”란에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또는 실비, “지출액”란에는 수당·실비 합계금액, “지출을 받은 자”란에는 “지급명세서 참조”로 기재함.
4. 일비는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역 내에서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이며, 교통비는 원거리지역을 출장한 경우에 한하여 실비지급기준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5.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공제액은 “일비”란의 ( )안에 기재함.
6. 식비는 당일 별도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고, 공제액을 “식비”란의 ( )안에 기재함.



[작성예시 16 : 동일 계정내 과목간 상호이체]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계 정 명 : 후보자 자산]

[과 목 명 : 선거비용]

(금액단위 : 원)

연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성명 (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20/ 4/3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서 이체	5,000,000	35,870,000		28,725,000	7,145,000							생략

[계 정 명 : 후보자 자산]

[과 목 명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금액단위 : 원)

연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성명 (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20/ 4/3	선거비용 과목으로 이체	-5,000,000	15,000,000		2,000,000	13,000,000							생략

[작성예시 17 : 2개 계정내 동일과목 분할지출]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계 정 명 : 후원회 기부금]

[과 목 명 : 선거비용]

(금액단위 : 원)

연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성명 (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20/ 4/2	선거운동 티셔츠 구입비 지출		500,000	500,000	500,000	0	000라트	111-11-11111	00도 00시 00호 6		02-502-9584	기-선 -1

[계 정 명 : 후보자 자산]

[과 목 명 : 선거비용]

(금액단위 : 원)

연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성명 (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20/ 4/2	선거운동 티셔츠 구입비 지출		500,000	500,000	500,000	0	000라트	111-11-11111	00도 00시 00호 6		02-502-9584	기-선 -1 -38호

##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및 정리

<p style="text-align: center;">세금계산서</p> <p>[거래업체등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하단에 일련번호를 기재] ※ 일련번호는 지출명세서상의 영수증 일련번호임.</p> <p style="text-align: center;">(1)</p>	<p style="text-align: center;">세금계산서</p> <p>[거래업체등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하단에 일련번호를 기재] ※ 일련번호는 지출명세서상의 영수증 일련번호임.</p> <p style="text-align: center;">(2)</p>	<p style="text-align: center;">세금계산서</p> <p>[거래업체등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하단에 일련번호를 기재] ※ 일련번호는 지출명세서상의 영수증 일련번호임.</p> <p style="text-align: center;">(3)</p>
--	--	--

- 주 1. 지출일자순으로 A4 횡 규격용지에 좌측부터 순서대로 첨부한 후 영수증 하단  
여백에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일련번호순에 의거 지출명세서를 기재함.
2. 증빙서류는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함.

[작성예시 19]

## 합산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 1. 이의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신분	주소
○○○		회계책임자	○○시 ○○구 ○○길 19

### 2. 이의내용 및 사유

위법선거비용으로 합산 통지된 비용은 위법선거운동 비용이 아닌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회계장부에 이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      매. 끝.

2020 년      월      일

신청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지정권자의 잔여재산 인계·인수서

### 1. 인계자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예비)후보자	○○○	-	○○시 ○○구 ○○로 11	123-4567

### 2. 인수자

정 당 ·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당	회계 책임자	○○○	-	○○시 ○○구 ○○길 1	456- 7890

### 3. 인계·인수사항

재 산 목 록	인 계 · 인 수 방 법
금 50,000,000원	계좌이체

「정치자금법」 제21조제2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2020년      월      일

인계자            후            보            자    ○○○    인

인수자            ○ ○ 당    회 계 책 임 자    ○○○    인

- 주 1.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1부는 회계 보고시 제출하여야 함.
2. 잔여재산 중 금전은 수표나 예금계좌 입금 그 밖의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함.
3. “인계·인수사항”란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작성예시 21 : 회계장부 마감 및 재마감]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계 정 명 : 후보자자산]  
[과 목 명 : 선거비용]

(금액단위 : 원)

연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20/4/2	선거사무소 지원금	3,000,000	3,000,000		0	3,000,000	선거사무소			00도 00시 00호 2		02-502-8466	생략
2020/4/2	입시권화 입학비		3,000,000	300,000	300,000	2,700,000	00전자	109-11-34123	제조업	00시 00구 00호 123		02-728-3456	1
2020/4/8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수당실비지급		3,000,000	600,000	900,000	2,100,000	000	55104103		00도 00시 00호 21		02-502-9911	지급명세서 작성
2020/4/8	선거연락소 강수당실비 지급		3,000,000	600,000	1,500,000	1,500,000	000	59108102		00도 00시 00호 22		02-502-9637	지급명세서 작성
2020/4/8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지급		3,000,000	1,040,000	2,540,000	460,000	선거사무원						지급명세서 작성
2020/4/9	①선거연락소 전화사용료(예상)		3,000,000	300,000	2,840,000	160,000	00전자	103-65-32581		00도 00시 00호 12		02-502-9851	미지급
2020/4/12	②선거사무소 지원금잔액 반환	-160,000	2,840,000		2,840,000	0	선거사무소			00도 00시 00호 2		02-502-8466	2
	<b>합계</b>	2,840,000	2,840,000	2,840,000	2,840,000	0	--	--	--	--	--	--	7건
영수증	첨부분	-160,000	--	2,540,000	--	--	--	--	--	--	--	--	6건
	생략분	3,000,000	--	300,000	--	--	--	--	--	--	--	--	1건
2020/4/14	후보자 자산	300,000	300,000		0	300,000	000	53101101		00도 00시 00호 2		02-111-1234	생략
2020/4/14	선거홍보물 인쇄에 대한 잔금 지급			300,000	300,000	0	00인쇄	111-22-33333		00도 00시 00호 2		02-511-1234	3
	<b>⑤합계</b>	300,000	300,000	300,000	300,000	0	--	--	--	--	--	--	2건
영수증	첨부분		--	300,000	--	--	--	--	--	--	--	--	1건
	생략분	300,000	--		--	--	--	--	--	--	--	--	1건

작성연월일 : 2020년 5월 15일  
000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000 (인)

[작성예시 22 : 지원금 반환시 수입·지출부 작성]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계 정 명 : 보조금인 지원금]

[과 목 명 : 선거비용]

(금액단위 : 원)

연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20/4/2	중앙당 지원 티셔츠	2,000,000	2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0	00년 00월 00일	123-85-12345	00시 00구 00로 5		02-502-2573	생략
2020/4/2	시도당 소유 애플 지원	200,000	22,200,000	200,000	2,200,000	20,000,000	00년 00월 00일	123-85-12345	00시 00구 00로 5		02-502-2573	생략
2020/4/2	선거연락소 지원금		22,200,000	3,000,000	5,200,000	17,000,000	선거연락소		00도 00시 00로 3		02-521-5268	2
2020/4/6	신문광고료		22,200,000	4,000,000	9,200,000	13,000,000	00신문사	109-34-56789	00도 00시 00로 33		02-502-8593	3
2020/4/8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수당실비지급		22,200,000	500,000	9,700,000	12,500,000	000	55/05/04	00도 00시 00로 21		02-502-9985	지급명세서 첨부
2020/4/12	③선거연락소 지원금잔액 반환		22,200,000	-160,000	9,540,000	12,660,000	선거연락소		00도 00시 00로 3		02-521-5268	생략
2020/4/12	④보조금사용잔액 반환	-12,660,000	9,540,000		9,540,000	0		123-85-1234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8		02-502-2573	4

작성연월일 : 2020년 5월 15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인)

[작성예시 23-1 : (예비)후보자 회계보고서 제출문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문서번호 :							
선 거 명	국회의원선거	선 거 구 명	○○선거구				
후보자·예비후보자 등의 성명 및 연락소의 명칭		○○○					
정치자금 수입·지출액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비고
			선 거 비 용	선 거 비 용 외	소 계		
자	산	100,000,000	60,000,000	30,000,000	90,000,000	10,000,000	
후	원 회 기 부 금	5,000,000	2,500,000	1,000,000	3,500,000	1,500,000	
정 당 의 지 원 금	보 조 금	5,000,000	2,500,000	1,000,000	3,500,000	1,500,000	
	보 조 금 외	5,000,000	2,500,000	1,000,000	3,500,000	1,500,000	
합 계		115,000,000	67,500,000	33,000,000	100,500,000	14,500,000	
<p>「정치자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예비)후보자      ○○○      (인)</p> <p style="text-align: right;">선거사무장      ○○○      (인)</p> <p style="text-align: right;">회계책임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산명세서 1부.</li> <li>2. 과목별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1부.</li> <li>3. 과목별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1부.</li> <li>4.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부.</li> <li>5. 선거비용지출내역 집계표 1부.</li> </ol>							
<p>주 1. (예비)후보자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사용함.</p> <p>2. 선거연락소를 두는 경우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연락소별 선거비용 지출내역 집계표를 첨부하여야 함.</p> <p>3.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연대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p>							



## 선거비용 지출내역 집계표

구 분	계	후보자 자 산	후원회 기부금	정당지원금		비고	
				보조금	보조금외		
합 계	47,855,000	35,615,000	4,800,000	7,390,000	50,000		
선거사무소	42,375,000	32,975,000	4,800,000	4,550,000	50,000		
선거연락소	연락소 계	5,480,000	2,640,000	0	2,840,000	0	
	○○연락소	5,480,000	2,640,000	0	2,840,000	0	
	△△연락소						
	□□연락소						
	⋮						

작성 연월일 : 2020 년    월    일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인)

주 :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작성예시 23-3 : (예비)후보자 회계보고서 첨부서류]

## 재 산 명 세 서

2020년 월 일 현재

구 분	종 류	수 량	내 용	가 액	비 고
토 지	사무소 부지	800m <sup>2</sup>	○○길 16, 대지	20,000,000	
	소 계	800m <sup>2</sup>		20,000,000	
건 물	사무소	600m <sup>2</sup>	○○길 16, 철근콘크리트조, 2층	10,000,000	
	소 계			10,000,000	
주식 또는 유가증권			해당없음.		
	소 계				
비 품	복사기	1점		4,000,000	
	소 계			4,000,000	
현 금 및 예 금	예금		농협123-45-567	7,690,000	
	소 계			7,690,000	
그 밖 의 재 산	동양화	6점		10,000,000	
	소 계	6점		10,000,000	
합	계			51,690,000	

작성연월일 : 2020년 월 일

첨부 : 비품내역 부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인)

- 주 1. “종류”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소유재산의 용도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소 건물(부지)’ 등으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경우 주식, 국·공채 등 당해 증권의 명칭, 그 밖의 재산의 경우에는 예술공예품, 임차보증금 등을 기재함.
2. “내용”란에는 토지의 경우 지번·지목·지적용, 건물의 경우 형(목조, 철근 콘크리트조등)·동수·건평등을,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경우 당해 증권의 권면액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3. “가액”란에는 재산의 현시가 (작성기준일 현재)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함.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계 정 명 : 후보자 자산  
과 목 명 : 선거비용

년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비고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성명 또는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21. 4. 3	후보자 자산	10,000,000	10,000,000			10,000,000		○○○	123456	○○시 ○○구 ○○로 19			
2021. 4. 9	선거사무원 수당지급			5,000,000	5,000,000	5,000,000		○○○ 외 10인	654321	○○시 ○○구 ○○로 1064	회계 책임자	지급명세 서 참조	

- 주 1. 이 서식은 공직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사용함.  
 2. 이 장부(규격 : A4형)의 계정은 보조금계정, 보조금의 지원금계정, 예비후보자·후보자(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 자산계정, 후원회기부금계정을 따로 설정하고,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을 구분하여 작성함.  
 3. 보조금인 지원금과 보조금외 지원금은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후보자등의 자산은 후보자의 자산과 후보자의 차입금등을, 후원회 기부금은 당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을 말함.  
 4. “년월일”란에는 실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는 날을 기재하되, 선거비용과목에 있어서는 미지급채무가 발생한 날을 기재함.  
 5. “내역”란에는 수입의 경우 금전 외에 장비·물품의 수입에 있어서는 그 품명을, 수표인 경우에는 발행금융기관명과 수표번호를 함께 기재하며, 지출의 경우는 지출의 내용을 기재하고, 금전 외에 장비를 사용하거나 물품을 지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표로 지출한 때에는 발행금융기관명과 수표번호를 함께 기재함.  
 6. 예비후보자·후보자 소유의 물품 또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수입액”과 “지출액”란에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입찰가격을 기재하고, 수입과 동시에 지출로 처리함.

[작성예시 24-1 :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 회계보고서 제출문서]

## ○○당 ○○구·시·군 정당선거사무소

문서번호

시행일자 2020. .

수 신 ○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회계보고서 제출

---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라 ○○당 ○○구·시·군 정당선거사무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회계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정당의 재산명세서 1부.
  2.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1부.
  3.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 총괄표 1부.
  4. 과목별 수입·지출부 각 1부.
  5. 과목별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6.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끝.

○○당 ○○구·시·군 정당선거사무소장

○ ○ ○ 직인



## 정당의 재산명세서

2020년    월    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종 류	수 량	내 용	가 액	비 고
토 지				0	
				0	
건 물				0	
				0	
주식 또는 유가증권				0	
				0	
비 품	책 상 등	19점	내역 별첨	4,600,000	
	소 계	19점		4,600,000	
현금 및 예금	현 금			0	
	소 계			0	
기 타				0	
	소 계			0	
합 계				4,600,000	

첨부 : 비품내역 1부

작성연월일 : 2020년    월    일

○○당 ○○구·시·군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 ○ ㉠

- 주 1. “현금 및 예금”은 수입·지출명세서상의 잔액과 일치하여야 함.  
 2. 차입금은 ( )내서하고, 소계와 합계란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3. 재산내역을 재산명세서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별지로 작성함.

[작성예시 24-3 :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 회계보고서 첨부서류]

## 비 품 내 역

종 류	수 량	내 용	가 액	비 고
복사기	1	○○전자 LX-300	800,000	
책 상	7		1,400,000	
의 자	8		400,000	
개인용컴퓨터	1	○○전자 4330s	1,000,000	
금 고	1	○○산업 NPS-1001	500,000	
냉장고	1	○○전자 R-L123	500,000	
합 계	19		4,600,000	

주 : 이 내역은 재산명세서에 비품내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함.



[작성예시 24-4 :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 회계보고서 첨부서류]

##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2020년 월 일 현재

(수입·지출기간 : 20 . . . ~ 20 . . . )

(단위 : 원)

구분	과목	계 ①	보조금외 ②	경상보조금 ③	선거보조금 ④	여성추천 보조금 ⑤	장애인추천 보조금 ⑥	비고	
수입	전년도이월								
	당비	10,000,000	10,000,000						
	기탁금								
	후원회기부금								
	보조금(중앙당에 한함)								
	차입금 ⑦	10,000,000	10,000,000						
	기관지 발행사업 수입								
	지원금	보조금	상급당부	5,000,000		5,000,000			
			하급당부						
			계	5,000,000		5,000,000			
보조금외		상급당부							
		하급당부							
소계	5,000,000			5,000,000					
그밖의수입 ⑧	150	150							
합계		25,000,150	20,000,150		5,000,000				
지출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기본경비	인건비	3,000,000	3,000,000				
			사무소설치·운영비	5,500,000	500,000		5,000,000		
		정치활동비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5,550,000	5,550,000				
			여성정치발전비	2,000,000	2,000,000				
			그밖의경비 ⑧	1,000,000	1,000,000				
	소계	8,550,000	8,550,000						
	지원금	보조금	상급당부						
			하급당부						
			계						
		보조금외	상급당부						
			하급당부						
	소계								
	합계		22,050,000	12,050,000		10,000,000			
잔액 ⑩		2,950,150	7,950,150		-5,000,000				

작성연월일 : 2020년 월 일

○○당 ○○구·시·군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 ○ ㉠

##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작성요령

- ① 정당의 수입·지출부에 기록된 모든 수입·지출내역을 기재하며, 그 금액은 ②+③+④+⑤+⑥과 같음.
- ② 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여성추천보조금·장애인추천보조금 이외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과목별로 기재함.
- ③ 정당보조금중 선거의 유무에 관계없이 매년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당보조금의 수입·지출내역을 기재함.
- ④ 선거와 관련하여 지급된 정당보조금의 수입·지출내역을 기재함.
- ⑤ 여성추천보조금의 수입·지출내역을 기재함.
- ⑥ 장애인추천보조금의 수입·지출내역을 기재함.
- ⑦ 회계보고 대상기간 중 차입금 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상환액과 상계하여 순차입액 만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됨.
- ⑧ 은행이자나 차입금상환액(당해 연도에 차입한 금액의 상환액 뿐만 아니라 과거 연도부터 존재하던 차입금(부채)의 상환액) 및 다른 과목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비용을 기재함.
- 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중앙당 회계책임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9조의 선거비용에 해당되는 비용만을 기재함.
- ⑩ 잔액란에는 음수(-)가 나타나서는 아니됨.



[작성예시 24-5 :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 회계보고서 첨부서류]

##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 총괄표

2020년 월 일 현재

(수입·지출기간 : ) (단위 : 원)

구 분		당 부 별	중앙당	정책연구소	시·도당	정당선거사무소	합계						
재 산	토	지											
	건	물											
	주식 또는 유가증권												
	비	품				8,000,150	8,000,150						
	현금 및 예금												
그 밖의 재산													
합		계				8,000,150	8,000,150						
수입 및 지출	전년도 이월												
	당	비				10,000,000	10,000,000						
	기	탁											
	후원회기부금												
	보조금 (중앙당에 한함)												
	차	입				10,000,000	10,000,000						
	기관지발행사업수입												
	지	원	금	상	급	당	부	5,000,000	5,000,000				
				하	급	당	부						
				계			5,000,000	5,000,000					
	보	조	금	상	급	당	부						
				하	급	당	부						
				계									
	소		계				5,000,000	5,000,000					
	그 밖의 수입						150	150					
합		계				25,000,150	25,000,150						
지	출	선거비용	선	거	비	용	5,000,000	5,000,000					
		기	본	경	비	인	건	비	3,000,000	3,000,000			
						사무소	설	치·	운	영	비	5,500,000	5,500,000
		정	치	활	동	비	정	책	개	발	비	5,500,000	5,500,000
							조	직	활	동	비	2,000,000	2,000,000
							여	성	정	치	발	전	비
		그 밖의 경비											
		지	원	금	상	급	당	부					
					하	급	당	부					
					계								
보	조				금	외	상	급	당	부			
보	조	금	외	하	급	당	부						
				계									
소		계											
합		계				22,000,000	22,000,000						
잔		액				3,000,150	3,000,150						

작성연월일 : 2020년 월 일

○○당 ○○구·시·군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 ○ ㉠

- 주 1. 중앙당은 중앙당분, 정책연구소분, 시·도당분, 정당선거사무소분 내역을 집계하여 기재함.  
 2. 정당선거사무소는 '정당선거사무소'란에 기재함.

작성예시

[작성예시 24-6 :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 회계보고서 첨부서류(수입부 표지)]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 ○○구·시·군 정당선거사무소  
회계 보고

## 정당의 수입부

【 보조금외 - 지원금 】

회계책임자 ○ ○ ○ 인



[작성예시 24-7 :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 회계보고서 첨부서류(수입부 내지)]

계정명 : 보조금외

과목명 : 지원금

년월일	수입을 제공한 자						금 액	누 계	영수증 일련 번호	비고
	내역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 3. 5	지원금	중앙당	184-67 -123456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2		123-4567	100,000	100,000		
20. 3. 6	지원금	중앙당	184-67 -123456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2		123-4567	2,000,000	3,000,000		
20. 3. 7	지원금	중앙당	184-67 -123456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2		123-4567	5,000,000	8,000,000		
∴		∴					∴	∴		
합 계								50,000,000		
영수증	첨부분						50,000,000	50,000,000		
	생략분									

작성연월일 : 2020년 월 일

〇〇당 〇〇구·시·군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 ○ 인

[작성예시 24-8 :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 회계보고서 첨부서류(지출부 표지)]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 ○○구·시·군 정당선거사무소  
회계 보고

## 정당의 지출부

【 보조금외 - 기본경비 - 인건비 】

회계책임자 ○ ○ ○ 인



[작성예시 24-9 :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 회계보고서 첨부서류(지출부 내지)]

계정명 : 보조금외

과목명 : 기본경비 - 인건비

년월일	지출을 받은 자					금 액	누 계	영수증 일련 번호	비고
	내역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20. 4. 13	소장급여	○○○	1960.01.01	○○시 ○○길 12	임대업	620,000	620,000	1	
20. 4. 13	사무원급여	○○○	1960.01.01	○○시 ○○길 12	임대업	620,000	1,240,000	2	
20. 4. 13	소장및사무원 급여	○○○	1960.01.01	○○시 ○○길 12	임대업	620,000	1,860,000	3	
∴	∴	∴	∴	∴	∴	∴	∴	∴	
.	.	.	.	.	.	.	.	.	
		이	하	빈		칸			
합 계						2,424,000	2,424,000	10건	
영수증	첨부분	-	-	-	-	2,424,000	-	10건	
	생략분	-	-	-	-	0	-	0건	

작성연월일 : 2020년 월 일

○○당 ○○구·시·군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 ○ ㉠

[작성예시 24-10 :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 회계보고서 첨부서류(증빙서류 표지)]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 ○○구·시·군 정당선거사무소  
회계 보고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사본

【 보조금외 - 기본경비 - 인건비 】

회계책임자 ○ ○ ○ 인



[작성예시 24-11 :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 회계보고서 첨부서류(증빙서류 정리방법)]

<p>세금계산서</p> <p>[거래업체등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하단에 일련번호를 기재]</p> <p>※ 일련번호는 지출명세서상의 영수증 일련번호임.</p> <p style="text-align: center;">인-1</p>	<p>세금계산서</p> <p>[거래업체등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하단에 일련번호를 기재]</p> <p>※ 일련번호는 지출명세서상의 영수증 일련번호임.</p> <p style="text-align: center;">인-2</p>	<p>세금계산서</p> <p>[거래업체등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하단에 일련번호를 기재]</p> <p>※ 일련번호는 지출명세서상의 영수증 일련번호임.</p> <p style="text-align: center;">인-3</p>
---	---	---

- 주 : 1. 영수증의 크기에 따라 A4용지를 횡으로 하여 좌측부터 순서대로 적정매수를 첨부하여야 함.
2. 증빙서 번호는 지출부의 영수증일련번호란의 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지출과목별 · 지출일자별로 별도로 부여하여야 함.
3. 증빙서류는 축소하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함(축소한 경우 영수증 내용을 알아보기가 어려움).

[작성예시 25-1 : 후원회 회계보고서 제출문서]

##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문서번호 회계 2020-

시행일자 2020. .

수 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회계보고서 제출

「정치자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 4. 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후원회의 재산명세서 1부.
  2. 후원회의 수입·지출 총괄표 1부.
  3. 과목별 수입부 각 1부.
  4. 과목별 지출부 각 1부.
  5. 과목별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6. 후원금 기부자 명단(30만원, 300만원) 각 1부.
  7.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8. 자체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 1부.
  9. 대의기관(또는 수입기관)의 심사·의결서 사본 1부. 끝.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 ○○○ 인



## 재 산 명 세 서

2020년 5월 5일 현재

구 분	종 류	수 량	내 용	가 액	비 고
토 지	후원회사사무소부지	800㎡	삼성동16. 대지	20,000,000	
	소 계	800㎡		20,000,000	
건 물	후원회사사무소	600㎡	삼성동16.철근 콘크리트조, 단층	10,000,000	
	소 계	600㎡		10,000,000	
주식 또는 유가증권		해	당	없	음
	소 계				
비 품	복사기등	14점		8,000,000	
	소 계	14점		8,000,000	
현금및예금	현 금		농협 000-00-000	7,690,000	
	소 계			10,900,000	
그 밖의 재산	동 양 화	6점		10,000,000	
	소 계			10,000,000	
합	계			55,690,000	

작성연월일 : 2020년 월 일

첨부 : 비품내역 부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회계책임자 ○○○ 인

- ㉠ 1. “종류”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소유재산의 용도를 기준으로 ‘후원회사사무소건물(부지)’ 등으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경우 주식, 국·공채 등 당해 증권의 명칭, 그 밖의 재산의 경우에는 예술 공예품, 임차보증금 등을 기재함.
2. “내용”란에는 토지의 경우 지번·지목·지적을, 건물의 경우 형(목조, 철근 콘크리트조등)·동수·건평등을,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경우 당해 증권의 권면액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3. “가액”란에는 재산의 현시가 (작성기준일 현재)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함.
4. 재산내역을 본 명세서상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항목별 세부내역을 별지로 작성·첨부하여야 함.
5. “현금 및 예금”은 후원회의 수입·지출명세서상의 잔액을 기재함.

## 비 품 내 역

종 류	수 량	내 용	가 액	비 고
복사기	1	선명한 500	1,000,000	
책 상	3	철제양수	600,000	200,000×3
의 자	3		300,000	100,000×3
개인용컴퓨터	2	오보OA 3000	3,000,000	1,500,000×2
프 린 터	2	오보SP 2800	1,000,000	500,000×2
응접세트	1	편안한 SET	600,000	
금 고	1	절대안전 600	500,000	
텔레비전	1	금성 WONDER	1,000,000	
∴	∴	∴	∴	
합 계	14		8,000,000	

☞ 본 비품내역은 재산명세서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함.



[작성예시 25-3 : 후원회 회계보고서 첨부서류]

## 후원회의 수입·지출총괄표

(수입·지출기간 : ~ )

구분	과 목		금 액	비 고
수 입	전 년 도 이 월		0	
	후 원 금	기 명	86,000,000	
		익 명	3,000,000	
		소 계	89,000,000	
	그 밖 의 수 입		1,000,000	
	합 계		90,000,000	
지 출	기 부 금		60,000,000	
	후 원 금 모 금 경 비		5,000,000	
	기 본 경 비	인 건 비	7,000,000	
		사무소설치·운영비	302,000	
		소 계	7,302,000	
	그 밖 의 경 비		17,698,000	
합 계		90,000,000		
잔 액			0	

작성연월일 : 2020년 월 일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회계책임자 ○○○ 인

[작성예시 25-4 : 후원회 회계보고서 첨부서류]

■ 표 지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회계보고

## 후원회의 수입부

회계책임자 ○○○ ㉠

■ 내 지

과목명 : 후원금

(금액단위 : 원)

연월일	수입을 제공한 자						금 액	누 계	비 고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2020.03.20	후원금	11건					500,000	500,000	
2020.03.20	후원금	○○○	66/06/01	○○도 ○○시 ○○로 2	OO상사 판매과장	02-523- 6485	400,000	900,000	
2020.03.21	후원금	6건					100,000	1,000,000	
	∴	∴	∴	∴	∴	∴	∴	∴	
<b>합 계</b>								1,000,000	

작성연월일 : 2020년 월 일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회계책임자 ○○○ ㉠

㉠ 1회 30만원 이하(30만원 포함)의 금액을 기부한 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성명란에 “총건수”만 기재함.



[작성예시 25-5 : 후원회 회계보고서 첨부서류]

■ 표 지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회계보고

## 후원회의 지출부

회계책임자 ○○○ 인

■ 내 지

과목명 : 사무소설치·운영비 (단위 : 원)

연월일	지출을 받은 자					금 액	누 계	영수증 일련 번호
	내역	성명(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2020.03.25.	복사지외 5	(주)경성	654-98- 9876543	○○시○○로 654	문구제조	120,000	120,000	1
2020.03.26.	볼펜외 2	○○○	456-98- 000000	○○구○○로 456	문구도산매	32,000	152,000	생략
2020.04.01.	의자1	○○○	546-00- 0000000	○○구○○로 546	가구 대리점	150,000	302,000	2
∴	∴	∴	∴	∴	∴	∴	∴	∴
<b>합 계</b>	-	-	-	-	-	<b>302,000</b>	<b>302,000</b>	-
내역	영수증 첨부분	-	-	-	-	-	270,000	13건
	영수증 생략분	-	-	-	-	32,000	-	1건

작성연월일 : 2020년 월 일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회계책임자 ○○○ 인

주 영수증 첨부분 및 생략분 란에는 각각의 총건수를 기재함.

[작성예시 25-6 : 후원회 회계보고서 첨부서류]

■ 표 지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회계보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보고자 : 회계책임자 ○○○ 인

■ 내 지

**【과목명 : 사무소설치·운영비】**

사-1	사-2	사-3

- ☞ 1. 영수증의 크기에 따라 1면(A4용지사용)에 적정매수를 첨부하여야 함.  
2. 증빙서 번호는 지출부 영수증일련번호란의 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지출과목별·지출일자별로 별도로 부여하여야 함.  
3. 증빙서류는 축소하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함(축소한 경우 영수증을 알아 보기가 어려움).



[작성예시 25-7 : 후원회 회계보고서 첨부서류]

## 후원금 기부자 명단

【구분 :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

기 부 자					기부일자	기부금액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	○○○○○○	○○시 ○○동 ○○길 123	□□기업 과장	031- 123-1234	2020.03.24	400,000	
◇◇◇◇	○○○○○○	○○시 ○○동 ○○길 ○동 ○호	(주)◇◇ 전무	031- 321-4321	2020.03.25	500,000	
□□□	○○○○○○	○○시 ○○구 ○○로 112 ○호	○○은행 부장	02- 456-7890	2020.03.26	1,000,000	
△△△	○○○○○○	○○시 ○○동 ○○길 □동 □호	△△산업 재무부장	02- 543-2109	2020.03.29	3,000,000	
∴	∴	∴	∴	∴	∴	∴	∴

「정치자금법」 제40조제3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후원금 기부자의 명단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월      일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회계책임자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1회 3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제공한 자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제공한 자는 “구분”란에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로 각각 구분 기재하여 별도로 작성·제출함.

[작성예시 25-8 : 후원회 회계보고서 첨부서류]

## 후원금 기부자 명단

【구분 :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기부자					기부일자	기부금액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	○○○○○○○	○○시 ○○동 ○○길 123	○○은행 부장	031- 123-1234	2020.03.21	3,400,000	
◇◇◇	○○○○○○○	○○시 ○○동 ○○길 ○동○호	(주)○○ 전무	031- 321-4321	2020.03.21	3,500,000	
△△△	○○○○○○○	○○시 ○○구 ○○로 112 ○호	△△산업 재무부장	02- 543-2109	2020.03.22	2,500,000	
"	"	○○시 ○○동 ○○길 □동 □호	"	"	2020.03.22	800,000	
●●●	○○○○○○○	대구 북구 동천동 12 ○○아파트○동○호	▼▼산업 (주)대표	053- 924-7654	2020.03.22	1,500,000	
"	"	"	"	"	2020.03.22	900,000	
"	"	"	"	"	2020.03.23	700,000	
∴	∴	∴	∴	∴	∴	∴	

「정치자금법」 제40조제3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후원금 기부자의 명단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월      일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회계책임자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감 사 의 견 서 ①

「정치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우리 후원회의 2020년 3월 26일부터 2020년 5월 5일까지의 회계처리내역에 대한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1. 감사개요

가. 감사기간 : 2020. 5. 6. ~ 2020. 5. 6. ②

나. 감사대상

- 재산상황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

2. 감사의견 : 「정치자금법」 및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 ③

3. 특기사항 : 없음

2020년 월 일

감 사 자 ④

(직 위) 감사

(주 소) ○○시 ○○구 ○○동

(성 명) ○ ○ ○ ⑤

- 주 ① 감사의견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회계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관·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이 감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면 이를 감사의견서로 인정할 수 있음.
- ② 감사기간은 감사대상기간이 아니라 회계보고서를 실제로 감사한 기간을 기재함.
- ③ 감사의견에는 후원회의 회계처리가 “「정치자금법」 및 동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적합한 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함.
- ④ 감사자의 직위 등은 정관·규약 상에 규정된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규약상에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의기관이나 그 수입기관에서 임시감사기관을 구성하여야 함.

## 재산 및 수입·지출상황 등의 심사·의결서 ②

### 1. 의결주문

「정치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우리 후원회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내역 및 결산내역(내역별첨)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의결한다.

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기간 : 2020. . . ~ 2020. . . 까지

나. 재 산 : 0원

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 수 입 : 90,000,000원
- 지 출 : 90,000,000원
- 잔 액 : 0원

2020년 월 일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운영위원회 ③

직위: 운영위원 성명 : ○ ○ ○ 인 ④

직위: 운영위원 성명 : ○ ○ ○ 인

직위: 운영위원 성명 : ○ ○ ○ 인

### 2. 참고사항 ⑤

가.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1부

나. 심사보고서 1부

- ☞: ① 사본작성과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후원회대표자 등)의 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함.  
 ② 의결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회계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권한 있는 기관이 심사·의결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면 이를 의결서로 인정할 수 있음.  
 ③ 후원회의 정관·규약 상에 규정된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입기관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④ 심사·의결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함.  
 ⑤ 세부내역은 회계보고서 제출하는 명세서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함.



## 후원회의 잔여재산 인계·인수서

### 1. 인계자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	-	○○시 ○○구 ○○로 11	02-270-1234

### 2. 인수자

정당·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당	사무총장	○○○	-	○○시 ○○구 ○○로 1	02-784-1234

### 3. 인계·인수사항

재 산 목 록	인 계 · 인 수 방 법
후원금(1,500,000원)	예금계좌 입금

「정치자금법」 제21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2020년      월      일

인계자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대표자      ○○○ 인

○○ 당      회      계      책      임      자      ○○○ 인

인수자      ○○ ( 공 익 법 인 )      대 표 자      ○○○ 인

○○ ( 사 회 복 지 시 설 )      대 표 자      ○○○ 인

- 주 1.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고, 1부는 회계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2. 잔여재산 중 금전은 수표나 예금계좌 입금 그 밖의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함.
3. "인계·인수사항"란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작성예시 26]

(열람)·(사본교부) 신청서		
구 분	(열람)·(사본교부) 대상	비 고
열람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의 회계보고서	열람일시 : 2020. 5. 30.
<p style="text-align: center;">『정치자금법』 제42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등 회계보고서에 대한                      (열람을)·(사본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5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 ○○○ (인)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주 소 : ○○시 ○○구                      ○○길 1064-7번지</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주 1. “구분”란에는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구분하여 기재함.                      2.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이 신청서의 뒷면에 첨부함.                      3. 위 열람 또는 사본교부신청은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함.                      4. “열람 대상”란에는 “재산상황”, “수입·지출내역”, “첨부서류” 중 원하는 서류를                      모두 또는 선택적으로 기재함.</p>		



[작성예시 27]

## 회계보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	○○시 ○○구 ○○길 1064 (02-123-5678)
이의신청 대상	○○장선거 후보자 ○○○의 회계보고			
이의신청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수입·지출부(선거비용)에 기재된 금액 및 지출처가 영수증에 기재된 내역과 다름.			

「정치자금법」 제42조제6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2020년 5월 30일

신청인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이의신청은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음.  
2. “이의신청대상 회계보고”에는 ‘○○○의 회계보고’라고 기재함.  
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작성예시 28]

## 회계장부 등 보존위탁 신청서

선 임 권 자			보존위탁 내역		비 고
소속정당	신 분	성 명	보존위탁 서류명	수 량 (권, 페이지)	
○○당	○○ 선거 후보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보고서</li> <li>· 회계장부</li> <li>· 지출증빙서류</li> </ul>	1권 1권 5권	

「정치자금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 위원회에 상기 회계장부등에 대한 보존을 위탁합니다.

붙임 : 보존위탁 서류 부. 끝.

2020 년      월      일

선 임 권 자                      (인)

회계책임자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작성예시 29]

후원회 등록신청서			
문서번호			
명칭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사무소의 소재지	○○시 ○○구 ○○로 11	전화번호	02-523-1257
대표자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 ○○시 ○○길 11	전화번호
정관 또는 규약	별첨과 같음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별첨과 같음		
<p>후원회를 위와 같이 결성하였기에 「정치자금법」 제7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후원회의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직인</span></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 또는 규약 1부.</li> <li>2.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li> <li>3. 인영서&lt;별지&gt; 1부.</li> <li>4. 후원회지정서 1부.</li> <li>5.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1부.</li> <li>6.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li> </ol>			
<p>주 : 1. “명칭”란에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에 따른 후원회의 명칭을 기재함.                  2. 회의록은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 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p>			

[작성예시 30]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정관

2020년 월 일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라 칭한다. (이하 “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후원회는 회원 또는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후원회지정권자 ○○○에게 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 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지역구에 둔다.

##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정치자금 기부제한 자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한 모든 이는 자유의사에 의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가입과 탈퇴)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후원회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탈퇴는 탈퇴원서를 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회원의 제명) ①회원으로서 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제명할 수 있다.

②회원의 제명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장 총 회

제7조(구성)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총회의 기능) ①총회는 후원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

1. 후원회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2. 후원회 대표자의 선출
3. 정관의 제정 및 개정
4. 사업보고의 승인
5. 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에 관한 사항
6. 후원회의 감시기관에 관한 사항
7. 기타 후원회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심의, 의결

②총회의 소집이 어려울 때는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총회는 그 기능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제9조(총회소집) 총회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자가 이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회원은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가부동수인 때에는 대표자가 결정권을 가진다.

## 제4장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①총회의 수임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후원회의 대표자가 된다.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 의결
2.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대표자 직무대리자의 선출 및 총무 선임
5. 업무보고의 승인
6. 회원의 제명 결의
7.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제13조(회의소집)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①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5장 임 원

제15조(대표자) ①후원회에 대표자(회장) 1인을 둔다.

②대표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대표자는 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④대표자의 궐위시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총무) ①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총무를 둔다.

②총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하고 대표자를 도와 후원회 사무를 통괄한다.

제17조(회계책임자) ①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대표자가 선임하며 총무를 겸임할 수 있다.

②회계책임자 사고시에는 「정치자금법」에 의한 회계사무보조자가 위임받은 회계지출만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지체없이 새로운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 ①후원회의 회계 및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②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제6장 후원금 모금 및 기부

제19조(회비)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후원금 모금 등)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21조(모금의 제한) 본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상의 연간모금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기부) ①후원회는 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법」의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까지 기부할 수 있다.

②본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기부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제7장 해 산

제23조(해산) ①후원회는 다음 사유가 생긴 때에는 해산된다.

1. 후원회지정권자가 지정을 철회한 경우
2.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한 경우

4. 기타의 사유발생시 후원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잔여재산 처분)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정치자금법」 제21조에 의하여 처분한다.

## 제8장 정 관 개 정

제25조(개정) 정관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사항) 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작성예시 31]

취 임 동 의 서		
성 명	○ ○ ○ (한 자 :        )	
주 소	○○도 ○○시 ○○길 11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 자 택 ) 02-270-1234	( 휴 대 폰 ) 010-1234-5789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성 명    ○    ○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귀중</p>		
<p>주)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당해 후원회에 제출함.</p>		



[작성예시 32]

인 영 서	
명 칭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회 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auto;">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 (예비후보자)○○○후원회인                 </div>
	※ 인영에 표시된 문자 :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인
대표자 직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auto;">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 (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인                 </div>
	※ 인영에 표시된 문자 :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대표자인
비 고	

- 주 1. 후원회의 등록시 또는 이미 등록된 회인과 대표자 직인의 변경등록시 사용함.  
 2. 인영은 알아보기 쉽게 깨끗하고, 뚜렷하게 붉은 색으로 날인함.

[작성예시 33]

<b>후원회 (지정)·(지정철회)서</b>				
문서번호				
명	칭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사무소의 소재지		○○시 ○○구 ○○로1	전화번호	02-523-1234
대표자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도 ○○시 ○○길 11	전화번호	02-270-1234
(지정)·(지정철회)연월일		2020년    월    일		
<p style="text-align: center;">「정치자금법」 제6조·제7조제3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를 (지정)·(지정철회)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귀중</p>				
<p>주 : “명칭”란에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에 따른 후원회의 명칭을 기재함.</p>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결성  
회의록

일 시 : 2020년      월      일 00:00

장 소 : ○○컨벤션센터 0층 000호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기록자 ○○○ 인

확인자 ○○○ 인

원본대조필 인

# 식 순

1. 개 회  
(성원현황 등 포함)
2. 국민의례
3. 경과보고
4. 임시의장 선출
5. 후원회 정관 채택
6. 대표자(회장) 등 임원 선출
7. 기 타
8. 폐 회

원본대조필

인



#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설립 회의록

## 1. 개 회

사회자 :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결성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적회원 총 20명중 18명이 모두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결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 2. 국민의례

사회자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3. 경과보고

사회자 : 다음은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의 결성식을 개최하기까지의 진행경과를 후원회 준비위원인 ○○○ 회원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정치발전과 ○○시의 한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하여 ○○선거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원활한 선거비용 조달을 위하여 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원본대조필

인

○○○ : 지난 0월 0일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뜻을 같이하는 20분이 참여하여 오늘 후원회 결성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원님들께서 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4. 임시의장 선출

사회자 : 다음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선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후원회 결성에 많은 노력을 하신 ○○○ 회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박수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 전원 박수로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

#### 5. 후원회 정관 채택

임시의장 : 그러면 먼저 후원회 정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정관을 검토하고 오셨으리라 보고 정관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석 자 : 이의 없습니다.

임시의장 : 그러면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의 정관이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본대조필

㉠

## 6. 대표자(회장) 등 임원 선출

임시의장 : 다음은 정관에 따라 본 후원을 이끌어 나갈 대표자와 감사를 선출하고, 총회의 수임기관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운영위원들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 대표자에는 지금까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원회설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신 ○○○ 회원을 추천하고, 감사에는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 회원님과 ○○○ 회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 ○○○, ○○○ 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의장 : ○○○ 회원님으로부터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석 자 : (전원 손을 들면서) 동의합니다.

임시의장 : 그러면 후원회 대표자에는 ○○○ 회원을, 감사에는 ○○○, ○○○ 회원을, 운영위원에는 ○○○, ○○○, ○○○ 회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의장 : 그러면, 후원회 대표자로 선출되신 ○○○ 회원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 : 부족한 저를 대표로 뽑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후원금 모금 및 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본대조필	㉠
-------	---

## 7. 폐 회

사 회 자 : 이상으로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결성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회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본대조필

인



[작성예시 35]

후원회 사무소 소재지 약도	
명 칭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사무소주소	○○시 ○○구 ○○로 11
전화 번호	02-523-1234
[약 도]	

[작성예시 36]

후원회 (변경등록신청) · (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변 경 내 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명	칭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사무소의 소재지		○○시 ○○구 ○○로 1	전 화 번 호	523-1234	2020.4.2	이사
대표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p style="text-align: center;">『정치자금법』 제7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을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직인</span></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 또는 규약 1부.</li> <li>2.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li> <li>3. 인영서 1부.</li> <li>4. 회의록 사본 1부.</li> <li>5. 사무소 소재지 약도 1부.</li> </ol>						
<p>주 1. “변경내용”란에는 기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사항만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변경내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p> <p>2. “명칭”란에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재함.</p> <p>3. 인영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lt;별지&gt;에 의함.</p> <p>4. 회의록 사본은 『정치자금법』 또는 정관(규약)의 규정에 의한 대의기관이나 수입기관의 의결에 따라 후원회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첨부함.</p> <p>5. 회의록에는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 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p>						



[작성예시 37]

후원회 (가입) · (탈퇴)원서				
성 명	○ ○ ○ (한자 : )	생년월일		
주 소	○○시 ○○구 ○○로 1			
직 업 (근무처)	회사원(○○상사)			
연 락 처	자 택	02-123-5678	휴대폰	010-123-4567
	직 장	02-237-5698	E-mail	
회비약정	납부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금계좌입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납부금액	<input type="checkbox"/> 금10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p>본인은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에 (가입) · (탈퇴)하고자 이에 (가입) · (탈퇴)원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가입) · (탈퇴)연월일 : 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 ○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귀중</p>				
<p>주 1. 회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및 전화번호) 외에는 후원회에서 임의로 서식을 작성할 수 있음.</p> <p>2. 회원의 가입 · 탈퇴 등 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원명부에 즉시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p> <p>3. 후보자후원회는 선거일(2020. 4. 15.)이후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p>				

[작성예시 38]

## 후 원 회 회 원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가 입 연월일	탈 퇴 연월일	비고
1	○○○	69.12.12	○○시 ○○구 ○○로 111	자영업	123-1234	'20. 3. 28.		
2	○○○	89.10.29	○○시 ○○구 ○○로 11	학생	345-2478	'20. 3. 28.		
3	○○○	56.01.27	○○도 ○○시 ○○로 1	자영업	503-1700	20. 3. 28.		
4	○○○	71.09.11	○○도 ○○시 ○○로 52	회사원	512-1237	'20. 3. 28.	'20. 4. 21.	
5	○○○	62.12.17	○○시 ○○구 ○○로 79	지방의원	523-1219	'20. 3. 28.		
6								
7								
8								
9								
10								
11								
12								
13								
14								

주 : 회원의 가입·탈퇴 등 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원명부에 즉시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서

문서번호 :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1

1.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내역 (단위 : 매)

구분	기 수 령 매 수			후원회의 사용내역		발급신청 매 수
	전년도 이월	금년도 수령	소 계	발 행	미발행	
무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1만원권	10	10	8	2	10
	5만원권	10	10	1	9	
	10만원권	600	600	600		490
	50만원권					
	100만원권					10
	500만원권					
증 계		620	620	609	11	510

2. 신청일전일까지의 수입·지출총액 (단위 : 원)

수 입			지 출			비 고
전년도 이월액	후원금	합 계	기부금	제경비	합 계	
	50,940,000	50,940,000	40,000,000	10,940,000	50,940,000	

3. 수입인지 : 25,500원 상당

「정치자금법」 제17조제6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 직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비용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이 신청서의 뒷면에 첨부함.

##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 반납대장

년월일	적요	구분	수량(발행) 또는 반납							잔 고						
			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무정액영수증	1만원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소계	무정액영수증	1만원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2020 3.2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령	매수			300	50	100		450			300	50	100		450
		일련번호			라카 1 ~ 30	마카 1 ~ 50	바카 1 ~ 100					라카 1 ~ 30	마카 1 ~ 50	바카 1 ~ 100		
		금액			3,000	2,500	10,000		15,500			3,000	2,500	10,000		15,500
“	○○○에게 위임	매수			70	10	15		95			230	40	85		355
		일련번호			라카 1 ~ 70	마카 1 ~ 10	바카 1 ~ 15					라카 71 ~ 300	마카 11 ~ 50	바카 16 ~ 100		
		금액			700	500	1,500		2,700			2,300	2,000	8,500		12,800
2020. 4.22	○○○에게 발행	매수					2		2			230	40	83		
		일련번호					바카 16 ~ 17					라카 71 ~ 300	마카 11 ~ 50	바카 18 ~ 100		
		금액					200		200			2,300	2,000	8,300		12,600
2020. 4.28	○○○로부터 반납	매수			20		5		25			250	40	88		378
		일련번호			라카 51 ~ 70		바카 11 ~ 15					라카 51 ~ 300	마카 11 ~ 50	바카 11-15 <del>18-10</del>		
		금액			200		500		700			2,500	2,000	8,800		13,300

주: “적요”란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령”, “○○○에게 발행”, “○○○에게 위임” 또는 “○○○으로부터 반납” 등으로 기재함.



## 정치자금영수증 잔여매수 반납보고서

문서번호

1. 사용기간 :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2. 세부내용

구 분	전년도 이월 및 금년도 수령매수		사 용		잔여매수		
	매 수 (일련번호)	금 액	매 수 (일련번호)	금 액	매 수 (일련번호)	금 액	
무정액 영수증	매 (            )		매 (            )		매 (            )		
정액 영수증	1만원권	매            원 (            )					
	5만원권	매            원 (            )					
	10만원권	300매 (라카1~300)	30,000,000원	50매 (라카1~50)	5,000,000원	250매 (라카51~300)	25,000,000원
	50만원권	50매 (마카1~50)	25,000,000원	10매 (마카1~10)	5,000,000원	40매 (마카11~50)	20,000,000원
	100만원권	100매 (바카1~100)	100,000,000원	12매 (바카1~10 16~17)	12,000,000원	88매 (바카11~15 18~100)	88,000,000원
	500만원권	매            원 (            )					
	계	450매	155,000,000원	72매	22,000,000원	378매	133,000,000원

「정치자금법」 제17조제10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월    일 현재까지의 정치자금영수증의 잔여매수를 위와 같이 반납합니다.

2020년    월    일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표자 직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일련번호는 “매수”란 하단 (    )에 기재함.

##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

### 1. 수임자 인적사항

순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업	전화번호	비고
1	○○○	-	○○시 ○○구 ○○길 20	무직	02-523-1234	

### 2.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반납 및 후원금 납입내역

(단위:만원)

년 월 일	적 요	구 분	교부 및 반납							잔 고							후원금 납입액	비 고	
			무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무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1 만 원	5 만 원	10 만 원	50 만 원	100 만 원	500 만 원		소 계	1 만 원	5 만 원	10 만 원	50 만 원	100 만 원			500 만 원
200 3.24	교부	매수			70	10	15		95										
		일련 번호			라가 1-70	마가 1-10	바가 1-15		-								-		
		금액			700	500	1,500		2,700										
200 4.22	후원금 납입	매수			50	10	10		70			20		5		25	2,000		
		일련 번호			라가 1-50	마가 1-10	바가 1-10		-			라가 5-70		바가 1-5		-			
		금액			500	500	1,000		2,000			200		500		700			
200 4.24	반납	매수			20		5		25										
		일련 번호			라가 5-70		바가 11-5		-										-
		금액			200		500		700										
		매수																	
		일련 번호							-										-
		금액																	
		매수																	
		일련 번호							-										-
		금액																	

- 주 1. 수임자별로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함.  
 2. “적요”란에는 정치자금영수증 “교부”, “반납” 또는 “후원금 납입” 등으로 기재함.





## 후원금의 인계·인수서

1. 후원회명 :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2. 인계·인수자

인계자 (수입자)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시 ○○구 ○○로 20	전 화 번 호	02-523-1234
인수자 (회계책임자)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시 ○○구 ○○로 10	전 화 번 호	010-123-4567

3. 인계·인수사항

가. 후원금 : 20,000,000원

나.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구 분	무정액 영수증	정 액 영 수 증						합 계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500만원권	
매 수				70	10	15		
일련번호				라카0000001~ 000070	마카0000001~ 000010	바카0000001~ 000015		

다. 미사용 정치자금영수증

구 분	무정액 영수증	정 액 영 수 증						합 계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500만원권	
매 수				20		5		
일련번호				라카0000051~ 000070		바카0000011~ 000015		

「정치자금법」 제16조제2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금한 후원금을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2020년    월    일

인계자 ○ ○ ○ 인

인수자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회계책임자 ○ ○ ○ 인

- 주 1. 인계·인수서는 후원금·정치자금영수증을 인계·인수할 때마다 2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함.
2. 후원금은 그 금액을 기재하되, 금전이 아닌 물품인 때에는 품명·수량 등을 기재함.
3. 인계·인수서를 2매 이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각 면마다 인계·인수자가 각각 간인하여야 함.



##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내역보고서

문서번호

국고귀속대상 후원금내역	납부연월일	금 액(단위:원)	비 고
타인명의로 납부된 후원금	2020. 3. 29.	300,000	
	소 계	300,000	
가명으로 납부된 후원금			
	소 계		
익명기부한도액 초과 후원금			
불 법 후 원 금	2020. 3. 28.	1,000,000	
합	계	1,300,000	

「정치자금법」 (제11조제4항)·(제18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조 제1항)·(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대상 (후원금)·(불법후원금)의 내역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년    월    일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회계책임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작성예시 44]

##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1. 선거명 : 국회의원선거
2. 후보자명 : ○○○
3. 청구내역

구분	청구액					비고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연락소	○○선거연락소	○○선거연락소	
후보자 자산	15,000,000	10,000,000				25,000,000
후원회기부금						
정당의지원금						
합계	15,000,000	10,000,000				25,000,000

4. 보전청구 총액 : 금이천오백만원(₩25,000,000)
5. 수령계좌명 : 한국은행(예금주명 : ○○○) 계좌번호 : 123-34-56789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보전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위 보전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위법·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귀 위원회에 반환하는 등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 붙임 1.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서(선거비용과목) 사본 1부.  
 2. 영수증 등 증빙서류(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1의 2에 따른 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 포함) 사본 1부.  
 3. 선거연락소별 선거비용보전청구서(선거연락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사본 부.

2020년            월            일

청구인    [    ○○당중앙당대표자    ○○○ (인)    ]  
                   (후보자)  
                   [    선거사무장            ○○○ (인)    ]  
                   [    회계책임자            ○○○ (인)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청구인란에는 선거사무소의 경우 후보자·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연대 서명·날인을, 선거연락소의 경우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함.  
 2. 선거연락소가 있는 경우 선거사무소는 각 선거연락소의 보전청구액을 함께 기재하고, 선거사무소의 보전청구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3. 선거연락소는 선거연락소에 대응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당해 선거연락소의 보전청구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함.  
 4. 선거연락소는 위 “3.청구내역”란의 선거연락소란에 당해 선거연락소분만 기재하여야 함.



## 점자형선거공보 등 부담비용 지급청구서

1. 선거명 : 국회의원선거
2. 정당명 : ○○○
3. 후보자명 : ○○○
4. 점자형선거공보 등 작성·제출수량

구분	작성수량			제출수량		
	작성부수(A)	부당매수(B)	총매수(C=A×B)	제출부수(A)	부당매수(B)	총매수(C=A×B)
점자형 선거공보	100	10	1,000	90	10	900
계	100	10	1,000	90	10	900

5. 청구금액 (단위 : 원)

구분	계	점자인쇄비	한글인쇄료	운반비	수당·실비
점자형 선거공보	1,200,000	900,000	200,000	100,000	/
활동보조인	700,000	/	/	/	700,000
계	1,900,000	900,000	200,000	100,000	700,000

6. 수령계좌명 : ○○은행(예금주명 : ○○○) 계좌번호 : 123-34-5678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점자형선거공보 등의 부담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겠으며, 위법·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귀 위원회에 반환하는 등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 붙임 1.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서 사본 1부.  
 2. 활동보조인 수당·실비 지급 명세서 1부  
 3.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2020년            월            일

청구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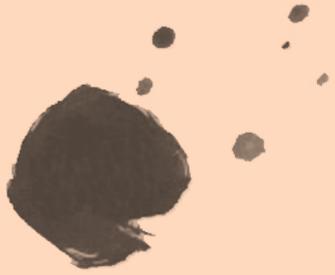
OO당중앙당대표자 (후보자)	○○○	(인)
선거사무장	○○○	(인)
회계책임자	○○○	(인)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청구인란에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후보자·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연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함.





## [부 록]

1. 정치자금 회계사무 일정표 / 229
2. 묻고 답하기 / 233
3. 수입·지출과목 해소표 / 241
4. 「정치자금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 245
5.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매뉴얼 / 251





## 부록 1

### 정치자금 회계사무 일정표





## 정치자금 회계사무 일정표

시행일정	추진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2019. 12. 6.(금)	○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공고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공직선거법」 제122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
예비후보자 등록시부터 (선거연락소 설치시부터)	○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및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선거연락소 설치신고시]	「정치자금법」 제34조
	○ 정치자금(선거비용 포함)의 수입 · 지출 및 회계장부 기재 등 - 예금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 회계장부 비치·기재 -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정치자금 회계마감일까지	「정치자금법」 제36조 · 제37조 · 제39조
4. 27.(월)까지	○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보전 청구내역서 포함 청구(후보자 → 관할 선관위)	선거일 후 10일까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5. 5.(화)까지	○ 정치자금 회계마감	선거일 후 20일까지	「정치자금법」 제40조
5. 15.(금)까지	○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보고서 등 제출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5. 25(월) 까지	선거일 후 30일까지	「정치자금법」 제40조
	○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추가 청구	선거일 후 30일까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시행일정	추진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5. 22.(금)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사본 공고(모든 선거 일괄공고)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	「정치자금법」 제42조
5. 22.(금) ~ 8. 24.(월)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대한 열람·사본교부 및 이의 신청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회계보고 사본은 공고 후 시기에 관계 없이 교부 가능	공고일부터 3월간	「정치자금법」 제42조
6. 12.(금)까지	○ 선거비용 보전 (점자형 선거공보, 전화요금 등 포함)	선거일 후 60일 이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2023. 5. 15.(월) 까지	○ 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회계보고를 마친 날부터 3년간	「정치자금법」 제44조



## 부록 2

### 문고 답하기





## 문고 답하기

1. 후보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 해당 자동차 등의 사용일수에 따른 시중의 통상적인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후보자자산계정, 선거비용과목에 수입과 함께 지출 처리함.

[계 정 명 : 후보자 자산]

[과 목 명 : 선거비용]

(금액단위 : 원)

연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성명 (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 3/31	후보자 소유 자동차	750,000	750,000	750,000	750,000	0	가후보	50/1/1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사업	02-502-9584	

2.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공직선거법」 제79조)의 유류비 집행방법

⇨ 주유 시 회계책임자가 차량 운전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결제하게 하거나, 운전자를 회계사무보조자로 선임하여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정산서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예금계좌 사본 포함)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할 수 있음.

3.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유류비를 신고된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 후 일정 금액이 캐시백되어 지출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 '수입계정 - 후보자자산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수입 처리함.

4. (예비)후보자가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식사한 비용이 선거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선거비용에 해당되며 보전대상임.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않음.

5.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들어온 내방객들이 가져온 음료수 등의 회계처리방법  
 ⇨ 일상적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범위 내(그 자리에서 즉시 소비될 정도의 양)라면 정치자금 수입·지출 장부에 기재할 필요 없음.  
 다만, 의례적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될 수 있음.
6.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 또는 후보자의 친족 소유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그 회계처리 방법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제외하고 예비후보자·후보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 등 제3자로부터 금품 등을 무상으로 지원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2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다만,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친족 (「민법」 제777조)으로부터 기부받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함.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의 경우에는 후원회를 통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 제3자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후원회로부터 물품 등을 기부받은 경우 회계처리방법**

○ 후원회가 인쇄물·시설물·물품·장비 등을 제공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제공 또는 대여 받은 날에 그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수입계정의 후원금 과목에 기재하고, 제공 또는 대여 받은 인쇄물·시설물·물품·장비 등을 후원회지정권자인 후보자에게 기부한 때에는 기부한 날에 그 가액을 지출계정의 기부금 과목에 기재함.

[계 정 명 : 수입]

[과 목 명 : 후원금]

(금액단위 : 원)

연월일	적요						금액	누계	영수증 일련번호
	내역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3/29	25톤 트럭 1대 대여	○○○	60/1/1	○○시 ○○구 ○○로1	회사원	02-555-6666	5,000,000	5,000,000	



[계 정 명 : 지출]  
[과 목 명 : 기부금]

(금액단위 : 원)

연월일	적요						금액	누계	영수증 일련번호
	내역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3/31	25톤 트럭 1대 대여분	○○○	50/1/1	○○시 ○○구 ○○로 12	사업	02-502-9584	5,000,000	5,000,000	1

○ 위 인쇄물·시설물·물품·장비 등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후보자는 수입계정 중 후원회기부금 계정의 선거 비용 과목에 그 가액을 수입과 동시에 지출처리함.

[계 정 명 : 후원회 기부금]  
[과 목 명 : 선거비용]

(금액단위 : 원)

연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성명 (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 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3/31	25톤 트럭 1대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0	○○○ 후원회		○○시 ○○구 ○○로 1		02-502-9584	1

※ 「공직선거법」 제79조의 차량은 선거비용과목에, 공직선거법 제91조의 차량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 각각 기재함.

7. 선거연락소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선거사무원 수당 등)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 ⇨ 선거연락소의 경비는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가 지출하여야 할 것임.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없는 경우 회계사무보조자를 선임하여 지출할 수는 있을 것임.
8. 선거사무소 다과구입을 업체와 장부로 거래한 후 일괄로 결제할 수 있는지
  - ⇨ 지출 발생시 마다 결제하여 지출처리하고 장부에 기재해야 함.

9. 선거사무관계자가 신용불량자여서 수당 등의 계좌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법  
 ⇨ 선거사무관계자가 지정하는 가족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을 것임.
10. 후보자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방법  
 ⇨ '후보자 자산 계정'에 수입 처리하고, 수입·지출장부의 '내역'란에 '후보자 자산'으로 기재, '수입을 제공한 자'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함.  
 (회계보고 시 차용증 사본 제출)
11.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 지출시 「정치자금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법에 현금영수증도 해당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은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12. 실제 지출일과 출금일자가 다른 경우 회계처리 방법  
 ⇨ 원칙적으로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날에 지출(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지출일과 출금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계 장부에 기재함.
13. 예금계좌 신고 시 예금계좌는 누구의 명의로 개설해야 하는지  
 ⇨ (예비)후보자의 명의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개설함.  
 ※ 회계책임자 변경 시 예금계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예비)후보자 명의로 개설
14. 공직선거법 제91조의 차량 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사무원 등을 출·퇴근 시킬 수 있는지와 출·퇴근이 가능한지 여부  
 ⇨ 선거사무원등을 출·퇴근 시켰을 경우에는 해당 선거사무원의 실비에서 교통비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임.



15. 선거사무소 임차 시 기존에 있던 집기 등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 선거사무소 임차 계약에 집기 등 사용에 따른 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지출할 수 있음.
16. 하나의 건이 '선거비용과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으로 지출이 이루어 질 경우 회계처리 방법(증빙서류 처리 방법 포함)  
 ⇨ 총금액에서 선거비용과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 금액을 각각 구분한 후 이를 회계장부의 각 과목에 기재하고 영수증은 1부를 복사하여 각각 첨부하면 될 것임.
17. 현금 지출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그 처리 방법  
 ⇨ '지출액'란에 잔액을 감처리(예 : -1,000)하고, '내역'란에 '현금 지출 후 잔액 여입'이라고 기재함. 당일 인출한 것은 당일에 여입 처리하도록 함.
18. 선거사무를 위하여 사무실 임차, 물품구입 등을 계약할 때 계약자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  
 ⇨ 정치자금 관리의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후보자 또는 회계 책임자)의 명의로 계약하면 될 것임.
19. (예비)후보자 본인 소유의 건물(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지급할 수 있음.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출하는 경우 ① 입금확인증과 ② 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령인(임대인)이 금액, 내역, 영수일자 및 수령인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날인]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
20. 선거사무관계자가 교체된 경우 수당 등 지급 가능 여부와 그 지급기준  
 ⇨ 「공직선거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가 교체된 경우

교체 전·후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실비는 근무시간에 따라 교체시점을 고려하여 지급 가능한 범위 내)를 지급할 수 있음.

※ 보전하는 수당·실비는 1명분에 한함

21.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서 단순 업무처리(위드작업, 차대접, 청소 등)를 담당할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 단순 노무자에 대한 인부임의 경우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될 것임. 만일 이를 벗어나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 인건비 지출 시에는 인건비 입금증 이외에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① 금액, ② 내역(예시 : 청소근로자 급여), ③ 영수일자, ④ 수령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

22. 회계보고 전 수입·지출계좌를 해지 시 해지 이자의 처리 방법

⇒ 후원금 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정치자금의 입·출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지 이자액은 “V. 회계보고 및 열람·사본교부 등 → 1. 회계처리 마감 → 라. 마감 전 정치자금 반납 및 반환 → (3) 후원회기부금의 인계 등 잔여재산 처분”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함.

23. 후원금 또는 후원회기부금으로 구입한 비품 등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의 처리 방법

⇒ 후원금 또는 후원회기부금으로 구입한 비품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며, 물품의 노후화·훼손 등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견적서, 사진, 회계책임자가 서명·날인한 폐기사유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부록 3

### 수입·지출과목 해소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9조제2항 관련]

## 수입·지출과목 해소표

### 1. 수입과목 해소

과 목	과 목 해 소
1. 당비	•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2. 기탁금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3. 보조금	•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4. 지원금	•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5. 차입금	•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6. 기관지발행 사업수입	• 정당에서 발행하는 당보 등 간행물과 관련된 수입
7. 그 밖의 수입	• 예금이자 등 위의 과목 외의 수입

### 2. 지출과목 해소

항	목	과 목 해 소
선 거 비 용	선거비용	•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비용
선 거 비용외 정 치 자 금	기본 경비	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직원에 대한 봉급·수당·여비·활동비·격려금</li> <li>• 일반사무관계에 소요되는 여비</li> <li>• 그 밖의 인건비</li> </ul>
	나. 사무소 설치·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신축 또는 매입 그 밖의 부대경비</li> <li>• 임차계약에 의한 토지·건물·기계시설 등의 임차료</li> <li>• 사무소에 필요한 물품구입비</li> <li>• 사무소운영에 필요한 수수료 및 수선비</li> <li>• 각종 보험료, 연료비, 자동차유지비(사무용에 한함)</li> <li>• 전신전화 그 밖의 공공요금 일체</li> <li>• 소송사건에 필요로 하는 공탁금 그 밖의 제세공과금</li> <li>• 그 밖의 사무소설치·운영비</li> </ul>

항	목	과 목 해 소
정치 활동비	가. 정책 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당의 정책연구소 운영경비</li> <li>• 정책개발 부서의 기본경비(정책개발부서직원의 봉급·수당·여비·활동비·격려금,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연료비·자동차유지비, 공공요금·체세공과금)</li> <li>• 정책개발부서 직원의 교육·연수, 정책자료 제작비</li> <li>• 정책개발 관련 여론조사비</li> <li>• 외부연구소나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정책개발 관련 용역비</li> <li>• 정책평가비(다만, 대규모집회를 통한 정책평가보고 대회는 제외)</li> <li>• 정책개발관련 정책결정·평가 등을 위한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각종 정책회의 개최비</li> <li>• 그 밖의 정책개발비</li> </ul>
	나. 조직 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원연수·교육관련 경비</li> <li>• 강사료 등 특별종사원에 대한 인건비</li> <li>• 교재 및 연구자료 수집비</li> <li>• 피교육자에 대한 급식비·여비</li> <li>• 교육훈련을 위한 장소·시설 임차료 및 유지비</li> <li>• 정당의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당원집회 등 관련 경비</li> <li>• 정당 내부의 지휘·감독 활동 경비</li> <li>• 홍보 관련 경비</li> <li>• 기관지 발행·배부 관련 경비</li> <li>•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경비</li> <li>•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에 지원한 경비</li> <li>• 그 밖의 조직활동비</li> </ul>
	다. 여성정치 발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에 관한 경비</li> <li>• 그 밖의 여성정치발전비</li> </ul>
	라.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의 각급 당부간에 지원한 금전이나 유가증권</li> <li>• 그 밖의 지원금</li> </ul>
	마. 그 밖의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과목 외의 지출</li> </ul>



## 부 록 4

### 「정치자금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4조제2항 관련]

## 과태료 부과기준

### 1. 「정치자금법」 (이하 이표에서 “법”) 제51조 관련

(단위 : 만원)

처분대상	관계법조	법정 상한액	부과기준
1.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교부를 해태하는 행위	○ 법 제51조제1항 · 제5조제1항 · 제17조제1항	300	가. 발행·교부를 해태한 때 : 50 나. 발행·교부기한을 경과하는 때 1일마다 가산액 : 10
2. 후원회의 사무소·연락소 또는 국회의원의 사무소에 들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하여 두는 행위	○ 법 제51조제1항 · 제9조제2항·제3항	300	가.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하여 둔 때 : 100 나. 시정명령기한을 경과하는 때 1일마다 가산액 : 10
3.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정치자금범죄 조사와 관련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51조제1항 · 제52조제5항	300	매회 : 300
4. 회계책임자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를 지체하는 행위	○ 법 제51조제2항 · 제35조제2항	200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계·인수를 하지 아니한 때 : 각각 50 나. 이행명령 후 이행기한을 경과하는 때 1일마다 가산액 : 각각 20
5. 지출결의서나 구입·지급품의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행위	○ 법 제51조제2항 · 제38조제2항	200	지출결의서나 구입·지급품의서에 의하지 아니한 때 1건마다 : 5

처분대상	관계법조	법정 상한액	부과기준
6. 신고·보고·신청을 해태하는 행위 가. 후원회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신고 나. 후원회의 존속결의에 따른 변경등록신청·해산 신고 다. 후원회의 합병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라. 회계책임자의 선임·겸임 신고 마. 회계책임자의 변경 신고 바. 정당 등의 회계보고	○법 제51조제3항 ·제7조제1항·제4항  ·제19조제2항·제3항 본문  ·제20조제1항 후단  ·제34조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	100	가. 신고·보고·신청을 해태한 때 : 30 나. 신고·보고·신청기한을 경과하는 때 1일마다 가산액 : 10
7. 후원회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허위로 하는 행위	○법 제51조제3항 ·제7조	100	매회 : 100
8.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법 제51조제3항 ·제8조제1항	100	가.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때 : 각각 50 나. 시정명령 후 시정기한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때 : 10
9. 정치자금영수증 사용 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51조제3항 ·제17조제10항	100	가. 보고·반납을 해태한 때 : 50 나. 보고·반납기한을 경과하는 때 1일마다 가산액 : 10



처분대상	관계법조	법정 상한액	부과기준
10. 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의 잔여재산 또는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인계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	○법 제51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100	가. 인계 의무를 해태한 때 : 50 나. 인계 의무기한을 경과하는 때 1일마다 가산액 : 10
11. 2 이상의 회계책임자를 겸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제34조제2항 본문	100	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된 경우 : 50 나. 시정명령 후 시정 기한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때 : 10
12.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행위	○법 제51조제3항 ·제37조제1항 후단	100	100
13. 회계보고서에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 사본, 의결서 사본 또는 감사의 견서와 인계·인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행위	○법 제51조제3항 ·제40조제4항	100	가. 보완명령 후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 : 50 나. 보완기한을 경과하는 때 1일마다 가산액 : 10
14. 정치자금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51조제3항 ·제52조제5항	100	가. 당사자는 매회 : 100 나. 그 밖의 관계자는 매회 : 50

## 2. 법 제49조 관련

(단위 : 만원)

처분대상	관계법조	법정 상한액	부과기준
1.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변경·검입신고를 해태하는 행위	○ 법 제49조제3항 · 제34조제1항·제3항 · 제35조제1항	200	신고기한을 경과하는 때1일마다 : 20
2.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검입의 신고시에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49조제3항 · 제34조제4항	200	가. 보완명령 후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 : 100 나. 보완기한을 경과하는 때 1일마다 가산액 : 20
3.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의 변경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49조의제3항 · 제35조제2항	200	가. 보완명령 후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 : 100 나. 보완기한을 경과하는 때 1일마다 가산액 : 20
4.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관련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연대서명·날인(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장의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49조제3항 · 제40조제5항	200	가. 보완명령 후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 : 50 나. 보완기한을 경과하는 때 1일마다 가산액 : 10



## 부 록 5

###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매뉴얼



보다 자세한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은  
'중앙선관위홈페이지(<http://www.nec.go.kr>) / 통합자료실 / 선거자료 /  
선거·정당·정치자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1.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 가. 다운로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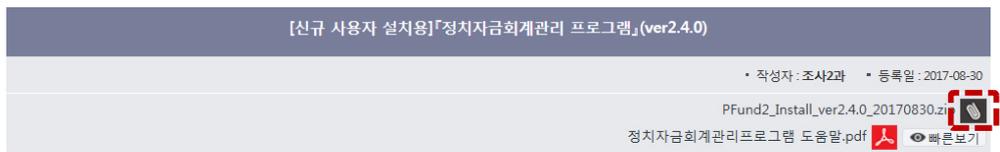
(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접속, 상단의 통합자료실 클릭



(2) [선거자료] 하위의 [선거·정당·정치자금] 클릭 후 [신규 사용자 설치용]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게시글 선택



(3) 해당 게시글의 등록일 아래 클립(📎) 아이콘 클릭



신규 사용자 및 [ver 1.5.5] 이전 버전 사용자만 설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용자 설치용]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설치시 별도의 패치파일을 다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실행프로그램 버전 확인 방법 - 실행화면의 좌측 상단에서 확인(ver 2.4.0 2017-08-30)

부  
록

(4) 화면 하단에 저장을 위한 작은 화면이 호출되면, 저장(S) 옆의 작은 삼각형을 클릭



(5) 새로 열린 팝업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여 바탕화면에 저장



(6) PFund2\_Install\_ver2.4.0\_20170830.ZIP 압축파일 생성

(7) 압축파일을 [압축풀기]하면 아래와 같은 설치아이콘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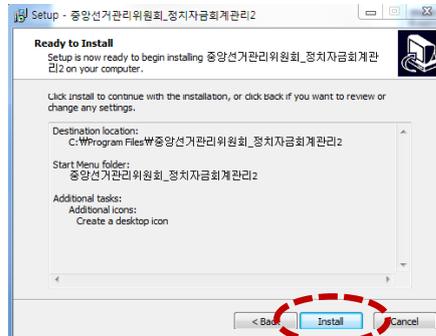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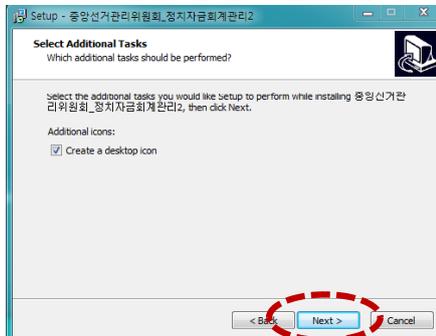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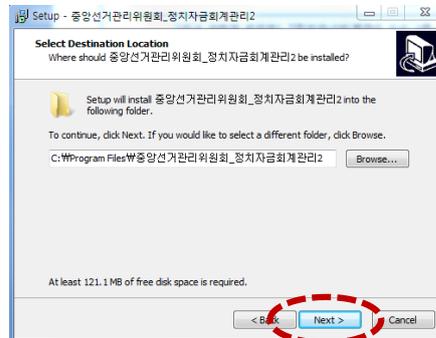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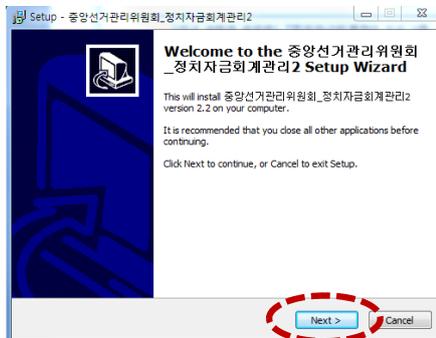


## 나. 설치방법

(1) 압축해제 후 생성된 아이콘 더블클릭



(2) 아래 설치화면에서 계속하여 <next>, <install>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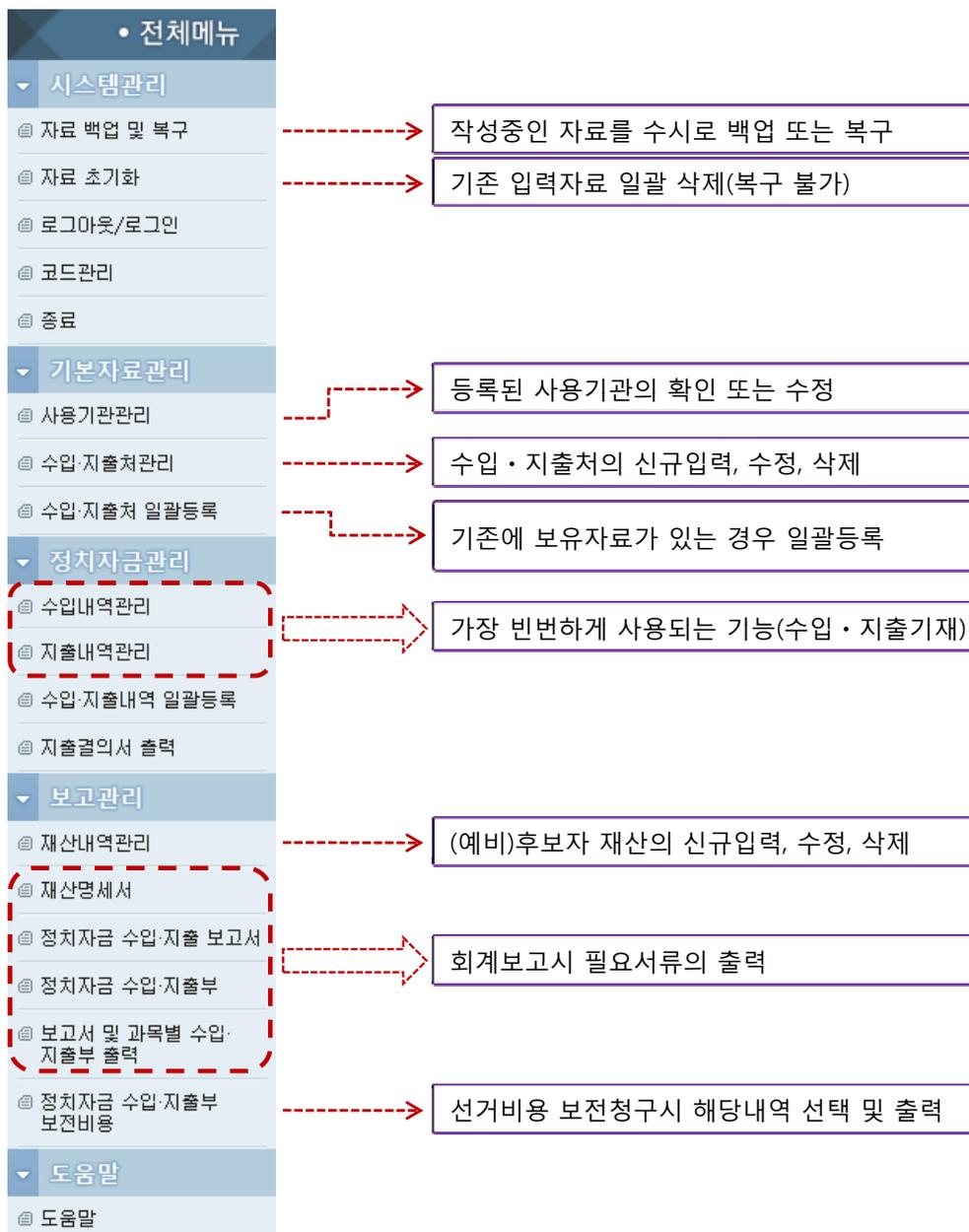


(3) 설치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실행 아이콘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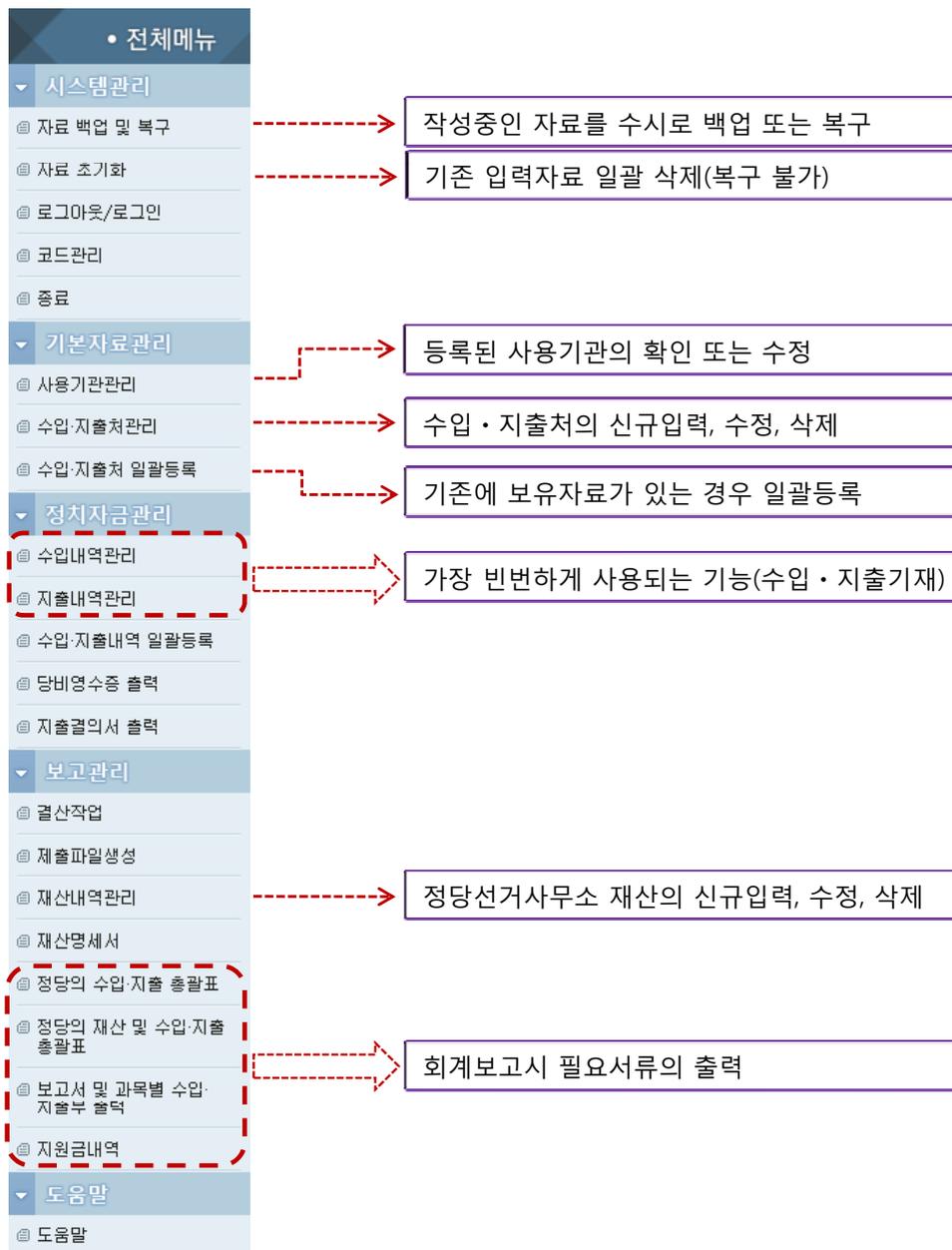
## 2. 전체메뉴 및 기능(1) [(예비)후보자용]

전체메뉴는 아래와 같으며 주로 사용하는 메뉴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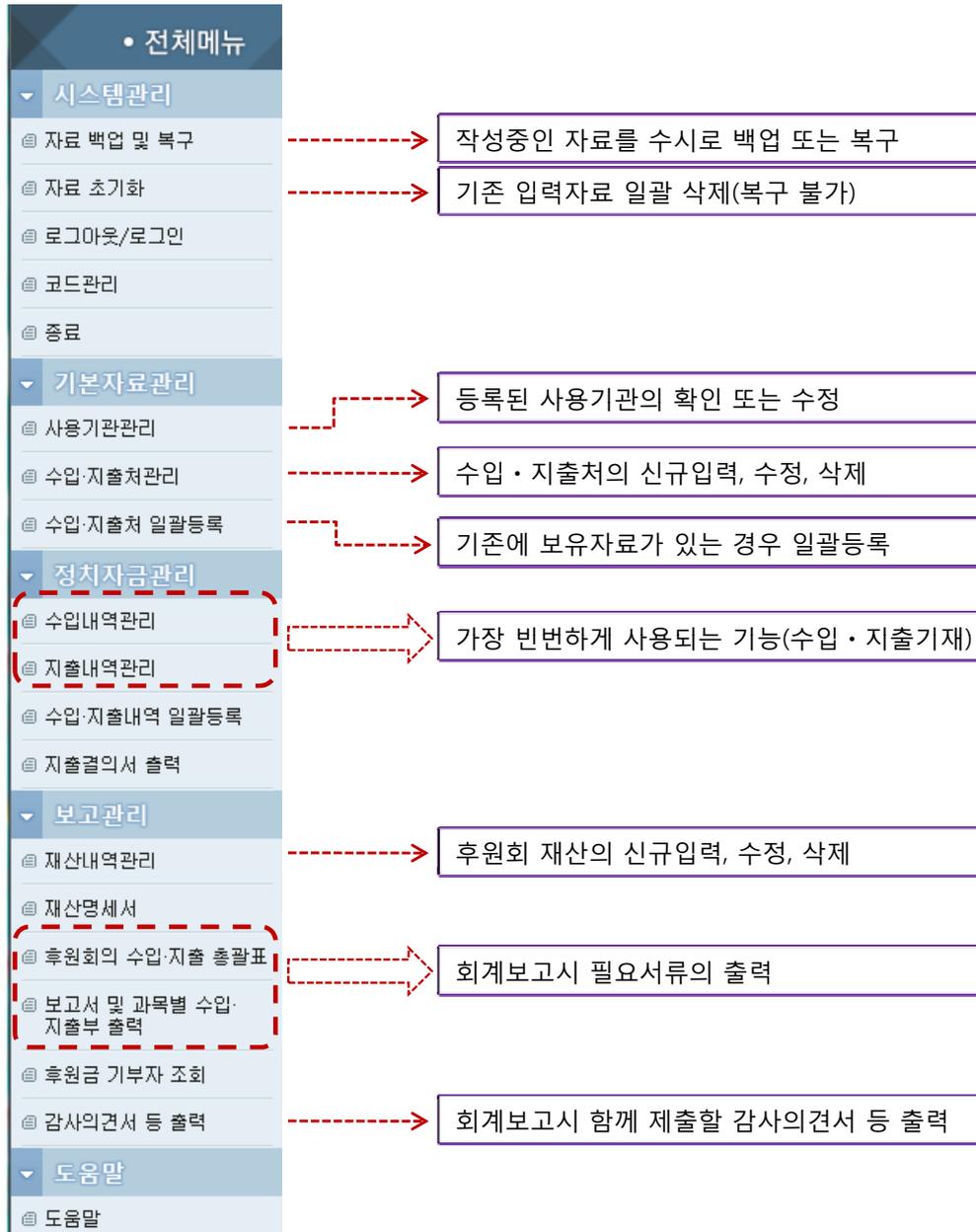
## 2. 전체메뉴 및 기능(2) [정당선거사무소용]

전체메뉴는 아래와 같으며 주로 사용하는 메뉴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전체메뉴 및 기능(3) [후보자후원회용]

전체메뉴는 아래와 같으며 주로 사용하는 메뉴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3. 사용기관 등록 (1)

가. 사용기관을 등록하여야만 본 프로그램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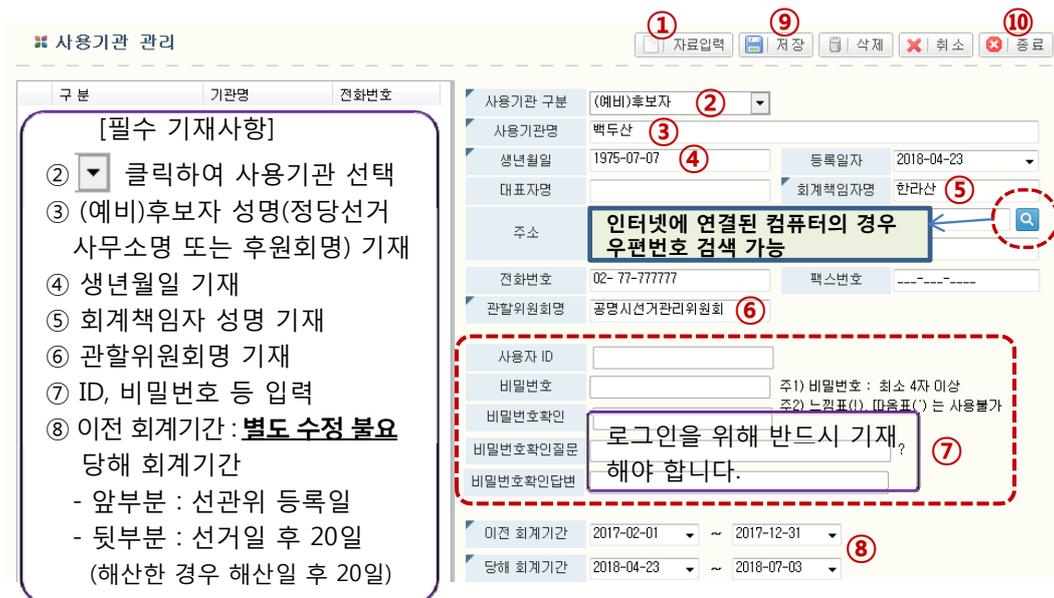
나.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 [사용기관등록] 탭을 클릭하여 해당 후보자 관련사항을 입력합니다.

[①자료입력]부터 순서대로 클릭하여 작성하며, [저장] 후 [종료]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증 화면에 사용기관명이 표시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합니다.



### 3. 사용기관 등록 (2)

#### 가. 기존의 백업파일이 있는 사용자의 경우

- 백업파일만 가지고 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사용자 인증을 하여야 하므로, [사용기관 등록]을 클릭한 후, p.259를 참고하여 가상의 인물(인적사항 등 임의 작성)로 [사용기관 등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p.298(자료복원방법)을 참고하여 자료를 복원합니다.
- 복구가 완료되면 기존의 사용기관과 사용자ID가 호출되며, 기존의 비밀번호 입력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나. 사용기관이 등록된 컴퓨터에서 다른 사용기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정당선거사무소 또는 후원회 사무소 컴퓨터에서 (예비)후보자 등 다른 사용기관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아래의 [사용기관 등록]을 클릭한 후 앞페이지를 참고하여 사용기관을 등록합니다. 이 때, 반드시 [자료입력]을 먼저 클릭한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입·지출처 관리

### 가. 수입·지출처 등록

#### ● 해당화면의 주요기능

- ★ 이 화면에서 수입·지출처를 새로 등록하고 수입·지출 상대방의 이력(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일종의 주소록 기능과 유사하며, 수입·지출 내역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인 거래상대방을 수입·지출처로 한번만 등록하면 수입·지출내역 작성시 간편하게 불러내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수입·지출처의 경우, 수입내역 및 지출내역 관리 화면에서 수입·지출내역 입력시마다 별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입·지출내역 관리 참조)

#### ● 아래의 ① 또는 ②를 클릭하여 해당화면으로 이동



### ● 수입·지출처 등록화면

① 자료입력   ③ 저장   삭제   취소   엑셀   종료

번호	구분	수입/지출대상자	연월일/사업자번호	직업(업종)	전화번호
1	개인	김강산	1966-02-02		
2	(예비)후보자	백두산	1975-07-07		
3	사업자	생수집	355-56-55555		
4	개인	소백산	1975-07-08		
5	개인	익명			

수입지출처 구분: 전체

성명(명칭):

생년월일: (예) 123-45-67890

직업(업종):

지역(시도):

주소:  국내  해외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자료입력   삭제

일자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전화번호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경우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쉽게 우편번호 검색 가능

### ● 수입·지출처 등록순서

① 자료입력	수입·지출처를 신규 등록하려면 반드시 [자료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입력한다. * 기존 내역에서 새로운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신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수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② 내용입력	수입·지출처 기재사항을 차례대로 선택 및 입력한다.
③ 저장	수입·지출처를 저장하면 조회화면과 같이 수입·지출처로 등록된다.

### ● 기타 기능

- √ 삭제 : 조회화면에서 선택된 수입·지출처 항목 삭제  
\* 단, 수입 또는 지출내역이 등록되어 있는 수입·지출처는 삭제 불가
- √ 엑셀 : 수입·지출처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 종료 : 최초의 메인 화면으로 전환

## 나. 수입·지출처 수정

### POINT

- ★ 성명, 사업자번호 수정과는 다르게 주소 및 전화번호 수정은 ③의 [자료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 내용을 수정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등록된다.

### ●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수정방법

1. 위 조회 화면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수입·지출처를 선택(파란색으로 변함)한다.
2. ① 항목에서 수정사항(성명, 사업자번호 등)을 입력하고 ② [저장]한다.

### ● 그 외 주소 또는 전화번호 수정방법

1. 위 조회 화면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수입·지출처를 선택(파란색으로 변함)한다.
2. ③ [자료입력](주소, 전화번호 수정자료입력)을 클릭한다.  
💡 신규 수입·지출처 등록시 [자료입력] 버튼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3. ① 항목에서 수정사항(주소, 전화번호)을 입력하고 ② [저장]한다.
4. 최종 등록정보는 ④ 이력 관리 화면에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 수입내역 관리

### 가. 화면 및 기능개관(1)

- ★ 기본적으로 조회 기능 화면이 제공됩니다.
- ★ 아래의 화면에서 수입내역 조회 및 신규 수입내역 입력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① 또는 ②를 클릭하여 해당화면으로 이동



### ● 화면 개관

새 자료 (신규 수입내역) 입력 시 수입내역 입력 -조회시 조회 조건 입력

새 자료를 입력. 저장하면 우측 수입내역부에 등록 -조회 조건에 따른 조회내역 확인 가능

순번	계정	과목	수입일자	금액	수입계종	내역	종빙일부	종빙번호	미결제사유	비고
1	후보자금 자산	선거비용	2018-01-02	5,000,000	정치당	후보자 자산	Y			
2	후보자금 자산	선거비용외 정치자	2018-01-09	3,000,000	정치당	후보자 자산	Y			
3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	2018-01-16	3,000,000	역당	후원회 기부금	Y			
4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외 정치자	2018-01-23	2,000,000	역당	후원회 기부금	Y			

수입액 합계, 지출액 합계, 잔액 조회

신규 수입제공을 통해 입력 및 등록 가능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수입) 내역이 되며, 보고관리에서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 양식으로 출력 가능

## 가. 화면 및 기능개관(2)

● **주요기능** : 세부내역은 p.266[신규 수입내역 등록] 참조

① 화면초기화	최초 입력 내용이 없는 조회 화면으로 되돌아가는 기능이다.
② 조회	조회 조건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다.
③ 자료입력	신규 수입내역 입력 화면으로 전환된다.
④ 저장	신규 수입내역 및 수정 내용을 저장한다.

● **알아두면 편리한 기능** : 세부내역은 p.270[등록사항 수정 · 정렬 · 삭제] 참조

⑤ 다중선택	다중선택 check시 각 수입 내역 항목 선택이 가능하다.
⑥ 정렬저장	수입내역 순서를 조정하고 저장하는 기능이다.
⑦ 영수증일괄입력(저장)	영수증 증빙번호를 개별 또는 일괄 수기입력할 수 있다.

**비고** 지출내역 관리는 [영수증 일괄생성], [영수증 일괄삭제 기능](버튼)이 있다.

● **그 외 기능**

⑧ 복구	수정 · 삭제한 자료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이다.
⑨ 수입부	계정, 과목별 수입부 내역을 출력하는 기능이다.

● **정당선거사무소 및 후원회**

√ 당비영수증 출력	정당선거사무소에서 당비를 납부받은 경우에만 해당 √ 정당선거사무소 사용자로 로그인 시 표출
√ 후원내역엑셀	후원내역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하는 기능 √ 후원회 사용자로 로그인 시 표출

## 나. 신규내역 등록(1)

### ● 신규 수입내역 등록 순서

① 자료입력	수입 내역을 신규 등록하려면 <b>반드시 자료입력버튼을 클릭하여</b> 자료입력 화면에서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수입내용 입력	정치자금 회계보고시 필수 기재사항으로 차례대로 선택 및 입력한다. (수입제공자 검색은 <b>Q</b>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한다.)
③ 저장	신규 및 수정 수입내역을 저장하고 수정내역에 등록한다. ※ 정렬 저장은 수입내역 순서를 조정하고 저장하는 기능이다.

### ● 주요기능

✓ 화면초기화	각 항목에 입력한 값을 지운 상태, 즉 기존의 조회 기능 화면으로 되돌리는 기능이다.
✓ 조회	조회하고자 하는 조건을 ②에 입력 후 수입내역을 조회 및 검색하는 기능이다.



## 나. 신규내역 등록(2)

① 수입내역관리

계정: 전체 | 과목: 전체 | 수입액: 13,000,000 원 | 지출액: 5,300,000 원  
 수입일자: 2018-01-01 ~ 2018-12-31 | 잔액: 7,700,000 원  
 수입금액: ~ | 수입제공자: | 수입제공자 등록 ②  
 증명서첨부:  | 증명서번호: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비고: |

순번	계정	과목	수입일자	금액
<input type="checkbox"/>	1 후보자등 자산	선거비용	2018-01-02	5,000,000
<input type="checkbox"/>	2 후보자등 자산	선거비용외 정치자	2018-01-09	3,000,000
<input type="checkbox"/>	3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	2018-01-16	3,000,000
<input type="checkbox"/>	4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외 정치자	2018-01-23	2,000,000

Tip!

1. 기본적으로 조회기능 화면이 제공되므로, 신규로 수입 내역을 입력하려면 반드시 **자료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수입내역을 등록한다
2. 계정 및 과목 등 ①의 수입내역 기재사항 항목은 수정 가능하다  
-> 다. 등록사항 수정 참조
3. ② 수입제공자 등록 버튼을 누르면 수입·지출처 관리 화면이 팝업된다.

### < 수입제공자 입력 방법 >

-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제공자 : **Q**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 선택 후 사용하면 됩니다.
- 신규 수입제공자 : **수입제공자 등록** 을 통하여 팝업창(수입·지출처 관리 화면)을 통하여 수입제공자를 등록할 수 있다.  
 P13 [1. 수입·지출처 관리의 수입·지출처 등록] 참조

부  
록

### 나. 신규내역 등록(3)

순번	계정	과목	수입일자	금액	수입제공자	내역	증빙첨부	증빙번호	미검부사유	비고
1	후보자등 자산	선거비용	2018-01-02	5,000,000	홍길동	후보자 자산	Y			
2	후보자등 자산	선거비용외 정치자	2018-01-09	3,000,000	홍길동	후보자 자산	Y			
3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	2018-01-16	3,000,000	익명	후원회 기부금	Y			
4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외 정치자	2018-01-23	2,000,000	익명	후원회 기부금	Y			

Tip!

#### 1. 계정 및 과목

사용기관	계정	과목
(예비) 후보자	후보자등자산, 후원회기부금, 보조금, 보조금외지원금	각 계정마다 선거비용, 선거비용외정치자금 과목으로 구분
정당선거사무소	보조금외,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보조금 : 전년도이월, 상급당부보조금 보조금외 : 전년도이월, 당비, 차입금, 기관지발행 사업수입, 상급당부보조금외, 그 밖의 수입
후원회	수입	전년도이월, 기명후원금, 익명후원금, 그 밖의 수입

#### 2. 정치자금 계좌에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액을 각 과목별로 정확히 구분, 입력합니다.

**후보자** 는 수입액을 선거비용 또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구분하거나 수입액을 각 과목에 임의로 적정하게 나누어 입력합니다.

#### 3. 각 계정별, 과목별로 수입 및 지출이 이루어지며,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을 수 없으므로 필요시 과목간 수입액을 조정 및 수정합니다.

**후보자** 는 후보자자산(계정)-선거비용(과목) 지출액(500만원)이 수입액(400만원)보다 많은 경우, 같은 계정의 선거비용외정치자금(과목)의 수입액(100만원)을 감하고, 선거비용(과목)에 그 금액(100만원)만큼 더하는 방법으로 수입액을 조정 및 수정

**정당선거사무소** 는 보조금의 경우 용도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상급당부 또는 해당위원회에 문의한 후 조정 및 수정

**다. 등록사항 수정 · 정렬 · 삭제(1)**

③

수입내역관리

계정: 전체 과목: 전체 수입액: 13,000,000 원 지출액: 5,300,000 원  
 수입일자: 2018-01-01 ~ 2018-12-31 잔액: 7,700,000 원  
 수입금액: ~ 수입제공자:    
 수입내역:    
 증빙서첨부  증빙서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비고:  직업(업종):  
 전화번호:

다중선택   증빙서미첨부

순번	계정	과목	수입일자	금액	수입제공자	내역	증빙첨부	증빙번호	미첨부사유	비고
①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후보자등 자산 선거비용	2018-01-02	5,000,000	홍길동	후보자 자산	Y			
<input type="checkbox"/>	2	후보자등 자산 선거비용외 정치자	2018-01-09	3,000,000	홍길동	후보자 자산	Y			
<input type="checkbox"/>	3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	2018-01-16	3,000,000	익명	후원회 기부금	Y			
<input type="checkbox"/>	4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외 정치자	2018-01-23	2,000,000	익명	후원회 기부금	Y			

● 등록사항 수정 방법

①	조회된 화면에서 수정할 수입내역 항목을 선택(파란색으로 표시됨)한다.
②	선택한 수입내역 항목에서 내역을 수정한다.
③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조회 화면에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수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Tip!**

★ ②의 수입내역 기재사항(계정, 과목, 수입일자, 수입금액, 수입내역, 수입제공자 등) 모두 수정가능하다.

부  
록

## 다. 등록사항 수정 · 정렬 · 삭제(2)

### ● 알아두면 편리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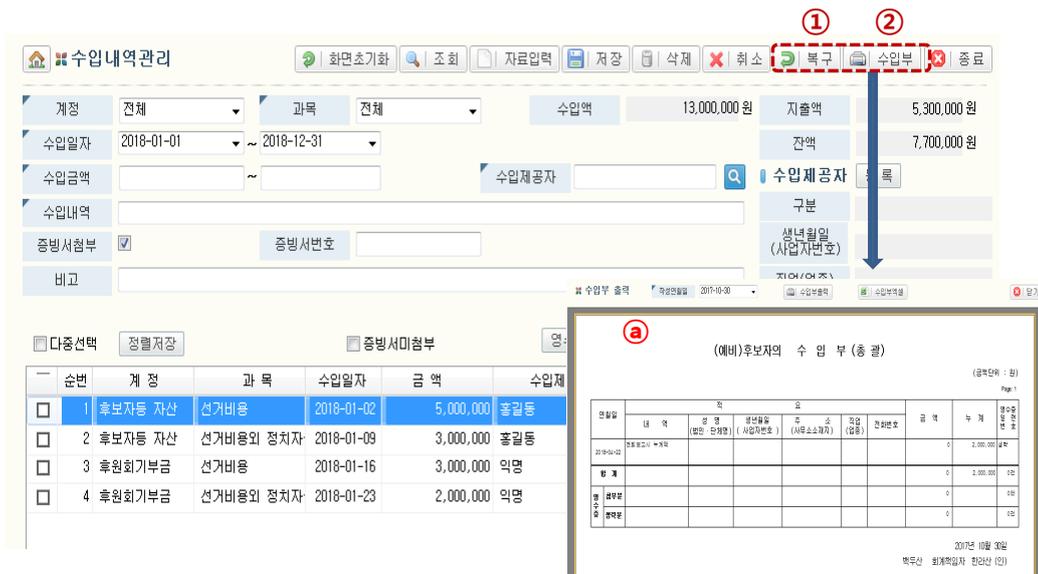
① 다중선택	<p>다중선택을 check하면 각 수입내역의 콤보박스를 선택할 수 있다.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화용에서</span> 각 수입내역을 여러 개 선택하여 내역 항목을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다.</p>
② 정렬저장	<p>수입내역 순서를 변경하는 기능이다.  <b>★ 순서를 변경한 후 반드시 정렬 저장을 클릭해야만 변경된 순서대로 지출내역이 확정된다.</b> Tip 참조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화용에서</span> 같은 일자 내 통장 계좌거래 내역 순서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수입내역 순서를 조정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p>
③ 영수증일괄입력 	<p>필요시 수입내역 조회 항목의 증빙번호 칸을 직접 클릭(편집 가능)하여 수기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입력하고 저장할 수 있다.</p>

**tip!**

- 수입내역 항목순서 변경 방법 (② 관련)
  - 옮기고자 하는 수입내역 항목을 선택하여 드래그 앤 드롭(파란색으로 선택된 지출항목을 계속 누른 채로 원하는 위치로 옮김)한다.
- 영수증 일괄입력(저장) 방법(③ 관련)
  - [영수증 일괄입력] 버튼 클릭 => 해당 수입 건 선택(파란색 표시됨)
  - => 파란색 부분의 증빙번호 칸을 클릭하여 수기로 각각 입력
  - => [영수증일괄입력 저장] 버튼 클릭



**라. 기타 기능 (필요시 사용권장)**



**● 기타 기능**

<b>① 복구</b>	<p>수정 · 삭제한 자료를 수정 · 삭제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 대상 : 단 건 수정 및 삭제, 다중 삭제, 영수증일괄입력 처리 건</li> <li>- 불가 대상 : 자료초기화에서 삭제한 자료, 수입 · 지출내역 일괄등록에서 삭제한 자료</li> </ul> </li> <li>●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그인하는 동안 수정 · 삭제한 자료에 대해 복구가 가능하다.</li> </ul> </li> </ul>
<b>② 수입부</b>	<p>전체 또는 각 계정별로 조회된 수입내역에 대한 수입부를 ①팝업창을 통해 <b>출력</b> 또는 <b>엑셀파일로 다운로드</b>할 수 있다.</p>

부  
록

## 6. 지출내역 관리

### 가. 화면 및 기능개관(1)

- ★ 기본적으로 조회 기능 화면이 제공됩니다.
- ★ 아래의 화면에서 지출내역 조회 및 신규 지출내역 입력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① 또는 ②를 클릭하여 해당화면으로 이동



### ● 화면 개관

**새 자료 (신규 지출내역) 입력시 지출내역 입력**  
-조회시 조회 조건 입력

순번	계정	과목	지출일자	금액	지출대상	내역	영양일부	영양사	비행부사유
1	후보자용 자산	선거비용	2018-01-05	500,000	이크림	후보자 선거운동 영입 인쇄	Y		
2	후보자용 자산	선거비용외 정치	2018-01-12	3,000,000	김	선거사무소 임차보증금	Y		
3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	2018-01-19	800,000	광교나눔	거리게시물 거리한수막	Y		
4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외 정치	2018-01-26	1,000,000	김	사무직원 연건비	Y		

수입액 합계,  
지출액 합계,  
잔액 조회

새자료를 입력.  
저장하면 우측  
지출부에 등록

-조회 조건에  
따른 조회내역  
확인 가능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지출) 내역이  
되며, 보고관리에서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 양식으로 출력 가능**

## 가. 화면 및 기능개관(2)



● **주요기능** : 세부내역은 p.274[신규내역 등록] 참조

① 화면초기화	최초 입력 내용이 없는 조회 화면으로 되돌아가는 기능이다.
② 조회	조회 조건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다.
③ 자료입력	신규 지출내역 입력 화면으로 전환된다.
④ 저장	신규 지출내역 및 수정 내용을 저장한다.

● **알아두면 편리한 기능** : 세부내역은 p.278[등록사항 수정·정렬·삭제] 참조

⑤ 다중선택	다중선택 check시 각 지출 내역 항목 선택이 가능하다.
⑥ 정렬저장	지출내역 순서를 조정하고 저장하는 기능이다.
⑦ 영수증일괄생성 및 일괄제거	영수증 증빙번호를 일괄 생성 및 제거할 수 있다.

● **그 외 기능**

⑧ 복구	수정·삭제한 자료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이다.
⑨ 지출부	전체 또는 계정·과목별 지출부 내역을 출력하는 기능이다.
⑩ 지출결의서	하나 또는 여러 지출 건의 지출결의서를 출력할 수 있다.

## 나. 신규내역 등록(1)

구분	수입지출내역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직업(업종)	전화번호
1	사업자	( )	( )	( )
2	사업자	( )	( )	( )
3	사업자	( )	( )	( )
4	사업자	( )	( )	( )
5	사업자	( )	( )	( )
6	사업자	( )	( )	( )
7	사업자	( )	( )	( )

### ● 신규 지출내역 등록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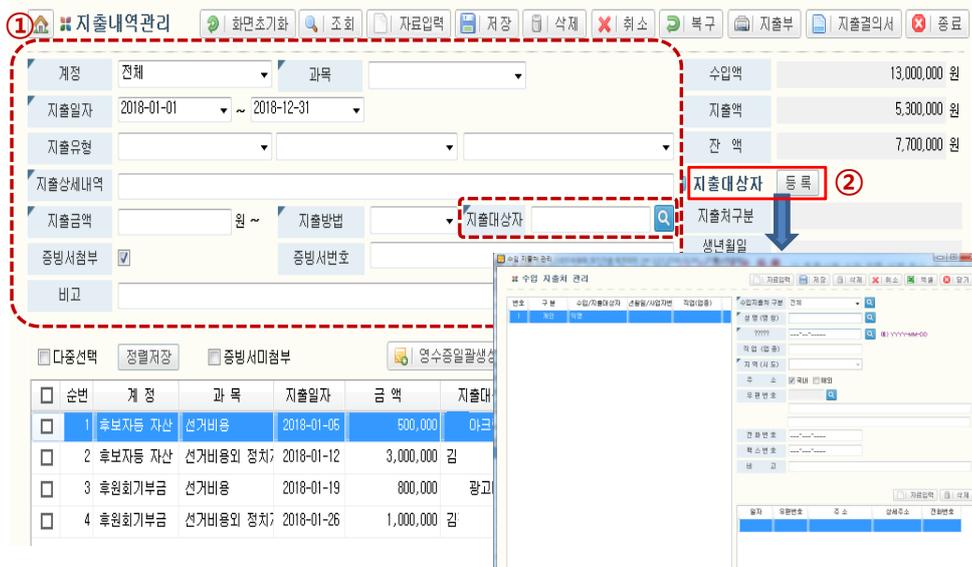
① 자료입력	지출 내역을 신규 등록하려면 반드시 [자료입력버튼]을 클릭하여 자료입력 화면에서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출내용 입력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차례대로 선택 및 입력한다.
③ 저장	신규 및 수정 지출내역을 저장하고 지출내역에 등록한다. ※ 정렬 저장은 지출내역 순서를 조정하고 저장하는 기능이다.

### ● 주요기능

√ 화면초기화	각 항목에 입력한 값을 지운 상태, 즉 기존의 조회 기능 화면으로 되돌리는 기능이다.
√ 조회	조회하고자 하는 조건을 ②에 입력 후 지출내역을 조회 및 검색하는 기능이다.



## 나. 신규내역 등록(2)



### Tip!

1. 기본적으로 조회기능 화면이 제공되므로, 신규로 지출 내역을 입력하려면 **반드시 자료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지출내역을 등록한다.
2. **계정 및 과목 등 ①의 지출내역 기재사항 항목은 수정 가능하다.**  
->다. 등록사항 수정 참조
3. ② **지출대상자 등록 버튼을 누르면 수입·지출처 관리 화면이 팝업된다.**

#### < 지출대상자 입력 방법 >

-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지출대상자 : **Q**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 선택 후 사용하면 됩니다.
- 신규 지출대상자 : **지출대상자 등록** 을 통하여 팝업창(수입·지출처관리 화면)을 통하여 지출대상자를 등록할 수 있다.

☞ P 10 [1. 수입·지출처 관리의 수입·지출처 등록] 참조

### 나. 신규내역 등록(3)

**Tip!**

#### [계정 및 과목 설정시 유의사항]

**후보자** 계정은 후보자등자산, 후원회기부금, 보조금, 보조금외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각 계정마다 선거비용, 선거비용외정치자금 과목이 있습니다.

※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외정치자금의 구분은 지출유형(대,중,소)의 내용을 통해 확인

**예시**

계정	과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후보자등자산	선거비용	인쇄물	선거벽보	기획·도안료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외	선거사무소	개소식관련	다과비
				정치자금

**정당선거사무소** 계정은 보조금외, 각종 보조금으로 구분되고, 각 계정별로 경비(선거비용, 기본경비, 정치활동비, 지원금)가 구분, 각 경비별로 용도에 따른 과목으로 구분

※ 선거비용의 경우 지출유형(대,중,소)을 입력, 선거비용이 아닌 경우는 지출유형이 선택되지 않음.

**예시**

계정	경비	과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상보조금	선거비용	선거비용	소품	모자	구입비
보조금외	기본경비	인건비	(미기재)		

**후원회** 계정은 '지출'만 있으며, 과목으로는 기부금, 후원금모금경비, 인건비(기본경비), 사무소설치운영비(기본경비), 그밖의 경비로 구분됩니다.

※ 후원회의 경우 선거비용 지출이 없으므로, 지출유형(대,중,소)은 선택되지 않음.

세부적인 구분내용은 정치자금 회계실무 및 선거비용 보전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외정치자금의 구분은 정치자금 회계보고 및 선거비용 보전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다. 등록사항 수정 · 정렬 · 삭제(1)

③

지출내역관리

계정	전체	과목		수입액	13,000,000 원
지출일자	2018-01-01 ~ 2018-12-31			지출액	5,300,000 원
지출유형				잔액	7,700,000 원
지출상세내역	②			지출대상자	등록
지출금액	원 ~	지출방법	지출대상자	지출처구분	
증빙서첨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증빙서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비고				직업(업종)	
				전화번호	

다중선택  
  정렬저장  
  증빙서미첨부  
   

순번	계정	과목	지출일자	금액	지출대상자	내역	증빙첨부	증빙서	미첨부사유	비고
①	1	후보자등 자산 선거비용	2018-01-05	500,000	마크틸	후보자 선거운동 명함 인쇄	Y			
	2	후보자등 자산 선거비용외 정치	2018-01-12	3,000,000	김	선거사무소 임차보증금	Y			
	3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	2018-01-19	800,000	광고나염	거리게시용 거리현수막	Y			
	4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외 정치	2018-01-26	1,000,000	김	사무직원 인건비	Y			

#### ● 등록사항 수정 방법

①	조회된 화면에서 수정할 지출내역 항목을 선택한다.
②	선택한 지출내역 항목에서 내역을 수정한다.
③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조회 화면에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Tip!**

★ ②의 지출내역 기재사항(계정, 과목, 지출일자, 지출유형, 지출금액, 지출대상자 등) 모두 수정이 가능하다.

부  
록

**다. 등록사항 수정 · 정렬 · 삭제(2)**

순번	계정	과목	지출일자	금액	지출대상자	내역	증빙첨부	증빙서	미첨부사유	비고
1	후보자등 자산	선거비용	2018-01-05	500,000	마크필	후보자 선거운동 명함 인쇄	Y			
2	후보자등 자산	선거비용외 정치	2018-01-12	3,000,000	김	선거사무소 임차보증금	Y			
3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	2018-01-19	800,000	광고나염	거리게시용 거리현수막	Y			
4	후원회기부금	선거비용외 정치	2018-01-26	1,000,000	김	사무직원 인건비	Y			

**알아두면 편리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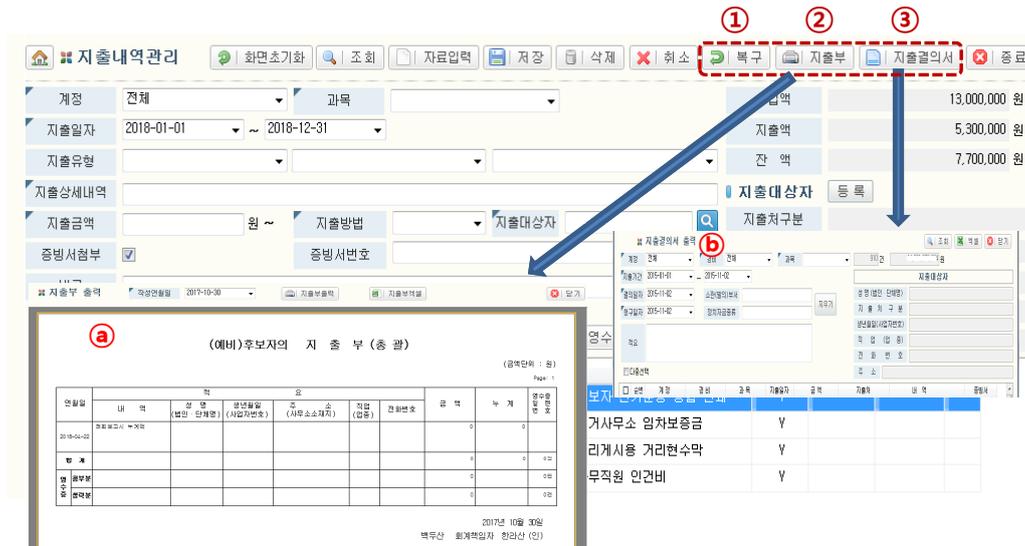
① 다중선택	다중선택을 check하면 각 지출내역의 콤보박스를 선택할 수 있다. <b>활용예시</b> 각 지출내역을 여러 개 선택하여 내역 항목을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다.
② 정렬저장	지출 내역 순서를 변경하는 기능이다. ★ 순서를 변경한 후 반드시 정렬 저장을 클릭해야만 변경된 순서대로 지출내역이 확정된다. Tip 참조 <b>활용예시</b> 같은 일자의 통장 계좌거래 내역 순서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지출내역 순서를 조정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③ 영수증 일괄생성 및 일괄삭제	증빙서첨부를 (Y)로 체크한 지출내역 항목에 대하여 해당 버튼을 클릭만 하면 영수증 번호를 자동생성하여 일괄 부여 또는 일괄 삭제할 수 있다.

**tip!**

● 지출내역 항목순서 변경 방법  
옮기고자 하는 지출내역 항목을 선택하여 드래그 앤 드롭(파란색으로 선택된 지출 항목을 계속 누른 채로 원하는 위치로 옮김)한다.



## 라. 기타 기능



### ● 기타 기능

<p>① 복구</p>	<p>수정 · 삭제한 자료를 수정 · 삭제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 대상 : 단 건 수정 및 삭제, 다중 삭제 건</li> <li>- 불가 대상 : 영수증일괄생성 또는 제거 처리, 자료초기화 화면에서 삭제한 자료와 수입 · 지출내역 일괄 등록에서 삭제한 자료</li> </ul> </li> <li>●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그인하는 동안 수정 · 삭제한 자료에 대해 복구가 가능하다.</li> </ul> </li> </ul>
<p>② 지출부</p>	<p>전체 또는 각 계정 · 과목별로 조회된 지출내역에 대한 지출부를 ㉠팝업창을 통해 출력 또는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p>
<p>③지출결의서 출력</p>	<p>지출결의서를 ㉡팝업창을 통해 엑셀 형태로 출력할 수 있다.</p>

부  
록

## 7. 재산내역 관리

### 가. 개 관

#### ● 해당화면의 주요기능

- ★ 본 장에서는 재산내역 관리 및 재산명세서 출력 방법을 확인해본다.
- 재산내역에는 토지, 건물, 주식 또는 유가증권, 비품, 현금 및 예금, 그밖의 재산으로 구분된다.
- 재산명세서는 회계보고서 작성시 보고사항으로 재산명세서 화면에서 별도 출력하거나 보고관리에서 일괄출력이 가능하다.

#### ● 아래의 ①을 클릭하여 해당화면으로 이동

메인화면의 [재산내역] 아이콘을 클릭하면 [재산내역 관리]로 연결됩니다.



## 나. 재산내역 관리

### POINT

- ★ 신규 재산내역 등록시에는 반드시 자료입력을 클릭하여 새자료를 입력한다.
- ★ 재산 내역에는 토지, 건물, 주식 또는 유가증권, 비품, 현금 및 예금, 그밖의 재산이 있다. (아래 화면 참조)

### ● 재산내역 입력방법(①=>②=>③)

① [자료입력]	[자료입력]을 클릭하면 자료입력 화면으로 전환되어 신규 재산 등록 가능
② 항목 작성	재산 내역 항목을 선택하여 작성
③ 저장	[저장]을 클릭하면 재산내역에 등록

### QnA

재산내역 등록시 후보자가 차입한 금액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 1. [재산구분] 탭에서 [차입금]을 선택합니다.  
 2.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 처리되어 재산명세서 등에 반영되므로, (+)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다. 재산명세서

### POINT

- ★ 전체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개별 재산내역 탭을 선택하여 재산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 전체 재산내역이나 개별 세부재산내역을 출력할 수 있다.

①

구분	종류	수량	내용	가액	비고
토지	소계				
	종류	수량	내용	가액	비고
건물	소계				
	종류	수량	내용	가액	비고
주식 또는 유가증권	소계				
	종류	수량	내용	가액	비고
비품	소계				
	종류	수량	내용	가액	비고
현금 및 예금	예금	1개	농협	5,000,000	

②

자료	수량	합계	5,000,000 원			
번호	종류	수량	단위	내용	가액	비고
1	예금	1	개	농협	5,000,000	

### ● 재산명세서 출력방법(①=>②)

① 탭 선택	전체 재산내역 또는 개별재산내역 탭을 선택
② 출력	전체 내역에서 재산명세서 출력 또는 개별재산내역 탭에서 세부내역 출력



## 8. 보고서 및 수입·지출부(공통)

### 가. 개관(1)

#### ● 해당 화면의 주요기능

-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보고사항을 해당 화면에서 손쉽게 출력할 수 있다.
-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보고사항을 한번에 일괄출력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계정 및 과목별 또는 보고사항별(수입·지출부 등)로 개별 출력도 가능하다.
- ★ 미리보기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 ● 아래의 ①을 클릭하여 해당화면으로 이동

메인화면의 [보고관리] 아이콘을 클릭하면 [보고서 및 과목별 수입·지출부 출력]으로 연결됩니다.

당해 회계기간	2018-01-01 ~ 2018-12-31	회계기간설정
수입	0 원	
지출	0 원	
잔액	0 원	

## 8. 보고서 및 수입·지출부 [(예비)후보자용]

### 가. 개관(2)

①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②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③ 보고서 및 과목별 수입·지출부 출력  
 ④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보전비용

필요시 사용  
 권 장

### ● 메뉴 개요 설명

①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별도 확인 및 출력 가능
②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계정·과목별로 별도 확인 및 출력 가능
③ 보고서 및 과목별 수입·지출부 출력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사항을 일괄 출력 및 계정·과목별 또는 표지별 개별 출력 가능
④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보전비용	선거비용 보전청구 명세서 편집 및 출력

**Tip!**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보고사항

1.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개별출력도 가능**
2. 재산명세서
3.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개별출력도 가능**
4.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5. 영수증 그밖의 증빙서류 사본

※ [추가] 선거비용 지출내역 집계표(선거연락소를 설치한 경우에만 작성)

보고서 및 과목별 수입·지출부 출력에서 일괄출력 가능  
 기타 별도 작성

## 나. 보고서 및 과목별 수입·지출부 출력

### ● 일괄출력 방법

① 표지선택	별도 안내가 없는 경우, 모두 체크.
② 시기 작성사항 기재	표지 및 보고서에 들어갈 사항을 직접 입력
③ [보고서 일괄출력]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항 일괄 출력

### ● 개별출력 방법

표지별 출력	위 ①의 콤보박스를 선택하여 [표지출력]을 클릭한다.
계정 및 과목별 출력	위 ④의 계정 및 과목 선택 화면에서 계정을 선택하고 과목명 체크(콤보)박스를 선택하여 ⑤[출력]하면 된다.

## 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출력 (①->②->③)

① ③ ④

전년도 자료  
기간 2017-01-01 ~ 2017-12-31  
작성 연월일 2017-10-16

선거명  
선거구명  
문서번호

②

별도 수정 없음 (체크안함)      직접 입력사항

구분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소계		
자산	8,000,000	500,000	3,000,000	3,500,000	4,500,000	
후원회기부금	5,000,000	800,000	1,000,000	1,800,000	3,200,000	
정당의 지원금	보조금	0	0	0	0	0
	보조금외	0	0	0	0	0
합계	13,000,000	1,300,000	4,000,000	5,300,000	7,700,000	

###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출력 (①->②->③)

① ③ ④

전년도 자료  
기간 2017-01-01 ~ 2017-12-31  
작성 연월일 2017-10-16

계정 전체  
과목

②

별도 수정 없음 (체크안함)      계정 및 과목을 선택한다.

번호	전송	연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성명/법인/기
				금회	누계	금회	누계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7-01-02	후보자 자산	5,000,000	5,000,000		0	5,000,000	홍길동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7-01-05	인쇄물-영합-인쇄비-후보자		5,000,000	500,000	500,000	4,500,000	수
3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7-01-09	후보자 자산	3,000,000	8,000,000		500,000	7,500,000	홍
4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7-01-12	선거사무소-임차보증금-선		8,000,000	3,000,000	3,500,000	4,500,000	김
5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7-01-16	후원회 기부금	3,000,000	11,000,000		3,500,000	7,500,000	익
6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7-01-19	거리계사용현수막-거리계사		11,000,000	800,000	4,300,000	6,700,000	서
7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7-01-23	후원회 기부금	2,000,000	13,000,000		4,300,000	8,700,000	익
8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7-01-26	선거사무소-인건비-사무직		13,000,000	1,000,000	5,300,000	7,700,000	김

### ● 기능 더 알아보기

- ① [조회] : 조회 조건에 따라 조회 가능하다.
- ③ [출력] : 수입·지출보고서(수입·지출부)를 출력한다.
- ④ [엑셀] : 수입·지출보고서(수입·지출부)를 엑셀 다운로드 가능하다.

## 라.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출력(보전비용)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출력 (보전비용)

① 전년도 자료

기간: 2018-01-01 ~ 2018-12-31 | 계정: 전체 | 과목: 선거비용

작성 연월일: 2018-06-01

② 조회 | ④ 저장 | 출력 | 엑셀 | 종료

★ 별도 수정 필요없음. (필요시 조건 변경)

변동	연월일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일련번호	비고
			금회	누계	금회	누계		성명/법인/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직업(업종)		
1	2018-01-02	후보자 재산	5,000,000	5,000,000	0	5,000,000	공갈등						
2	2018-01-05	인생물-영합-인생바-후보자		5,000,000	500,000	500,000	4,500,000	수영아극물	617	부산광역시		051-	체크카드
3	2018-01-16	후원회 기부금	3,000,000	8,000,000		500,000	7,500,000	익명	19	부산광역시			
4	2018-01-19	거리게시물현수막-거리게시		8,000,000	800,000	1,300,000	6,700,000	서울한그나염	617-	부산광역시			체크카드

### ● 선거비용 보전청구 명세서 출력 방법

① 조회조건 입력	별도 수정이 필요없으며, 필요시에 조건 변경하여 사용
② [조회]	기본 설정 조건에서 조회하면 총괄(전체)계정의 선거비용 과목 지출내역이 조회화면에 표출
③ [보전]	보전 대상인 경우 콤보박스 체크 또는 전체선택한 후 콤보박스 해제
④ [출력]	미리보기가 가능하며, 보전청구 명세서 출력 가능

### ● 기능 더 알아보기

✓ [저장]	보전여부를 체크한 후 [저장]을 클릭하면 해당 화면을 종료하거나 로그아웃한 이후에도 보전여부를 체크한 사항이 저장
✓ [엑셀]	보전청구 명세서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부

록

## 8. 보고서 및 수입·지출부 [정당선거사무소]

### 가. 개관(2)



### ● 메뉴 개요 설명

① 결산작업	회계보고 전 결산 확인을 위한 필수 단계
② 제출파일 생성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할 서류를 파일로 생성
③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수입·지출총괄표를 별도 출력시 사용
④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총괄표	재산 및 수입·지출총괄표를 별도 출력시 사용
⑤ 보고서 및 과목별 수입·지출부 출력	수입·지출총괄표 및 수입·지출부 등 일괄출력 또는 개별출력 하는 경우 사용
⑥ 지원금내역	후보자등에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

Tip!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보고사항

1. 재산명세서
2. 수입·지출총괄표
3. 재산 및 수입·지출총괄표
4. 과목별 수입·지출부
5.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6. 영수증 그밖의 증빙서류 사본

보고서 및 과목별  
수입·지출부 출력  
에서 일괄출력 가능

기타 별도 작성

## 나. 결산작업

1

결산작업 진행을 위해 클릭

재산구분	합계	재산구분	합계
토지	0	비품	0
건물	0	현금 및 현금	0
주식 또는 유가증권	0	기타	0
		합	0

구분	과목	계	보조금외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예산추천보조금	장래인추천보조금
인원수	전년도이월	0	0	0	0	0	0
	당비	0	0	0	0	0	0
	기탁금 (중앙당에 한함)	0	0	0	0	0	0
	후원회 기부금	0	0	0	0	0	0
	보조금 (중앙당에 한함)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기관지말행사업수입	0	0	0	0	0	0
	보조금	상급당부	0	0	0	0	0
		하급당부	0	0	0	0	0
		계	0	0	0	0	0
지원금	보조금외	상급당부	0	0	0	0	0
		하급당부	0	0	0	0	0
		계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그밖의수입	0	0	0	0	0	0
	합	0	0	0	0	0	0
선거비용	선거비용	선거비용	0	0	0	0	0
	기본경비	민권비	0	0	0	0	0
		사무소설치 운영비	0	0	0	0	0
		정책개발비	0	0	0	0	0
		조직활동비	0	0	0	0	0
	여성정치발전비	0	0	0	0	0	

## 다. 제출파일 생성

중앙당(시도당)에 제출파일 생성

00당공명시정당선거사무소

제출파일 저장

상급당부 제출파일(TXT 파일) 생성하여 송부

## 라. 보고서 및 과목별 수입·지출부 출력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generating reports. It includes search filters for fiscal year, period, and date. There are three main sections: 'Report Selection' (1), 'Direct Input' (2), and 'Account/Subject Selection' (4). A 'Print Report' button (3)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rrow pointing to a note: '표지 별도 출력시 사용' (Use when printing separately). A 'Print' button (5) is also highlighted. A red box around the 'Print' button says '표지 별도 출력시 사용'. A red box around the 'Direct Input' field says '직접 입력사항' (Direct input items). A red box around the 'Account Selection' table says '계정 및 과목 선택 화면' (Account and subject selection screen). A red box around the 'Report Selection' area says '별도 수정 필요없음(체크안함)' (No separate modification needed (do not check)).

### ● 일괄출력 방법

① 표지선택	별도 안내가 없는 경우, 모두 체크
② 시기 작성사항 기재	표지 및 보고서에 들어갈 정당선거사무소명을 입력
③ [보고서 일괄출력]	재산 및 수입·지출총괄표, 수입·지출부 등 일괄출력

### ● 개별출력 방법

표지별 출력	위 ①의 콤보박스를 선택하여 [표지출력]을 클릭한다.
계정 및 과목별 출력	위 ④의 계정 및 과목 선택 화면에서 계정을 선택하고 과목명 체크(콤보)박스를 선택하여 ⑤[출력]하면 된다.



### 마. 정당의 수입·지출총괄표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연년도자료  
수입·지출 기간: 2018-03-04 ~ 2018-07-03 | 작성연월일: 2017-10-31

구분	과목	계	보조금외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합계	
재산	토지	0	0	0	0	0	0	0	
	건물	0	0	0	0	0	0	0	
	주식 또는 유가증권	0	0	0	0	0	0	0	
	비품	0	0	0	0	0	0	0	
	현금 및 예금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0	
	수입	연년도이월	0	0	0	0	0	0	0
		기탁금(중앙당에 한함)	0	0	0	0	0	0	0
		후원회 기부금(중앙당에 한함)	0	0	0	0	0	0	0
보조금(중앙당에 한함)		0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0	
기관지발행사업수입		0	0	0	0	0	0	0	
지원금		0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0	
보조금외		0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0	
그밖의 수입	0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0		
지출	선거비용	0	0	0	0	0	0	0	
	기부금	0	0	0	0	0	0	0	
	경비	0	0	0	0	0	0	0	
	사무소설치 운영비	0	0	0	0	0	0	0	
	정책개발비	0	0	0	0	0	0	0	
	조직활동비	0	0	0	0	0	0	0	
여성활동비	0	0	0	0	0	0	0		
대정정치발전비	0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0		

일괄출력 외 별도 출력시 사용

### 바.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총괄표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 총괄표

연년도자료  
수입·지출 기간: 2018-03-04 ~ 2018-07-03 | 작성연월일: 2017-10-31

구분	과목	당부별	중앙당	정책연구소	시도당	정당선거사무소	합계
재산	토지					0	0
	건물					0	0
	주식 또는 유가증권					0	0
	비품					0	0
	보조금(중앙당에 한함)					0	0
	차입금					0	0
	기관지발행사업수입					0	0
	연년도이월					0	0
	기탁금(중앙당에 한함)					0	0
	후원회 기부금(중앙당에 한함)					0	0
수입	보조금(중앙당에 한함)					0	0
	차입금					0	0
	기관지발행사업수입					0	0
	연년도이월					0	0
	기탁금(중앙당에 한함)					0	0
	후원회 기부금(중앙당에 한함)					0	0
	보조금(중앙당에 한함)					0	0
	차입금					0	0
	기관지발행사업수입					0	0
	연년도이월					0	0
수입	지원금					0	0
	보조금					0	0
	보조금외					0	0
	소계					0	0
	그밖의 수입					0	0
	합계					0	0

일괄출력 외 별도 출력시 사용

### 사. 지원금내역(후보자 등에 지원한 내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

지원금내역 출력

연년도자료  
기간: 2018-03-04 ~ 2018-07-03 | 작성연월일: 2017-10-31 | 문서번호: \_\_\_\_\_

대상별	정치자금별	지원일자	지원용도	보조금외(A)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소계(B)	합계(A+B)
시도당	시도당 합계			0	0	0	0	0	0
정책연구소	정책연구소 합계			0	0	0	0	0	0
정당선거사무소	정당선거사무소 합계			0	0	0	0	0	0
국회의원	국회의원 합계			0	0	0	0	0	0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합계			0	0	0	0	0	0
총합	합계			0	0	0	0	0	0

## 8. 보고서 및 수입·지출부 [후원회]

### 가. 개관(2)



#### ● 메뉴 개요 설명

① 후원회의 수입·지출총괄표	수입·지출총괄표를 별도 출력시 사용
② 보고서 및 과목별 수입·지출부출력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사항을 일괄 출력 및 계정·과목별 또는 표지별 개별 출력 가능(권장)
③ 후원금 기부자 조회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별도 출력시 사용
④ 감사의견서 등 출력	②의 일괄출력시 함께 출력되지 않으므로 별도 출력해야 함.

**Tip!**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보고사항

1. 재산명세서

2. 후원회의 수입·지출총괄표 개별출력도 가능

3. 정치자금 수입부 및 지출부 개별출력도 가능

4.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5. 영수증 그밖의 증빙서류 사본

6. 후원금 기부자 명단 별도 출력

7. 감사의견서 등 별도 출력

→ 보고서 및 과목별 수입·지출부 출력에서 일괄출력 가능

→ 기타 별도 작성

## 나. 보고서 및 과목별 수입·지출부 출력

전년도 자료  미리보기 생략

수입/지출 기간 2018-01-01 ~ 2018-12-31

기준 연월일 2018-12-31

작성 연월일 2018-06-25

일자별 합산

표지 선택 (일괄출력제외)  수입/지출부 표지   
 계정 표지   
 과목 표지

수입/지출 표지 2018 년 후보자홍길동후원회

표지 출력

표지 별도 출력시 사용

★ 별도 수정 필요없음(체크안함)

수입 ④ 계정 및 과목 선택 화면

번호	계정	번호	과목	번호	과목
1	수입	1	전년도이월	1	기부금
2	지출	2	기명후원금	2	후원금모금경비
		3	익명후원금	3	인건비(기본경비)
		4	그 밖의 수입	4	사무소설치운영비(기본경비)
				5	그 밖의 경비

### 1 일괄출력 방법

① 표지선택	별도 안내가 없는 경우, 모두 체크.
② 수기 작성사항 기재	표지 및 보고서에 들어갈 사항을 직접 입력
③ [보고서 일괄출력]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항 일괄 출력

### 2 개별출력 방법

표지별 출력	위 ①의 콤보박스를 선택하여 [표지출력]을 클릭한다.
계정 및 과목별 출력	위 ④의 계정 및 과목 선택 화면에서 계정을 선택하고 과목명 체크(콤보)박스를 선택하여 ⑤[출력]하면 된다.

### 다. 수입·지출 총괄표 출력

① ② ③

후원회의 수입·지출총괄표

전년도 자료  기 간 2018-01-01 ~ 2018-12-31 작성 연월일 2018-06-25

구분	과목	액	비고
수입	전년도이월	0	
	후원금	3,500,000	
	기명	0	
	익명	0	
	소계	3,500,000	
	그 밖의 수입	0	
	합계	3,500,000	
지출	기부금	500,000	
	후원금 모금경비	100,000	
	기본경비	1,000,000	
	인건비	1,000,000	
	사무소설치·운영비	500,000	
	소계	1,500,000	
	그 밖의 경비	10,000	
합계	2,110,000		
잔액	1,390,000		

별도 수정 없음 (체크안함)

- ① [조회] : 조회 조건에 따라 조회 가능하다.
- ② [출력] : 수입·지출총괄표를 출력한다.
- ③ [엑셀] : 수입·지출총괄표를 엑셀 다운로드 가능하다.

### 라. 후원금 기부자 조회

① ② ③

후원금 기부자 명단조회

구분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후원 기간 2018-01-01 ~ 2018-12-31 보고연월일 2018-06-25

기부자  검색

전년도 자료  반환 자료  반환금

반환자료저장

사료 4건 3,500,000 원

번호	반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후원일자	금액	내역	비고
1	<input type="checkbox"/>	백두산	1950-01-0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		010-3333-3333	2018-05-28	1,000,000	기명후원금	
2	<input type="checkbox"/>	한라산	1950-01-0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		010-3333-3333	2018-05-29	500,000	기명후원금	
3	<input type="checkbox"/>	금강산	1970-01-01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010-2222-2222	2018-05-30	1,000,000	기명후원금	
4	<input type="checkbox"/>	지리산	1980-01-01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010-4444-4444	2018-05-31	1,000,000	기명후원금	

- ① [조회] : 조회 조건(1회 30만원, 연간 300만원 등)에 따라 조회 가능하다.
- ② [출력] : 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출력한다.
- ③ [엑셀] : 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엑셀 다운로드 가능하다.

## 마. 감사의견서 등 출력

### ● 감사의견서

감사의견서 등 출력

감사의견서 | 감사의결서 | 회계보고서 제출문서

### 감 사 의 견 서

정치자금법 제 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우리 후원회의 2018년 03월 01일부터 2018년 07월 03일 까지의 회계처리내역에 대한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름

- 감사개요
  - 가. 감사기간 : 2017년 10월 31일 ~ 2017년 10월 31일
  - 나. 감사대상
    - ① 재산상황
    - ②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
- 감사의견 : 「정치자금법」 및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
- 특기사항 : 없음

### ● 심사의결서

감사의견서 등 출력

감사의견서 | 감사의결서 | 회계보고서 제출문서

### 재산 및 수입·지출상황 등의 심사 의결서

- 의결주문
 

정치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후원회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내역 및 결산내역(내역별첨)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의결한다.

  - 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기간 : 2018년 03월 01일 ~ 2018년 07월 03일
  - 나. 재 산 : 0 원
  - 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 ① 수 입 : 0 원
    - ② 지 출 : 0 원
    - ③ 잔 액 : 0 원

2017년 10월 31일

운영위원회

### ● 회계보고서 제출문서

감사의견서 등 출력

감사의견서 | 감사의결서 | 회계보고서 제출문서

### 홍길동 후원회

문서번호 회계 2017 -

시행일자 2017. 10. 31

수 신 공명시위원회 위원장

제 목 홍길동후원회 회계보고서 제출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라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후원회의 재산명세서 1부.
- 후원회의 수입 지출 총합표 1부.
- 과목별 수입부 1부.
- 과목별 지출부 1부.
- 과목별 연수증 3부의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후원금 기부자 명단
  - 가.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1부.
  - 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1부.
- 정치자금 수입 지출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 1부.
- 대의기관(또는 수입기관)의 심사 의결서 사본 1부. 끝.

## 9. 자료 백업 방법

- ◎ 본 프로그램은 자동백업이 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저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백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 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백업방법

전체메뉴

- 시스템관리
  - 자료 백업 및 복구 ① 클릭
  - 자료 초기화
  - 로그아웃/로그인
  - 코드관리
  - 종료
- 기본자료관리
  - 사용기관관리
  - 수입·지출처관리
  - 수입·지출처 일괄등록
- 정치자금관리
  - 수입내역관리
  - 지출내역관리
  - 수입·지출내역 일괄등록
  - 지출결의서 출력

자료 백업 및 복구

작업 경로  
운영 DB C:\Program Files\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치자금회계관리2\Data

c: []  
Fund\_Data\_1.db  
Fund\_Data\_2.db  
Fund\_Data\_3.db  
Fund\_Master.db

C:\Program Files  
중앙선거관리위원회\_정치자금회계관리2  
Data

② 클릭  
백업 복구

백업 목록 C:\Program Files\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치자금회계관리2\BackUp

c: []  
정치자금 [백두산] 보관자료\_2017-10-11 15시29분39초.db

③ 백업을 실시한 날짜와 시간 이름으로 백업파일 생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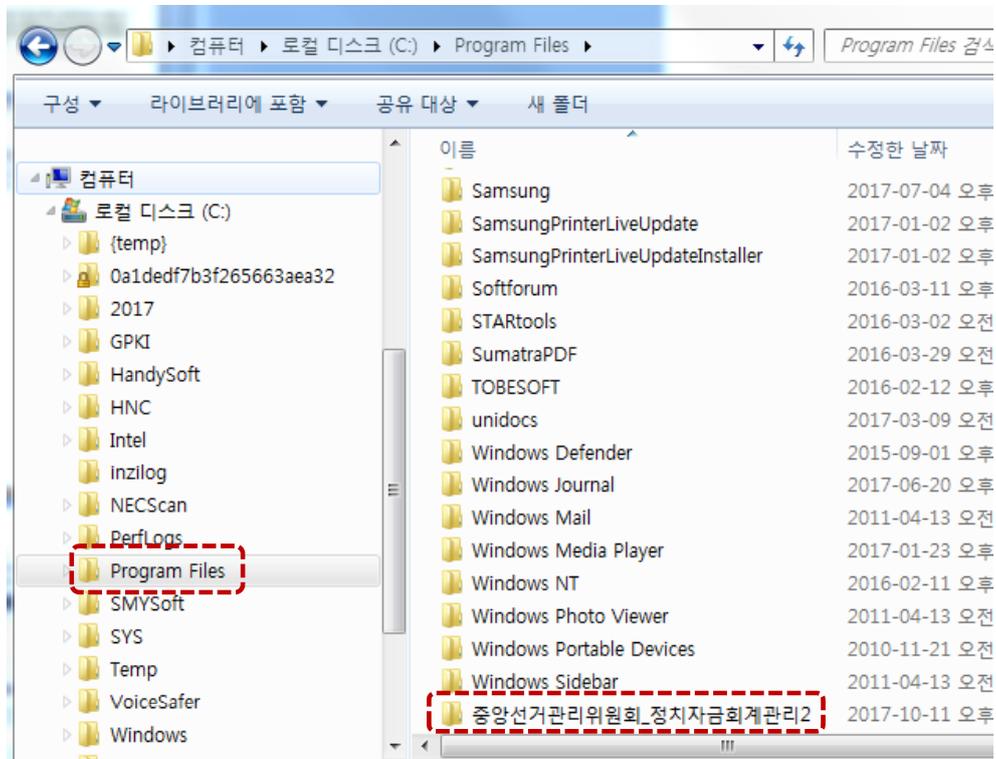


1. 수시로 자료를 백업한 경우, 해당 날짜 및 시간별로 파일이 생성됩니다.
2. 후보자, 후원회, 정당선거사무소 등 2 이상의 사용자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각각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백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 나. 해당 폴더 또는 파일 복사를 통한 백업방법

- (1) 회계관리 프로그램과 해당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폴더 전체를 복사하여 별도 저장매체에 저장한 후 필요시 다른 컴퓨터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 (2)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컴퓨터에 이상이 생겨 포맷을 하거나, 교체하는 등 비상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윈도우 탐색기 또는 내컴퓨터를 실행하여 C드라이브에서 Program Files를 클릭
2. 해당 폴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_정치자금회계관리2" 폴더를 선택
3. 복사하여 별도의 USB저장장치에 저장해두거나, 압축한 후 개인 이메일로 송부

## 10. 자료 복원 방법

### 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복원방법

◎ 프로그램을 통해 백업을 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여러 차례 백업한 자료가 있는 경우 원하는 시점의 백업파일을 선택하여 복원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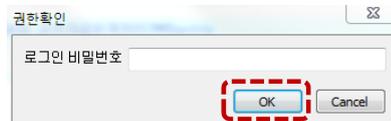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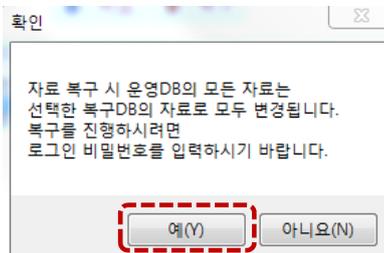
① 클릭

② 원하는 시점의 백업파일을 선택

③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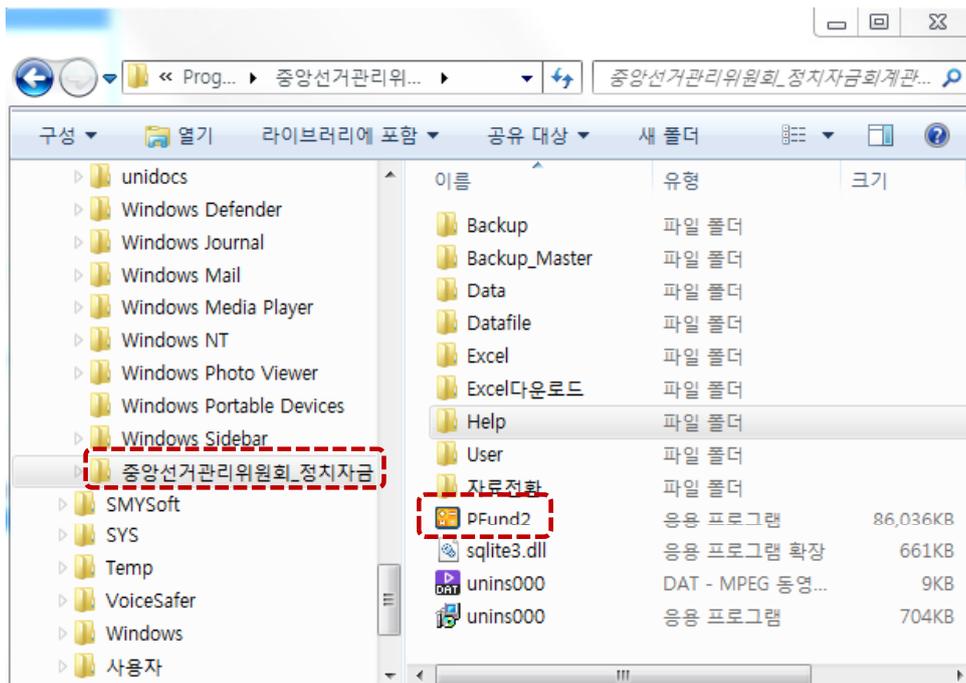
④ 복구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의 창이 나타납니다.

⑤ 로그인비밀번호 입력 후 클릭



## 나. 별도 저장된 파일 또는 폴더 이용 복원방법

- (1) 사전에 저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_정치자금회계관리2” 폴더를 C드라이브 Program Files 폴더 내에 복사합니다.
- (2) 기존에 회계관리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복사할 때에는 “덮어쓰기” 를 선택하여 복사하시면 됩니다.
- (3) “C:\Program Files\중앙선거관리위원회\_정치자금회계관리2” 의 폴더 내에 있는 “PFund2” 를 실행하여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폴더 내의 자료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정치자금 회계실무

---

2019년 11월 일 인쇄

2019년 11월 일 발행

발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2과

인쇄 : 일지사

---